

현안분석 2006-

비교법제연구 2006-04

#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 · 필리핀, 멕시코 · 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

문 준 조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 중국 · 필리핀, 멕시코 · 쿠바 및 중동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 With Special Reference to China, the Philippines, Mexico,  
Cuba And Arab Countries. -

연구자 : 문준조 연구위원  
Moon, Joon-Jo

2006. 11. 30.

## 국문 요약

외국인투자법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3가지 외국인투자형태에 따른 별도의 외국인투자기업법 및 수많은 특정 경제부문만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외에 지역별로도 외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분산되어 있는 개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체제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절차와 투자기업의 활동을 단순한 규율의 틀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바는 현재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는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반드시 국영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쿠바 측 회사를 통해 상당한, 때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현행의 외국인투자 민원서류 건별 처리소요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되는 특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의 업종별,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외국인투자단지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전용단지를 분양보다는 임대로 하여 초기의 투자자금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외국인투자지역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확대는 물론 제조업의 범위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공해유발상품, 내수위주 상품, 짧은 제품수명주기 상품 등의 투자는 투자후 짧은 기간내에 철수할 우려가 있는 등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클 수 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는 무조건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투자규모, 수출액비중,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거나 조세감면율을 일률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기보다는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 : 외국인직접투자, 필리핀, 쿠바, 중동, 투자인센티브, 투자지분제한

## Abstract

Today, foreign firms and individuals enjoy the highest degree of market access and economic freedom since 1949. The list of SEZs has expanded to include areas all over China, making the P.R.C. the 2nd highest receiver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an annual basis. Liberalization to encourage investment has occurred on nearly every front, with reforms being undertaken that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increased public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and even going so far as to modify the Constitution to add protections for Private Enterprises.

The central government full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FDI and the significant impact on GDP growth that the FOEs/JVs have. It realizes that FOEs/JVs act as a model for China's budding private enterprise sector, and are responsible for 14.5% of the urban workforce (25.8% of non-SOE urban workforce). China will look to its private enterprise sector (including FOEs/JVs) to absorb the SOE workers that are laid off.

China also sees the FOEs/JVs as opportunities to obtain the technical expertise, training, equipment and technology necessary to continue growing and developing. Currently, many JV contracts explicitly (and implicitly) require the transfer of technology or technological expertise to China as a condition of doing business. The central government also obtains direct economic benefit from FOEs/JVs as they are responsible for about 11% of the national tax receipts collected, an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large foreign currency reserve that the central government maintains.

In preparation for its WTO entry, China has begun systematically liberalizing its policies towards FEOs/JVs to bring them in line with WTO acceptable regulations. This includes removing geographical access restrictions, market access restrictions, equity ownership restrictions, and export requirements. FEOs/JVs are finding themselves in a climate that continues to reform and liberalize. Many FEOs/JVs are positioning themselves for the inevitable opportunities that WTO membership will bring.

The Philippines is on the right path toward making its foreign investment legal regime more investor-friendly. To be sure, other important issues that influence foreign direct investment - i.e., infrastructure modernization, transportation, reliable sources of electricity, perceived safety and security problems, and expropriation - will need the Government's attention in the years ahead. But, by and large, the modern substantive law on foreign investments is largely in place. Broadly, the country's modern foreign investment laws, as highlighted in this article, incorporate concepts and themes that vastly improve the overall climate for investing in the Philippines.

First, through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of 1987, foreign investors can avail of useful fiscal incentives. Multinational corporations may not only avail of these standard incentives for registered enterprises but may also take advantage of the incentives available for its regional headquarters, regional operating headquarters, and regional warehouse located in the Philippines. Second, foreign investors are now permitted, through the Foreign Investments Act of 1991, to enjoy greater equity participation in Philippine businesses. Third, the country's special economic zones adopt

an incentives scheme similar to that offered under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Aside from tax holidays for export and free trade enterprises, there is also the preferential tax rate of five percent of gross income for firms located in economic zones, and tax and duty exemptions on the importation of capital equipment, raw materials, and other merchandise. Finally, in line with the dismantling of foreign ownership restrictions, the Retail Trade Liberalization Act opens the retail sector to foreigners. This Act could potentially increase competition in retail trade, improve the quality and choices of goods available to Filipino consumers, and reduce consumer prices. At the same time, investors like Wal-Mart stand to gain from a large and attractive Philippine retail market.

While these laws demonstrate a positive development for both the country and foreign investors, these modern foreign investment laws will need some reworking. Efforts in the years ahead must include: harmonizing and reconciling all the foreign investment laws; tightening the incentives regime, insuring long-term legal certainty for foreign investors; streamlining registration procedures and rules; eliminating duplication; consolidating or abolishing government entities; and removing the Government from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economic zones.

Mexico's approach toward foreign investment is in a process of evolution. After veering from completely unrestrained reception to excessively protective and nationalistic restriction of foreign capital, the country appears to have reached an equilibrium. By announcing that it would actively promo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fied industries, Mexico has plac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notice of its intention to progress

rationally toward further economic growth. Because its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re largely the result of policy established by an administrative body with broad discretionary powers, it has been difficult in the past to predict how favorably a prospective enterprise might be received. According to FIC officials, however, one can now look to the criteria set forth in the NIDP and FIL and to the list of activities to be promoted under the 1984 Guidelines and obtain a clearer indication of the conditions to which a company will be subject and whether they are consistent with its interests.

The Guidelines, together with the resolutions of the FIC, signify a changing attitude. Up to 100 percent direct foreign investment will be considered in specified activities; increases in the percentage of foreign equity in Mexican companies may also be arranged; and foreign companies in priority industries will be permitted to expand under certain circumstances. Although the FIL had allowed for these exceptions, prior to the announcement of the 1984 Guidelines they had rarely been granted.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subject to these exceptions, however, will not be approved automatically. They will still need to be analyzed by the FIC in terms of the criteria set forth in the NIDP and FIL.

Whether to invest with 100 percent or 49 percent foreign capital is a decision dictated by the needs of the particular company; but the availability of a choice makes Mexico an even more attractive country in which to invest. Fear of future restrictions, such as requirements to Mexicanize, is unreasonable in view of the overall profit potential and should not be a determining factor in whether to select Mexico as an investment choice.



Although persons involved in the field are optimistic about this change in attitude, they are also aware that regulations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magnitude of foreign investment in a country. Other circumstances have much greater significance, and owing to the current recession, it will take time to evaluate with accuracy the impact of these policies on Mexico's short-and long-term economic growth. The development of a rational plan that selectively promotes industries deemed beneficial to the national economy, however, should greatly assist Mexico in achieving competitive international standards.

Despite its initial successes in the early and mid 1990s, Cuba has not been able to secure foreign investment to the degree that the country requires and is capable of attracting. The main reason for this failure is the contradictory attitude of the Cuban government towards investment, the obstacles and restrictions that are placed before a prospective investor, and the ominous shadow of U.S. sanctions and other external factors. In all, investing in Cuba must surely be seen by most foreign entrepreneurs as a perilous task.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environment in Cuba is not favorable to the entry of foreign investment. Indeed, the greater and more significant obstacles to investment are internal and can be overcome by the implementation of suitable government initiatives. Despite the current deficiencies and problems, FDI should continu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uba, both in the immediate future and once the country adopts a more welcoming attitude to foreign capital. For investment to realize its full potential, however, it will be necessary that both the laws and the government attitudes change towards a regime that regulates, but at the same time fosters, foreign investment.

This is not to say that elimination of the internal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will be easy. Some of the contradictions caused by Cuba's adherence to a socialist program while seeking to implement limited capitalistic measures cannot be remedied without a reorientation of the government's thinking regarding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country's economic activity. This is particularly true with respect to the labor issue, as evidenced by the arguments raised by the government in support of the current framework for the use of Cuban labor by enterprises including foreign investors. However, to the extent that the reluctance by investors to enter the Cuban market is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Cuba raises too many obstacles and restrictions to FDI, such a perception could be ameliorated without great difficulty and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were Cuba inclined remove those obstacles.

As Middle Eastern nations implement economic and legal reforms aimed at liberalizing their trade policies and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the region as a whole benefits from the fruits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form of social and political stability. For the most part, the nations of the Middle East have addressed new legal issues regarding trade and commerce much like the “ulama” pragmatically and through general consensus, addressed rising issues outside the confines of the Shari'a hundreds of years ago. Today, this sense of cultural pragmatism and flexibility has fundamentally assisted these nations in adjusting to political instability, reforming their economies, and seriously competing in the global marketplace.

Experts agree that increased trade and investment in the Middle East will facilitate growth, job creation, and a dynamic economy that no

longer depends on oil. To realize these goals, Middle Eastern nations are reaching out to the world community and brokering ties by way of trade and investment integration. Such ties have recently gained momentum in the form of Free Trade initiatives and agreements with the EU and United States, and will inevitably foster greater diplomacy and mutual understanding, thus creating diverse international stakes in a region that will over time be a stabilizing force in a landscape often vulnerable to the international appeal of its gas and oil industries. However, liberal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s must be accompanied by a thorough and mutual understanding of the rich history, culture, and diverse economies that compose the Middle East.

Recognizing the dynamic trade opportunities available in the Middle East is a major step towards improving business relations with those nations. Growing competition from foreign countries from various region requires Korean businesses to understand the cultural and legal background in the Middle East. Further, fostering trade and investment in the region is fundamental to restoring 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ultimately bolstering the Korean economy.

※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Philippines, Cuba, Mexico, Arab, Investment Incentives, Control of Foreign Equity

# 목 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5
제 1 장 서 론 .....	15
제 1 절 문제의 제기 .....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8
제 2 장 중국과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19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19
I.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발전 .....	19
II.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	22
III. 최근의 외국인투자3법 정비 .....	23
IV. 향후 전망 .....	34
제 2 절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40
I. 의 의 .....	40
II. 투자지로서의 필리핀의 현황 .....	42
III.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	44
IV. 종합적인 평가 .....	77
제 3 장 멕시코와 쿠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	79
제 1 절 멕시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	79
I. 의 의 .....	79

II. 1973년 이전의 외국인투자법 .....	81
III. 1973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설치 ...	86
IV. 1984년 외국인투자지침의 제정 .....	90
V. 1989년 개정 외국인투자법시행령 .....	93
VI.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관련법에 대한 평가 .....	97
제 2 절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98
I. 서 론 .....	98
II.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	99
III.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외부적 장애요소 .....	110
IV. 외국인투자제도의 과제 .....	130
V.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 .....	135
제 4 장 중동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137
I. 의 의 .....	137
II.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	139
III.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 .....	148
IV. GCC 이외 국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및 이란 .....	164
V. 중동의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	177
제 5 장 결 론 .....	183
참 고 문 헌 .....	193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첫 번째 현상은 국제직접투자가 국제상품무역보다 국제경제관계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현상은 국제직접투자가 국제적인 은행간 대부(loan)보다 개발도상국의 외자도입에서 보다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어 각국 정부는 제한된 국제자본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국제직접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각국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자유화 한다”라는 과거의 외자도입정책으로부터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한다”라는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기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자본축적을 통한 경제발전의 촉진제로서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왔고 이에 따라, 자국의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외국자본의 비중은 차츰 커지고 있다. 특히 WTO의 출범과 더불어 국내시장을 개방되어야 할 영역은 단순한 상품생산 분야외에 서비스 분야로 까지 확대되어 최근에는 유통시장 등 새로운 분야에의 외국인투자가 증대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하여 국제화, 자유화 및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자국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자유화 경향의 외국직접투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발맞추어 세계경제의 전지구화, 일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왔음은 물론이다. 한편으로 국내경제의 외국자본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

는 역작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도 마련되고 있는 바, 외국인투자의 인센티브와 규제제도간의 조화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하여야할 관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지국가의 예측가능하고 효율적인 법률체제를 선호하며 보다 다양하고 과격적인 인센티브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에 자본도입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경제의 외국자본에의 종속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이 외국인투자 및 그 기업에 대한 규제제도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이상적인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주로 1980년대 이후 세계은행을 중심한 국제기구들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법률개혁에 적지 아니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인 이론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이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이상적인 법률체제는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법률체제는 법적 권리와 의무를 적용하는 저렴한 비용의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해당 국가의 법이 잘 갖춰져 있고 현대적이며 법원과 관료체제 적절한 인프라와 함께 제공되며 우수한 교육과 충분한 보상을 받는 인력이 있다면 거래 비용이 낮아진다. 이상의 사항을 적용하는 데는 재정적인 사항을 고려하여야겠지만, 특별히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나 과도국가의 입법과정, 행정, 법의 집행, 사법적 해석 등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불확실성이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체제가 법적 권리와 의무의 상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외국인투자자가 원하는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1997

년 세계개발보고서에서는 민간 부문이 인식하는 정치적 신뢰도와 투자자의 상호 관계를 잘 보여주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정치적 신뢰도가 높게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투자가 활발했고,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신뢰성, 법과 정책의 예측가능성, 법과 정책 적용의 일관성 등이 법의 내용만큼이나 민간 투자 유치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법률의 내용이 안정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명확할 때 법률체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의 재량권이 제한되고, 부패 수준이 낮으며, 정부기관 사이에 권한 분배가 잘 이루어져 있을 때, 특히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존재할 때 역시 법률체제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법률체제를 이상적인 패러다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이상적인 외국인투자법제의 패러다임을 구체적으로 찾아내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각국의 처한 정치·경제·사회·문화기타의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각국은 저마다 자신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외국인직접투자법을 제정하기 마련이며 시행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최근의 세계적인 동향을 주시하여 주요 지역의 몇 개 국가들을 선정하여 비교법적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외국인직접투자법의 이상적 패러다임을 분석하고 비교·검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관련법들이 우리 외국인투자법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에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외국인직접투자법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향성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의 국가마다 다소 다른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법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이로부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



합되는 최선의 요소들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연구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시간과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방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보고서는 시간과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몇 개의 국가들만을 선정, 보다 상세한 분석을 하는 제한적인 연구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차선의 것에 머물고 있음을 밝힌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보고서에서는 아시아지역의 중국과 필리핀, 중남미지역의 멕시코와 쿠바 그리고 중동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입수가 가능한 관련 자료들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분석대상이 된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국가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일부 국가를 선정하여 외국인투자관련법을 분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 채택한 분석 대상국들이 당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과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쿠바와 멕시코를 선택한 이유는 중국과 쿠바는 이들 지역에서 사회주의국가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 필리핀과 멕시코는 그 지역에서 전통적인 자유민주주의국가들이기 때문이었다. 한편 중동의 경우에는 이슬람전통이 강하여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 입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중동국가를 망라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한 외국인투자법의 발전과 현황 및 문제점외에 당해 국가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의 제반 분야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 제 2 장 중국과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I. 중국의 외국인투자법 발전

1978년 개혁개방이후 중국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으며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 훈련, 장비 등을 획득함으로써 일부 산업분야에서 중국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왔다. 그 동안, 합작기업들이 합작사업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받아 왔으며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왔다.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 시장접근제한, 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함된다.

WTO가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에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부품사용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균형의무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중국기업과 외자계기업간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라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sup>1)</sup>.

평균관세율이 22.1%에서 11.7%로 인하되며 특히 부품, 원자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원자재 조달

1) 安心, “WTO《丁部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2(총 제100기), pp.10-11.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무역업을 개방하고 WTO 가입즉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품의 물류 및 관련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지역 및 수량제한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월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판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살펴보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비교해보면 수입시장은 높은 관세율로 인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각종 수입금지, 수입쿼터, 수입제한 및 비공식적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무역장벽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다<sup>2)</sup>. 반면 내수시장의 경우, 특정산업의 투자진출 또는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많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통산업의 경우 두드러졌다<sup>3)</sup>.

---

2) 중국은 지금까지 곡물, 식용유, 설탕 등 일부 내구소비재에 대해 수입허가와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여왔다. 1999년의 경우 수입허가 및 쿼터제 대상품목의 수입액이 300억 달러로 전체수입액의 25%에 해당하였다. 이중 석유제품이 88억 달러로, 섬유류와 화학비료가 각각 44억 달러와 22억달러였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통제로서 고정가격제, 수출가격상한 및 하한, 반덤핑조치 및 보조금지금 등이다. 둘째 금융부문에서 선금금요구, 외환 분배 및 할당, 엄격한 수입외환 결제조건, 송금제한, 자금이체 지연 기타 금융통제 등이다. 셋째, 수량제한으로서 수출입쿼터, 수입금지, 수출입제한, 수출입허가 등이다. 넷째, 독점권 유형으로 무역 및 도매유통의 국유기업 독점, 수입창구 일원화 등이다. 다섯째 기타 기술적 제약으로서 중국의 기술인증 표준 및 기준의 강요, 기술규제, 수송전 검사, 복잡하고 관료적인 통관절차, 국산품과 수입품의 이원적 검사제도 등이다. 현행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실시(6종 116개품목) 및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주요개방일정과 내용은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제 취소,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제 취소,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 점진 취소 등이다.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WTO與國際貨物貿易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pp.212-251 참조.

3) 姜一春, “中國의WTO에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際商事法

또한 최근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개정이전에는 외국인 독자 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얻어야 했다<sup>4)</sup>. 그러나, WTO 가입과 더불어 TRIMs협정을 이행하여 외환수지균형 요구, 수출의무비율제도등을 폐지하여야 한다(각 지방입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 대외무역권과 관련하여서는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신의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하고 있다. 다만,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 3년이내 중국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을 부여하여야 하게 되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 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개방은 수입시장의 개발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내부경제체 개혁의 진전, 산업발전, WTO 가입, 중국내 유통·운송산업의 발전 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sup>5)</sup>.

---

務, Vol.29, No8(2001). p.124.

- 4) 그런데, 중국의 WTO가입후 기존의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국내법 규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측 당사자와 종전 계약의 재협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할지라도 중국의 계약승인 주관기관인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지방의 관련 기관이 그 계약의 개정을 쉽사리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다. "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
- 5) 馬 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1998년 제13기 p.23.

## II.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분야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우려한다.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재까지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제조산업과 일반조립가공(Assembly & Processing)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 기초설비와 기초산업, 고도의 신기술산업, 신흥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교적 적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투자총액중에서 농업투자는 1.76%, 과학기술서비스투자는 0.31%에 불과하다고 한다<sup>6)</sup>.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경제특구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구에도 도입되는 외자규모는 비교적 작아 이로 인해 중국경제발전의 지구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은 투기성 외자의 급속한 유입·유출로 인한 금융혼란을 우려한다. 투기성 외자의 급속한 유입·유출은 국내자본의 流量변화를 크게 하여 금융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에 대한 통제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그 밖에도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에서 일부 오염산업의 진입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sup>7)</sup>.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다면 낮은 효율성을 갖는 분야에 대규모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국가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sup>8)</sup>.

6) 易雪玲, “引用外商直接投資的風險防范”, □□財經理論與實踐□□, 2001년 3월호(제22권 제110기), p.70.

7) 이와 관련하여 중국도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범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潘惜唇, “論GATT環保例外條款的適用條件和發展趨勢”, □□中國法學□□, 2001년 5期, pp.1666-169.

8) 梁咏·章海彤, “外國直接投資的中國市場進入許容問題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http://www.law-lib.com/lw/lw_view.asp).

### Ⅲ. 최근의 외국인투자3법 정비

#### 1. 정비의 배경과 개요

중국의상투자 법률·법규라 함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을 위주로 하는 외상투자3법, 행정법규, 부문규장과 지방성법규를 말한다. 외상투자의 법률·법규의 WTO규칙과의 부합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WTO 규칙과 중국정부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외상투자3법을 정비하였다. 외상투자3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중국에서는 정부부문, 학자, 변호사 및 외상투자기업간에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년동안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sup>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sup>10)</sup>은 2000년 10월 31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2001년 3월 15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공포되었다. 또한 2000년 3월 15일 국무원도 외자기업 실시세칙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2000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외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에 대한 심의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는 여러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그 후 2000년 11월 개최된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1년 3월 15일 第9届 전국인민대표

9)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 (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p.582.

10)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1979년 7월 1일 개최된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후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79년은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의 시발점이었으며 1990년의 개정은 관련 규정을 국제관례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대회 4차회의<sup>11)</sup>에서 중의합자경영기업법이 개정(2차)되었으나, 수정범위가 1백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폭에 그쳤다. 그 후 2001년 7월 22일 국무원은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제3차)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시행된 후 18년이 경과한 합자경영기업법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 있거나 WTO 규범과의 부합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향후에도 그에 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2)</sup>.

이상의 외상투자3법의 개정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WTO 가입을 위한 목적에서 WTO 협정 특히 TRIMs협정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 등에서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며<sup>13)</sup>, 그 심의와 논의과정에서 개개의 규정들에 대하여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의 향후 개정 방향을 시사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sup>14)</sup>. 최근의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설립업종 금지 또는 제한의 완화

### (1) 외국인투자3법의 최근 개정내용

2001년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 이전에는 제4조에서는 외자기업 설립금지업종으로서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

---

11)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서는 修正案(草案)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위원회의에서 심의된 내용과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王維澄,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缺課的報告”, 法制日報 2001年 3月 15日字 참조.

12) “就中外合資京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法制日報 2001年 8月 3日字.

13) *Ibid.*

14) 胡振杰, “入世對外商投資法律制度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 21日字.

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는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투자신탁, 5. 리스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하되, 이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런데, 예컨대, 제4조 상기 4호에서 보듯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업종이외에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는 업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외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하는 업종을 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중국의 입법투명성 수준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제5조의 제한업종 역시 대외경제무역합작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이 외자기업의 설립이 어려운 분야였으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기준 자체도 없었다. 그러나, 개정 시행세칙은 종전의 제4조와 제5조를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다”라고 통합하였으며, 그런데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대단히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입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전에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3조에서는 합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업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열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가이드라인 관리는 중국의 외자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WTO가 주장하는 자유화 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이 일취월장하는



오늘날에는 각산업의 변화가 격심하여 새로운 업종이 소멸되기도 하고 출현하기도 하므로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의 대응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일부 실무자들이 법률이 禁止類과 制限類의 업종을 정하되,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조정하는 제안도 제기된 바도 있다. 이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개정된 외자도입법 실시세칙과 유사하게 “국가가 합자기업의 설립을 장려, 허가, 제한 또는 금지하는 업종은 국가의 《외국인투자지도방향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한다”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조건과 절차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시장경제에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舊 제4조의 합영기업 설립과 관련하여 구비하여야 할 조건을 삭제하였다<sup>15)</sup>.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절차에 관하여서도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는 바, 중국합영자로 하여금 기업주관부문에 외국합영자와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합영기업의 항목건의서와 초보적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신청인이 직접 심사승인기관에 관련 심사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sup>16)</sup>.

---

15) 제4조는 “합영기업의 설립신청시 중외합영자는 반드시 기업설립에 따른 경제적 인 효용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합영기업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선진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품종을 증가할 수 있어야 하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와 자재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2)기업이 기술개조에 유리하여 적은 투자에도 빠른 투자효과와 수익의 증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기술인력과 경영관리 인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합영기업이 설립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16) 就中外合資京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2001年 8月 3日 法制日報.

## (2) 외국인투자방향지도에 관한 법규의 최근 개정내용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제4조), 규정 본문에서는 장려, 제한, 금지영역만을 열거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우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으로 농업신기술, 에너지, 교통, 신재료, 환경 분야 등을 규정하여, 향후 중국의 중점 투자유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의 발표로 인하여 중국의 투자정책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었으며 특히 장려산업 관련 업종 및 은행, 보험, 증권, 관광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對중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외국인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에서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으나, 신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되었다.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되었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장

려를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을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쟁제도 도입, 경공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 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 3. 외국인 지분의 제한 문제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배적 지분확보로 인한 중국의 거시적 경제 통제능력의 저하를 우려하여왔다. 중국의 개정전의 외국인투자자법체제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상품수출비율을 의무화한 규정이 있었다. 90년대 이후 세계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WTO가입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은 더 이상 상품수출비율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以市場換資金”, “以市場換技術”(시장을 내주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이라는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자신의 중국내 상품판매수량을 크게 확대하여 음료, 화장품, 통신상품 등과 같은 일부 사업분야를 선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내에서 독점적 지위까지 획득하기도 하였다<sup>17)</sup>.

한편,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중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보면 외국직접투자가 합자기업에서 점하고 있는 외자의 최저비율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령에서는 외국인투자지분이 중국측 투자지분보다 높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때로는 합영 또는 합작기업내에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허용할 경우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통제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왔다.

---

17) 梁 咏·章海彤, *op.cit.*.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각 산업 및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데 동의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분야별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中國內資企業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외자계기업의 중국측 당사자들이 왕왕 자신의 상표의 무형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에서 그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외자인 투자자가 외자계기업에서 지배적 지분을 확보한 후 외자 상표 또는 새로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본토의 저명상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sup>18)</sup>.

#### 4. 내국인대우의 문제

##### (1) 의 의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은 유리한 투자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국의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조건은 각양각색이며 개략적으로는 유형환경과 무형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자원·자연환경·노동력 수준·기초설비 등은 유형환경에 속하며, 사회안정, 정국안정, 정치·경제체제 및 정책의 안정성, 법률체계의 건전성 정도, 사회의식의 개방정도 등은 무형환경에 속하며 상술한 유형 및 무형의 요소중에서 법적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9)</sup>.

통상적으로 一國의 외자입법상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두 단계로 구분되는 바, 첫 번째는 외자도입승인단계(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

18) 예컨대 廣東省 嶺南餅干廠은 1999년 60%의 국유자산 인민폐 3000만원으로 香港 遠東公司와 合資경영기업을 설립하면서 광동성의 저명상표인 “嶺南”이라는 상표를 무상으로 합자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東凱公司가 외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면서도 “柯達”이라는 상표는 美貨貨 116억 달러의 상품가치를 인정하였으나 東凱라는 상표는 인민폐 6억 원에 불과하였음을 중국 저명상표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예로 들고 있다.

19) 梁 咏·章海彤, *op.cit.*...

단계이며 두 번째는 외자계기업의 경영(Operation of Foreign Investment) 단계이다<sup>20</sup>). 그 중 선행하는 단계인 외자도입승인에 대해서는 각국이 입법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sup>21</sup>),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연구는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승인에 관련된 법률들이 그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다.

외자도입승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왕왕, 다른 관련 개념에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은 외자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외자도입의 승인과 외자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자는 후자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22</sup>).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은 그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자에 대한 대우는 일정한 범위의 내국민 대우, 우대 및 차별대우 등 3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sup>23</sup>).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크고 작은 제한을 받고 있는 바, WTO 협정을 비롯하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에서, 내국민대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이하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대우의 발전추세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내자와 외자의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권국가가 외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내국민대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전통민족산업, 특별한 자연자원 등의 수요에 근거하여 내국민대우의 합리적인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다 할지라도 결코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0) 徐崇利, “外資准入的晚近發展趨勢與我國的實踐”, □□法學研究□□, 1996년 제5기, p.67.

21) 楊鵬慧, “世貿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准入”, □□投資研究□□, 2000년 10월호, p.43.

22) 徐 箐, “加入WTO與我國外資法的完善”, □□法學□□, 2001년 제1기, p.67.

23) TRIMS, “協定與我國對外資的待遇標準”, □□法商研究□□, 1999년 제1기, p.59-60.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자도입 영역에서 순수한 내국민대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국은 모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령 외자에 가장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국내의 航運, 원자력, 수력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과 항공, 관련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에 대하여 소수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 외자도입허용영역의 제한은 엄격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외자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부문의 상당수가 서비스 산업에 속한 것이다<sup>24)</sup>.

또한,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하여 시장진입조건면에서 초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종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의 의미는 외국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의 대우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국의 시장, 기간설비 기타 투자환경 자체가 선진국보다는 열악한 경우 우대조치를 통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25)</sup>.

## (2) 외국인투자3법의 개정

내국민대우원칙에 근거하여 원자재구매와 상품판매 등의 분야에서 일부 제한적인 규정을 정비하였다. 예컨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경우, 합영기업이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등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중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중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국합자경영기업의 구매물품공급채널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과 서비스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면에서 중국의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함

24) 楊鵬慧, “世界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和海外投資”, *op.cit.*..., p.44.

25) 盧進勇, □□入世與中國利用外資和海外投資□□,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1), p.108.

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판매채널, 가격등의 분야에서의 제한을 삭제하였다<sup>26)</sup>.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65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물자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수출하는 제품에 직접 사용되는 금, 은, 백금, 석유, 석탄, 목재의 6가지 물자는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제공하는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그 대금은 인민폐나 외화로 지불한다. (2) 중국의 대외 무역공사가 경영하는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을 구매할 때 공급, 수요 쌍방이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협의로 그 가격을 결정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지불한다. (3)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용 탄, 차량용 기름, 그리고 위 제(1), (2)항에 기재된 물자를 제외한 기타 물자의 구매가격 및 합영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물, 전기, 가스, 열, 물자운수, 노무, 공정설계, 자문서비스, 광고 등의 비용을 결정할 때 “합영기업은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 대금은 인민폐로 지불한다”를 “합영기업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 및 물, 전기, 전기, 가스 에너지, 화물운송, 노무, 공사설계, 자문, 광고 등의 서비스 비용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로 개정하였다(제56조).

### (3) 내외자통일입법과 내국민대우 문제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는 이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쌍무적투자보장조약에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성 법률, 법규도 외국인투자가에 내국인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외상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增值稅), 소비세, 영업세 등의 세수면에서 국내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26) “就中外合資京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法制日報□□, 2001年 8月 3日字.

지방성 법규 특히 深圳과 廈門의 법규중에는 이미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sup>27)</sup>.

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법률, 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내외자 입법의 통일을 고려하여야 한다. 종전의 내외자를 구분하여 입법을 하는 이른바 쌍궤제 입법모델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28)</sup>. 내외자통일입법을 고려하여 현재의 3건의 외상투자기업법률들에서 관련 외상투자기업법중 평등주체간의 경영관리활동의 내용 예컨대, 외상투자기업 설립, 해산, 내부조직관리기구, 경영관리기구, 법률책임등을 분리하여 직접 회사법의 관련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외상투자기업법중의 규정중 비교적 선진적인 제도 예컨대 수권자본제와 법정자본을 결합하는 제도, 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을 회사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예컨대, 외자도입의 승인, 투자방향, 자본구성, 투자비율, 심사승인, 투자기한, 내국민대우, 외자우대대우, 수용국유화시의 보상, 외자의 보호, 분쟁의 해결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하는 외상투자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세수분야에서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조세항목은 폐지하여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과 국내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일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소득세율은 근접시켜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할 수 잇는 조건은 이미 구비되어 있다. 외상투자관계에 대하여 직접 국내법률, 법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서 외상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

27) 聲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년 제4기,

28) *Ibid.*



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up>29)</sup>.

#### IV. 향후 전망

##### 1. 준비의 기본방향

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sup>30)</sup>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상투자기업<sup>31)</sup>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률, 법규, 외자유치 정책등의 준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은 WTO의 방침에 근접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부여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sup>32)</sup>.

중국의 대외무역을 조정하는 기본법인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제6조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계약당사자, 참가당사자에게 또는 호혜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WTO가입전후에 중

---

29) *Ibid.*

30) 중국어로는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이다. 흔히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5년 제정)에 기초하여 설립되며 外國株主의 持株가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5%이상인 주식회사이며 동 잠정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 기타의 관련법규정이 적용된다(동 暫行規定 제2조, 제3조, 제25조).

31) 우리나라에서는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국투자가투자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32) 劉新宇, *op.cit.*...,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p.583.

국이 외국자본의 진입허용의무를 구체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지표를 작성한 것이다<sup>33)</sup>.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더욱 많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 이른바 三資企業에 대하여 “초국민대우”를 부여하여 內外企業을 차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sup>34)</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도입과 도입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심사승인과 관리제도를 통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자주권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기능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중국도 외자도입자유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한편으로는 투자장벽을 감소시키고 투자보호를 강화하고 투자통제를 완화하고 정부간섭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외자에 대하여 비시장경제적 성격의 과도한 요구 또는 장려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WTO가입이후 다음과 같은 기초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첫째, WTO의 각종 투자관련 협정의 관련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국내입법 또는 국내입법중의 관련 조항과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超내국인대우”와 “低내국인대우”는 “내국인대우”로 전환될 것이다<sup>35)</sup>.

둘째, WTO 제협정의 요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진입제한<sup>36)</sup>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장

33) 陳 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法制日報 2001年 9月 2日字.

34) 易雪玲, “引用外商直接投資的風險防範”, □□財經理論與實踐□□, 2001년 3월호(제22권 제110기), p.69.

35) 梁 咏·章海彤, *op.cit.*..

36) 시장진입제한조치는 투자관련조치(TRIMS)중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徐勁松, “論‘與投資有關的貿易措施’”, □□中國法學□□ 2001년, p.6. p.115.), 여기에는 원산지규칙, 국가기술표준, 특정산업부문의 무역제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등이 포함된다.

기적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內資企業이 외자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부문별, 층차별 시장개방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법개혁은 투명성원칙에 입각할 것이며 정부간섭을 축소시켜 공정경쟁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sup>37)</sup>. 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감소시키되, WTO 관련 협정의 예외적인 조항을 입법화하여 일시적으로 내국민대우의 의무에서 이탈하여 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sup>38)</sup>.

중국의 외자관련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협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sup>39)</sup>.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문제, 외국인투자와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문제, 수량제한문제<sup>40)</sup>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WTO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종전의 그 어느 때보다 중국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인 단일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이

---

37) 草海彤, “外國直接投資中中國市場准入問題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http://www.law-lib.com/lw/lw_view.asp).

38) *Ibid.*; 선진국들도 적지 아니한 분야에서 외자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쌍무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미국식 쌍무적인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포함하는 모든 쌍무적 투자협정은 모두 자본도입국의 외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다변적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예컨대, TRIMs협정과 GATS 협정 등 WTO 체제하의 투자관련 협정들은 모두 GATT 체제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특색인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WTO 체제하의 투자협정상 시장진입자유화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협정의 적지 아니한 조항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수준이 같지 아니한 세계에서 각국 외자자유화의 정도와 범위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일치하여 허용하는 통일적인 고도의 시장진입자유화 규칙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 예컨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법률의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 자체도 WTO협정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張桂紅,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2001年 4期(總第102期), p.184.

40) 예컨대 《福建省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補充規定》제5조 등도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2000.4(총 제96기), p.16.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협력 및 상호 관계도 입법론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1)</sup>.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중국내자기기업보다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진입 규제 기타 관계에서 내자기기업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내수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병행하여왔다<sup>42)</sup>. 그러나 점차 외국인투자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분야중 상당부분이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 허용분야로 편입하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시 대외적으로 수락한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 시장분야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시장 개방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국내시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서비스 시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국내시장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여하였던 세제측면에서의 우대 조치는 WTO가입이후 내외자기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자기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노동법, 외국환관리 기타 영역에서 일반 중국기업(內資企業)과는 달리 취급되어 왔는바,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기초하여 중국국내에 설립된 중국기업(법인격을 갖는 경우에는 중국법인)이지만 외국기업을 우

41) 張桂紅, *op.cit.*, p.185.

42) 중국의 외자법령과 WTO 규범과의 불일치와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曹建明(主編), *WTO與中國的司法審判*,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p145-170 참조.

대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중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의 우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를 위한 우대조치 그 자체가 WTO의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그러한 역차별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도 태될 수 있는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조치의 폐지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향후 내외자 평등의 원칙이 법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자본의 시장침입의 허가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은 WTO가입이후 대외적으로 수락한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외자에 대한 업종규제가 완화된 항목, 예컨대, 방직업, 화학, 석유공업, 건설업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확대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광산자원, 서비스무역, 여행자원의 개발, 수상운송 등에의 외자침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허가 기준의 완화·개방에 관한 세칙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이상을 차지하던 제조업분야의 외자투자율이 낮아지고 종전에는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부동산과 호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WTO가입이후에는 금융, 통신, 유통, 전문 서비스 분야가 시장규제 완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선진국이 직접투자의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투자 경향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선진국에 의한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③ 중국에 진출하는 투자형태도 종래의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 이른 바 3자기업의 설립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M&A에 의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투자 경향이 국경을 초월하는 M&A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WTO 개방에 대비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외자에 의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외자측에 대한 진출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종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장려, 제한, 금지되는 업종을 두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정부행정의 다른 레벨에서 직접심사하고 인가를 부여하였다. 향후에는 정부행정의 제한, 금지 항목의 심사와 장려, 우대항목의 자격 인정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등록 및 심사업무를 산업관리부문에 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확대이다. 중국은 모든 외국기업이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록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대외무역권을 불허, 이들 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었다.

## 2. 투자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을 정리하여 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라는 3가지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한 외상투자기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외

상투자기업에 대한 비준제도(면허주의)를 폐지하고 완전한 내국민대우를 외국투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비준제도는 당장은 폐지하지 말고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될 법률을 현행 회사법의 특별한 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법에서 그러한 특별한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내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 제 2 절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I. 의 의

필리핀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은 1986년 이후 즉, 1986년 국민의 힘 혁명(또는 EDSA 혁명)이 발생하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정권이 전복되고 코라손 아키노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제정된 것들이다. 1986년의 정치적 폭풍이 지나간 뒤, 필리핀 정부는 외국인투자 자유화와 국가 재건과 현대화를 위한 일련의 법을 제정<sup>43)</sup>하였는바, 당시 특히 정부의 재정이 피폐한 상황에서 필리핀의 재건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법을 통하여 그러한 노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였다.

그러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은 비교적 최근의 동향을 잘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비교적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 법은 필리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롭고 신선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 기조는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협력 등 다른 개발도상국이 도입한 법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

43) Dave L. Llorito & Kristine R. Payuan, "More Tax Incentives Mean More Losses For RP, The Manila Times Internet Edition", <http://www.manilatimes.net>

필리핀 외국인투자관련법도 인센티브나 외국인 소유권제한의 완화를 통하여 필리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수많은 법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정되었고 이들이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다음 외국인투자의 기본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몇 개의 법만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역시 이 보고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 동안 일반적으로 또는 필리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역사적·이론적 분석을 적절하게 수행한 연구 자료들이 축적<sup>44)</sup>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법외적으로 제기된 지나친 이론적인 논의는 배제하기로 한다.

필리핀의 최근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들은 비교적 풍부하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그 제정이후 필리핀 관련 정부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1) 1987년 필리핀 헌법상의 외국인투자규정, 2) 1987년 종합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 3) 1987년 종합투자법과 함께 필리핀 외국인투자법의 양기둥을 이루는 1991년 외국인투자법의 핵심 조항, 1991년 외국인투자법, 4) 1992년 군기지지이전·개발법의 주요 내용, 5) 1995년 경제특별구역법에 따라 설치된 경제특구 제도와 인센티브, 6) 2000년 소매거래자

---

44) 대표적인 것들로는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United Nations 1999);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ment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OECD 1999); Nagesh Kumar, Globalizatio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s (Routledge 1998); Nagesh Kumar, Globalization and the Qualit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xford 2002); Susan McMilla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ree Regions of the South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ress Ltd. 1999); Theodore H. Mora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Development (Inst. for Int'l Econs. 1998); Theodore H. Moran, Beyond Sweatshops (Brookings Inst. Press 2002); Frank Sader,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Infrastructure (The Int'l Fin. Corp. and the World Bank 2000).



유화법의 내용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제도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들 개개의 법률 등의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을 상세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개의 법률에 대한 장점에 대한 분석,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기타 필요한 개정 등에 대하여도 다루었다.

한편, 이상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바, 이들 법률들이 비교적 장기에 걸쳐 세부적인 내부적 논의를 거쳐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은 적절하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비교적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와 같이 분산되어 있는 개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 체제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절차와 투자기업의 활동을 단순한 규율의 틀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투자지로서의 필리핀의 현황

필리핀 공화국은 동남아에 위치한 7,1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이다. 총면적은 이탈리아나 미국의 애리조나 주와 비슷하다. 지리적으로 크게 북쪽의 루손, 중앙의 비사야 군도, 그리고 남쪽의 민다나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필리핀 북쪽으로는 일본, 홍콩, 대만, 한국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서쪽으로는 태국이 있다. 필리핀의 위치는 동쪽과 서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제 항공로와 해양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sup>45)</sup>.

---

45) Sonia M. Zaide, *The Philippines: A Unique Nation*, (2nd ed. 1999), p.6.

바로 이러한 위치로 인하여 필리핀은 “서양에서 아시아로의 관문”, “동양에서의 바다의 진주”와 같은 찬사를 들어왔다. 일본, 한국, 중국이 서방에 문호를 개방하기도 전에 필리핀은 이미 미국과 유럽과 연결되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였다.

필리핀 인구는 2002년 7월 현재 약 8,450만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필리핀인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현재 인구의 83% 정도는 로마카톨릭 신자이며, 이슬람교는 필리핀 남부로 제한되어 있다<sup>46)</sup>. 필리핀인들은 대부분 인도-말레이 혈통이지만, 중국인, 아랍인, 인도인, 미국인, 유럽인도 적지 않다<sup>47)</sup>.

필리핀어(타갈로그어 기반)가 공용어이며 영어는 비공식적인 통용어이다. 하지만 필리핀에는 78개 주요 언어군과 500가지 방언이 존재한다. 흥미롭게도 필리핀은 세계 3위의 영어 국가이고, 필리핀인들은 아시아에서 몇 안 되는(혹은 유일하게)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국민이다. 필리핀인들은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며, 기본적인 식자율은 94%에 달한다.

1987년 필리핀 헌법에서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2001년 1월 20일 조셉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공적 부패 혐의로 작은 쿠데타에 의해 자리에서 밀려난 후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입법 기관은 임기 6년의 24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상원과 3년 임기의 2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하원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법 기관은 대법원과 다양한 하위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70세에 퇴직한다. 필리핀 법은 앵글로-아메리칸, 로마, 스페인 법을 조합한 형태이다<sup>48)</sup>.

46) *Ibid.* p.19.

47) *Ibid.*

48) <http://www.chanrobles.com/philsupremelaw1.htm>.

필리핀 경제는 경공업과 쌀, 옥수수, 코코넛, 파인애플, 사탕수수 등의 농산물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필리핀은 구리, 코발트, 니켈, 은, 철, 금이 풍부하다. 또 필리핀은 식품 가공, 섬유, 피륙, 목공, 임산물, 가정용품 등의 공업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양식업, 마이크로회로, 의류, 가구 등의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sup>49)</sup>. 콜센터, 사업절차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번역(Data Transcription), 웹 개발 및 관리, 컴퓨터 네트워크, 데이터 통신 등이 ICT 서비스에 속한다<sup>50)</sup>. ICT의 육성은 아로요 대통령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sup>51)</sup>.

### Ⅲ.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 1. 1987년 헌법하에서의 외국인투자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1987년 필리핀 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헌법에 의거하여 필리핀 정부는 국가의 관련 법령의 틀내에서 또한 국가의 목표와 우선과제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권한을 행사한다<sup>52)</sup>. 정부는 헌법에 의거하여 천연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 및 감독권을 갖지만, 필리핀인이 자본의 전부 소유하거나 최저 60%의 자본을 소유한 법인과 함께 공동생산, 조인트벤처, 생산 공유 협정 등을 통해 자원을 탐사·개발할 수 있다<sup>53)</sup>. 이

---

49) Official Web Site of the Board of Investments, at <http://www.boi.gov.ph> 참조.

50) Van V. Mejia, "The Modern Foreign Investment Laws of the Philippines", Temp. Int'l & Comp. L.J., Vol.17(2003), p.471.

51) *Ibid.*

52) 필리핀 헌법 제12조.

53) *Ibid.*

러한 내국인 60% 지분 요건은 공공시설과 교육 기관의 외국인 소유 제한에 대하여도 적용된다<sup>54)</sup>.

그러나, 이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에서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일부 투자에 대하여 필리핀인의 최소 지분요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55)</sup>. 의회는 이러한 권한을 1991년 외국인투자법을 통해서 행사하였으며, 이 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는 바, 이 리스트에 의하여 외국인 소유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영역이 정하여지고 있다<sup>56)</sup>.

## 2. 1987년 종합투자법

### (1) 기본원칙

1987년의 종합투자법은 필리핀의 특유의 현대적 외국인투자법으로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는 필리핀인과 외국인, 개인과 법인 등의 투자이다<sup>57)</sup>. 이 종합투자법은 민간 부문은 경제 성장의 주요 동인으로서 민간사업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긴급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기업활동의 규제철폐 또는 자율 규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반영하고 있다<sup>58)</sup>.

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필리핀인이 아닌 자가 외환 또는 다른 자산의 형태로 소유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액이 실제로 필리핀인에게 전달되고 중앙은행 및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에 등록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59)</sup>. 투자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외국인투자촉

54) *Ibid.* 제12조 및 제15조.

55) *Ibid.* 제12조.

56) Foreign Investment Act 5(a) (1991) (Phil.), <http://www.chanrobles.com/index1.htm>.

57) Exec. Order No. 226, The Omnibus Investments Code (1987) (Phil.), <http://www.chanrobles.com/default8eono226.htm>.

58) *Ibid.*, 제 2 조.

59) *Ibid.* 제14조

진 기관으로, 종합투자법의 시행책임을 지고 있으며<sup>60)</sup>, 공공 투자자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기준에 따르기는 하지만 필리핀 투자의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sup>61)</sup>. 투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는 1) 투자 우선순위계획 발표, 2) 등록 기업으로 분류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처리, 3) 재정인센티브의 감독 등이 있다.

## (2) 외국인투자등록기업

### 1) 개념

1987년 종합투자법(Omnibus Investment Code)에서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바, 등록 기업을 “필리핀 법에 의해 법인화되고, 조직되고 존재하는 개인, 파트너십, 조합, 기타 법인으로서 투자위원회에 등록된 실체”로 정의하고 있다<sup>62)</sup>. 이러한 투자위원회에의 등록은 종합투자법에서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향유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등록 규정은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 2) 일반적인 지분요건

등록 기업으로서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분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요건은 1) 자연인의 경우는 필리핀인이어야 하며, 2)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필리핀 법에 의해 조직되어야 하며 필리핀인이 자본의 최소 60%를 소유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3) 합명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필리핀 법에 의해 조직되고 발행주식이나 보통주의 최소 60%가 필리핀 국민의 소유여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60%가 필리핀인이어야 한다<sup>63)</sup>.

---

60) *Ibid.* 제 3 조.

61) Official Web Site of the Board of Investments, at <http://www.boi.gov.ph> 참조.

62) Omnibus Investments Code 제3조.

63) *Ibid.* 제32조.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등록기업이 되려는 필리핀의 주식회사들은 40%까지 외국인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또한 이사회는 40%까지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sup>64)</sup>. 따라서 다국적기업 등 외국 법인이 종합투자법상의 인센티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필리핀인이나 필리핀 기업과 함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

### 3) 선진기업의 지분요건

1987년 종합투자법은 상기의 외국인의 40% 소유지분 제한에 대한 규정의 예외로서 선진기업의 지분요건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 바, 외국기업이 선진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 기업의 외국인 지분 40% 이하라는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sup>65)</sup>. 따라서, 선진기업은 최고 100%까지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다. 선진기업이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1) 필리핀 내에서 현재 상업적 수준으로 생산되지 아니하는 제품이나 원자재의 제조 또는 생산, 2) 필리핀 내에서 새롭거나 시도되지 아니한 디자인, 생산방식, 공정, 생산 시스템의 사용, 3) 정부가 선언한 국가적 자급 계획에 필수적인 농업, 광업, 또는 식품가공업, 4) 새로운(재래적인 것인 아닌) 연료의 생산 및 사용 등이다<sup>66)</sup>.

따라서 다국적기업, 다국적기업의 지사, 또는 관련 법인으로 60%의 필리핀인 지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필리핀에 새롭거나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활동의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기업이라 할지라도 후 30년 이내에 필리핀 내국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여야 한다(또는 생산의 100%를 수출하여야 한다). 또한 선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필리핀인에게만 허용하는 사업은 수행할 수 없다<sup>67)</sup>.

64) *Ibid.* 제15조.

65) *Ibid.* 제32조.

66) *Ibid.* 제17조.

67) *Ibid.*, 제32조.

#### 4) 등록기업의 경제 활동

등록기업의 요건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업의 그 자체와 관련된 것이다. 즉, 등록기업은 1) 최신의 투자우선순위계획에서 정하는 우선적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예정이어야 하며, 2) 총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고 있거나, 현재 존속 기업으로 투자위원회가 정하는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3) 수출품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수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4) 필리핀에서 제작된 TV, 영화, 음반의 수출과 관련된 기술적 또는 전문적 서비스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투자우선순위 계획은 투자위원회에서 매년 업데이트하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장려될 경제활동의 범주를 규정하는 부분이다<sup>68)</sup>. 그러나, 매년 투자우선순위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장기적인 법적 불확실성, 예측가능성의 부재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투자우선순위 계획에서 “우선” 투자 영역으로 분류된 영역 중에는 ICT, 인프라, 에너지자원, 의약품, 공업제품, 관광 등이 있었다<sup>69)</sup>.

#### 5) 국가경제에의 공헌과 비우선적 투자의 분리

등록기업의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건전하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이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고자 하는 우선적인 부문의 발전과 필리핀 경제 전반에 모두 기여할 수 있음도 입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업이 우선적 활동과 비우선적 부문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우선적 사업과 비우선적 사업의 투자, 수익, 비용, 이익, 손실 등을 구별하고 분리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68) *Ibid.* 제26조 및 제27조.

69) Investment Priorities Plan (2002) (Phil.), <http://projects.xti.com/bsp-iro/investor.shtml> 참조.

을 적용하여야 한다<sup>70)</sup>.

#### 6) 평가, 허가, 인증

투자위원회는 등록기업 신청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다. 즉, 1) 당해 기업에서의 필리핀인의 지분과 지배의 정도, 2) 예상수익률, 3) 우선적 부문내에서 독점을 야기하지 아니할 것, 4) 필리핀 노동력과 원자재의 이용 정도, 5) 첨단기술의 현지 조건에 따른 적용, 6) 당해 기업의 지분과 소유권 분산의 정도, 7) 기타 투자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등이다<sup>71)</sup>. 신청 기업들은 투자위원회가 신청 이후 20일 내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sup>72)</sup>. 허가가 부여되면 투자위원회는 등록 인증서를 모든 등록기업에 발급한다<sup>73)</sup>.

### (3) 투자인센티브 제도

#### 1) 등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 ①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

종합투자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규정은 투자위원회 등록기업과 다국적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관한 것이다<sup>74)</sup>. 인센티브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선진기업에 대한 6년간의 소득세 면제이다. 비선진기업에 대해서는 4년간의 소득세 면제가 부여된다<sup>75)</sup>. 소득세면제기간 동안 신규 등록기업은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으며 투자위원회는 해당 기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 면제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1) 투자위원회가 정하는, 근로자 수에 대한 자본장비 비율 요건, 2)

70) Omnibus Investments Code 제32조.

71) *Ibid.* 제35조.

72) *Ibid.* 제34조.

73) *Ibid.* 제37조.

74) Republic Act No. 7918 (1995) (Phil.), <http://www.chanrobles.com/republicactno7918.htm>.

75) *Ibid.* 제39조.



투자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필리핀산 원자재 사용, 3) 영업후 최초 3년간 연간 500,000달러 이상의 외환 비축 또는 수입이 있을 것 등이다<sup>76)</sup>.

비선진 등록기업의 경우에는 저개발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 6년동안의 소득세면제가 부여된다<sup>77)</sup>. 저개발 지역이란 1인당 GDP가 낮은 지역, 투자가 적은 지역, 실업 및 불완전취업율이 높은 지역, 인프라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 개발된 도심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저개발 지역에 위치한 등록기업은 해당 기업이 담당하는 인프라 및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100%까지 과세대상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한 인센티브는 인프라, 공공시설, 수도 시설 등이 부족한 지역 또는 산업화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투자위원회가 설정한 지역에 위치한 등록기업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다.

성장하고 있는 등록기업은 그 성장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추가적으로 3년 동안의 소득세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다<sup>78)</sup>. 1987년 종합투자법에 의하면 성장이란 현대화, 재건, 규모 확대, 생산량 증대 등을 말한다. 종합투자법에 의하면 인건비의 50%의 가액에 상당하는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도 부여된다<sup>79)</sup>. 다만, 이러한 공제는 본래의 소득세 공제와 동시에 부여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등록기업은 장비, 여분의 부품, 원자재, 소모품, 가공제품 수출품 등의 수입에 대하여 통관 절차 간소화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다<sup>80)</sup>.

## ② 기본적 권리와 보증

위에서 언급한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종합투자법에는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게 특히 의미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

---

76) *Ibid.*

77) Omnibus Investments Code 제40조.

78) Republic Act No. 7918 제39조.

79) Omnibus Investments Code 제19조.

80) Republic Act No. 7918 제39조.

들은 투자법 2장에 “기본 권리와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정리되어 있다. 종합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투자를 청산하는 때의 모든 수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권리, 본래 투자가 이루어진 통화로의 투자로부터의 소득을 송금할 권리, 해외의 대출 및 채무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송금할 권리, 투자의 몰수와 징발로부터 면제되는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 2) 다국적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 ① 인센티브의 내용

종합투자법은 필리핀에 지역본부(Regional Headquarter: RHQ) 또는 지역영업본부(Regional Operation Headquarter: ROHQ)를 설립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sup>81)</sup>. 종합투자법에서는 다국적기업을 외국의 단일 기업 또는 기업군으로 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합투자법에 따라 지역본부는 소득세를 면제받으며, 지역영업본부는 1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지역본부는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또한 지역본부와 지역영업본부 모두 지방세, 수수료, 요금 등이 면제된다. 그러나 토지개발과 장비에 부과되는 부동산세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본부와 지역영업본부에 대하여는 장비와 자재의 수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② 자격요건

지역본부는 다국적기업의 사무소로서 필리핀에서 수익을 올리지는 아니하지만, 해당 다국적기업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기타 외국 시장에 있는 자회사, 지사, 계열사(이하 다국적기업의 “관련법인”으로 통칭)에 대한 감독·통신·조정센터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81) Republic Act No. 8756 (1999) (Phil.), <http://www.disini.ph/res<uscore>ra8756.html>.

볼 때 외국기업에 해당한다. 지역본부는 필리핀 법이 아닌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해 설립·조직·존속한다.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서 지역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우호적인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ttee)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해당 다국적기업은 최소한 필리핀영사관, 필리핀대사관, 또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인증을 받고,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모국에서 해당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타 외국의 시장에서 관련법인과 국제교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둘째, 다국적기업의 주요 임원은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1) 해당 다국적기업의 이사회가 필리핀에의 지역본부 설립을 승인하였거나, 2) 지역본부의 활동은 다국적기업의 관련법인의 감독·통신·조정센터로 한정되고, 3) 지역본부는 필리핀에서 일체의 수익적 활동을 하거나 필리핀에 소재하는 관련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필리핀의 관련 법인을 대표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며, 4) 지역본부는 투자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에 영업 보류 및 연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통보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셋째, 해당 다국적기업은 매년 필리핀 내에서의 지역본부 운영을 위하여 미화 50,000달러 이상을 송금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위원회에 해당 송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지역영업본부는 외국기업으로, 외국 법에 의해 개설, 조직, 존속하며, 그 목적은 필리핀 내의 다국적기업의 관련 법인을 보조하는 것이다. 지역본부와는 달리 다국적기업의 지역영업본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 즉 1) 일반적인 경영 및 기획, 2) 사업기획 및 조정, 3) 원자재 및 부품 조달 및 공급, 4) 기업금융 자문 서비스, 5) 연구개발 서비스 및 제품 개발, 6)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7) 데이터 처리와 통신, 8) 기업 개발 등이다.

다국적기업이 필리핀에서 지역영업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업과 금융기관의 지역영업본부의 경우에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필리핀중앙은행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다국적기업은 최소한 필리핀영사관, 필리핀대사관 또는 통상산업부(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로부터 인증을 받고,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모국에서 해당 기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또는 다른 외국 시장에서 관련법인과 국제교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증하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주요 임원은 다음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1) 해당 다국적기업의 이사회가 필리핀에서 지역영업본부 개설을 승인하여 상기의 8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활동에 중사하도록 하였으며, 2) 지역영업본부의 서비스는 다국적기업의 관련 법인 이외의 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고, 3) 지역영업본부는 직간접으로 필리핀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아니하며, 4) 지역본부는 투자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 또는 중앙은행에 영업 보류 및 연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통보한다 등이다.

마지막으로 다국적기업은 필리핀 지역영업본부를 설립하는 때에는 필리핀에 미화 200,000달러 이상을 송금하여야 한다.

### ③ 지역 창고시설

종합투자법에 의하여, 지역본부 또는 지역영업본부를 설립하였거나 설립할 예정인 다국적기업은 지역 창고를 설치할 자격을 얻는다. 일반적으로 지역창고는 필리핀경제특구청(PEZA) 또는 관련 경제특구 당국의 허가를 취득한 뒤 경제특구 내에 설치한다<sup>82)</sup>. 기존의 지역 창고

82) Presidential Decree No. 66 16 (1972) (Phil.), amending Republic Act No. 5490 (1969) (Phil.), <http://www.chanrobles.com/presidentialdecreeno66.htm>.

중 경제특구 외에 소재하는 시설은 투자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지역 창고와 관련된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지역영업본부에 대한 핵심 인센티브는 제품이나 물품을 수입하여 이러한 창고에 보관하고 국내 소득세·관세·수출세·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재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다국적기업의 지역 창고의 역할은 다국적기업의 재고, 여분의 부품, 부품, 반제품으로 수입되거나 최종 유통을 위해서 필리핀 내에서 구입한 것들에 대한 보급 창고로 제한되어 있다. 지역 창고는 상품의 포장, 보호포장, 마킹(marking), 라벨 부착 등의 작업에도 사용될 수 있다. 지역 창고는 직접적으로 매출을 위한 광고를 하거나 해당 다국적기업의 상품을 판매 및 판촉할 수는 없다. 창고 내의 수입품이나 재고를 필리핀 내의 유통업자에게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국적기업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나 지역영업본부의 매출로 간주되며, 해당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필리핀 국내에서 유통업자의 매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필리핀 주재 외국 기업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지역본부와 지역영업본부는 각각의 지역창고 운영을 책임지며 지역창고 직원은 필리핀 내에서 다국적기업의 관련 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 3) 수출가공구 입주 기업 인센티브

수출가공구 당국은 종합투자법에 의거하여 외국인이 수출가공구내에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수출가공구 내의 등록기업은 종합투자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일반적인 인센티브를 향유하며, 부동산세를 제외하고는 지방정부에 대한 부과금이나 조세를 면제받는다. 부동산에 설치된 장비는 사용 최초 3년간 세금이 면제되나, 부동산에 설치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하여는 부동산세

는 완전히 면제된다<sup>83)</sup>.

#### (4) 종합투자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의견

##### 1) 평 가

필리핀의 1987년 통합투자법상의 인센티브제도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좀 더 균형 잡힌 틀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뿐 아니라 인센티브 수혜대상인 외국인 소유기업의 폭을 넓히는 데도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한 조항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금 면제와는 별도로 더 많은 외국인투자자를 필리핀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한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84)</sup>.

첫째, 투자법은 정당한 자격이 있는 등록 기업의 외국인 소유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1991년 외국인투자법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해 외국인 지분소유비율은 계속하여 제한될 수도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다양한 투자 영역에서 외국인의 지분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87년 종합투자법 자체가 선진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등록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한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등록 기업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60%의 지분을 필리핀인이 소유하여야 한다(“선진기업” 제외)는 현재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비선진적 사업을 구별하는 규정의 삭제 문제이다. 선진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즉 필리핀에 대하여 새롭거나 시도된 적이 없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하지만, 선진적 사업에 참여한다

83) Presidential Decree No. 1786 4 (1984) (Phil.), amending Presidential Decree No. 66 (1972) (Phil.), <http://www.chanrobles.com/presidentialdecreeno1786.htm>.

84) Van V. Raja, *op.cit.*..., p.482.

고 하여 등록기업의 100% 외국인 지분소유 허용이라는 인센티브와 연계할 이유는 없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모든 기업에서 관련 활동이 선진적인지 비선진적인지에 무관하게 외국인 지분소유는 일반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궁극적인 목적이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국인투자를 보다 완전하게 개방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매년 업데이트되는 투자우선순위 계획은 폐지되어야 한다. 필리핀의 모든 영역과 산업이 우선적인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 대상이 매년 바뀔 수는 없다. 투자란 개발도상국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혈액과 같으며, 투자의 시기와 장소에 무관하게 항상 높은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어느 해 12월 31일에 투자에 우선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던 영역이 1월 1일이 되고 해가 바뀐다고 비우선 영역이 될 수는 없다. 필리핀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하는 영역이 장기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영역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투자우선순위계획을 매년 개정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투자우선순위 목록에서 투자선호영역에는 ICT 분야, 선별된 제조업 및 수출 활동, 인프라 사업, 최소 자본 및 투자 요건을 만족하는 다국적기업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소유의 기업을 포함하여 등록 기업으로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제안된 투자우선순위 목록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은 안정적으로 장기에 걸쳐 인센티브를 받게 될 것이다.

넷째, 여기서 제기하는 개선안은 인센티브 수혜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를 크게 늘릴 수 있으므로, 세금 인센티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수혜 자격에 대한 오용이나 자의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세입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된 인센티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에는 10년

까지의 소득세면제, 운영업손실이월, 등록기업이 사용하는 자본 장비나 여분의 부품에 대한 세금과 관세 면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균형잡힌 접근방식을 채택하여 1) 제안된 투자 우선순위 목록에서 정한 영역에 참여하는 외국인 소유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2) 선진/비선진적 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3) 연간 업데이트되는 투자우선순위 계획을 폐지하고, 4) 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년 투자우선순위 계획이 개정되면 종합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자의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선안에 따라, 종합투자법에 의한 조세 인센티브는 엄격하게 선별된 경제활동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항구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외국인투자유인책으로 커다란 기능을 할 것이다.

또한 조세인센티브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여 정부는 비대한 인센티브제도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하는 현행제도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의 불건전하고 취약한 구조를 가진 인센티브는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등록기업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아래에서 논하는 기타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2)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1987년의 종합투자법은 투자위원회의 설치, 등록기업과 다국적기업에 제공되는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상당한 수준의 외국자본을 필리핀으로 유치하였다. 투자법의 인센티브는 “우선적인” 및 “선진적인” 사업 수행, 수출 및 다국적 기업의 필리핀으로의 사업 확장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부여된다. 사실 이러한 인센티브 부여의 목적은 모든 개발도상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도 한다. 다국적기업은 확립된 국제적인 네트워크, 자금원, 국제적인 인지도 등을 갖추고 있어 종합투자법에서 제



공하는 인센티브 수혜 대상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질 것이다.

다만, 종합투자법은 이러한 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으로는 우선순위계획에서 정한 우선적 경제활동에 참여하거나 다양한 수출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된다. 종합투자법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도 해당 기업이 선진적인 활동, 즉 생산과 제조에 있어 새로운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합투자법은 선진적 사업영역에 참여하는 외국 회사를 위하여 재정적 인센티브와 최대 100% 지분참여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본부, 지역영업본부, 지역창고와 관련하여 부여되는 인센티브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려는 다국적기업에게는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함께 아시아의 중앙이라는 필리핀의 지리적 위치, 고속런 노동력과 높은 교육수준, 유창한 영어 사용 등은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다국적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사항이다. 최근 현재의 인센티브 체제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종합투자법의 시행이후 제기된 개선제안을 살펴봄으로써 동법을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득세 면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 소득세면제 대신 5년간 순영업손실이월을 허용하자는 제안이 제시되었는바, 이러한 순영업손실이월제도는 투자자가 영업개시후 최초 5년간의 입은 손실을 다음 5년간의 총소득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며 두 번째 제안은 소득세 면제를 선진기업과 ICT 업체에 대하여 12년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필리핀의 기업들은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다소 변형된 2단계 인센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즉, 1단계는 통일적인 인센티브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하고, 2단계는 소수의 선택된 산업 분야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하자는 것이다. 통일적인 인센티브로는 일정한 조세 감면, 오염방지장치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공제, 4-6년의 운영업손실이월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제안에서는 투자된 금액에 맞춰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견해를 제시한다. IMF가 선호하는 다른 제안에는 직접 개발원조 또는 전반적인 최저 기업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소득세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반면 필리핀 통상산업부가 지지하는 수정안에서는 연례 투자우선순위계획을 장기 목록으로 보완하여 투자자들이 그에 따라 장기투자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와 이익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한다.

또 다른 제안에서는 소득세면제를 “강한 비교우위를 갖춘 산업, 또는 투자 우선순위 계획에 포함된 기업에게는 4년, 차별화된 상품을 생산하는 수출 또는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6년, 수출 증대를 위한 강한 잠재력이나 전후방 연계가 있는 국내 활동에 대해서는 8년”으로 제한하자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등록기업은 운영업손실이월과 가속화된 감가상각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제안에서 드러나듯, 1987년 종합투자법에 의한 현재의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만이 존재한다. 이 종합투자법은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sup>85)</sup>.

---

85) *Ibid.*, p.481.

### 3. 1991년 외국인투자법

#### (1) 의 의

1987년 종합투자법에 의해 제공되는 조세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중의 하나이지만, 필리핀에서 외국인의 지분참여를 확대·허용하는 것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는 구미에 당기는 인센티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부분이 필리핀의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반영되었는 바, 이 법의 제정으로 외국인투자네거티브리스트에 의해 제한되는 부문외에는 100%까지 외국인소유가 허용되게 되었다<sup>86)</sup>.

그러한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자의 범위에는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여, 지분소유의 제한으로 자신들의 국제적인 사업을 필리핀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내국인과 외국인투자를 모두 포함하는 1987년 종합투자법과 달리 외국인투자 문제만을 다루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의 개인, 파트너십, 주식회사, 정부 등에 의한 국가 산업화 또는 사회경제적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활동에 대한 투자가 헌법과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투자를 유치, 촉진 및 환영하는 것”이 국가 정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를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의 지분 투자로서, 외환 및 기타 자산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필리핀으로 이전되고 적절하게 중앙은행에 등록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1987년 종합투자법에서 “외국인투자”의 정의와 상당부분 일치한다.

---

86) Republic Act No. 7042, Foreign Investments Act (1991) (Phil.), [www.dti.gov.ph/contentment/7/11/files/fia<uscore>law.rtf](http://www.dti.gov.ph/contentment/7/11/files/fia<uscore>law.rtf).

## (2)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필리핀의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는 대통령이 작성하며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외국인 소유권을 제한하는 목록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제도인 바, 이 리스트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허용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외국인의 지분참여 허가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리스트는 2년마다 변경되는 바,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 있다. 리스트 A는 헌법과 현행 법에 의하여 필리핀인에게만 허가되는 영역이고, 리스트 B는 국가방위와 관련된 또는 공중의 위생 또는 도덕과 연관된 경제 활동 영역이다.

예컨대, 2002년 네거티브리스트 A에서는 외국인 소유권을 다음 영역에 대하여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중매체(녹음 제외)와 법률, 의료, 공학, 회계, 교사 등의 다양한 직업이 포함되었다. A 목록은 사설무선통신네트워크에 대하여는 20%, 사적인 고용, 건설계약, 국내 자금으로 이루어진 공공사업, 국방 관련 구조물의 건설계약에 대하여는 25%, 광고에 대하여는 30%, 민간 토지 소유,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 자재, 상품, 원자재 등을 정부 소유 또는 정부 통제 법인에 공급, 공공시설 영업권이 요구되는 BOT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스폰서 또는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40%, 그리고 증권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금융회사와 인베스트먼트하우스에 대하여는 최대 60%의 외국인지분이 허용된다.

2002년의 리스트 B에서는 제품 또는 필리핀 경찰청 또는 국방성의 검색이 요구되는 성분의 제조, 보수, 저장, 유통 활동에 대하여 외국인 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

이러한 네거티브리스트를 살펴보면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 소유권에 대하여 중요한 제한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 (3) 외국인 지분

#### 1) 원 칙

일반적으로 외국인 소유권은 크게 제한 받지 아니한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상으로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는 증권거래위원회나 무역규제·소비자 보호청에 등록함과 동시에 필리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필리핀 국내기업 지분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영업”의 범주는 주문과 서비스계약유치 노력, 연락 및 지점 사무소 개설, 필리핀 내에 주재하는 대표 및 유통업자 지정, 필리핀 국내사업, 회사, 법인, 주식회사의 경영, 감독, 통제에의 참여 및 일반적으로 필리핀내의 상업적 거래의 영속성을 보이는 기타 활동이 포함된다.

어떠한 법인이 필리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은 해당 법인의 필리핀 관할권내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르면 필리핀 내에서의 영업의 범주에는 다음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필리핀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단순 투자행위, 국내기업에서 외국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임원 및 이사 지명, 필리핀에 주재하되 자신의 명칭으로 또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하는 대표 또는 유통업자의 지정 등은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2) 수출업체의 외국인투자

일반적으로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수출기업에서의 외국인 지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수출기업이라 함은 생산량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제조·가공·서비스 기업 또는 필리핀 제품을 구입하여 구입한 제품의 60%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을 말한다. 60%라는 기준은 이 기업이 사실상 우선적으로 수출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것이다. 외국인지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는 수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네거티브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을 때에 한한다. 필리핀 국민이 아닌 자는 투자위원회에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1991년 외국인투자법의 수출 비율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4) 내수시장 기업의 외국인투자

내수시장 기업에 대해서도 역시 외국인 소유권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은 네거티브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분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내수시장 기업이란 1) 필리핀 내에서의 판매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2) 필리핀 시장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3) 생산량의 60% 수출을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최소자본 요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총납입자본금이 미화 200,000달러 미만인 내수시장 기업은 필리핀 국민들에게 배정된다. 따라서 외국인 소유 기업, 즉 41% 이상의 지분을 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은 자본금이 200,0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과학기술부가 정하는 첨단기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50명 이상을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자본금은 100,000 달러가 적용된다.

#### (5)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평가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비교적 정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외국기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의 조건에 따라 필리핀 기업이나 법인의 지분을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어떠한 산업이나 부문이 필리핀인에게만 개방되는가 또는 필리핀인 지분은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 동안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1987년 헌법 개정 이후에도 마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4년 동안 외국인투자자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있었으며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평가된다. 1991년 외국인투자법의 외국인지분 규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필리핀인 최소지분 요건을 늘리는 방향으로 법의 개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sup>87)</sup>.

아무튼 외국인투자자의 자유화는 산업의 근대화, 새로운 기술의 도입, 소비자와 근로자에 대한 기회 창출, 과세대상의 확대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조치이다.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의 합작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합작사업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합작사업이 실제적이지 못한 경우 외국인투자 자유화의 확대를 통해서 더 많은 외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이 필리핀 지사를 설립하고, 필리핀 기업의 지분보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영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sup>88)</sup>.

1987년 종합투자법 및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친화적으로 개정되는 방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몇 가지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이 있다 첫째, 현재의 외국인투자자의 네거티브리스트가 2년마다 개정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우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고정된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하되, 일정한 산업 또는 부문에서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낮추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필리핀의 현재의 네거티브리스트도 크게 제한적인 것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다.

셋째,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에 대하여, 현재 해석의 여지가 많은 백분율이 아닌 통일된 고정백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향을 받는 개별적인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

87) Van V. Raja, p.487.

88) *Ibid.* p.488.

#### 4. 경제특별구역관련법

##### (1) 연 혁

현재 필리핀에는 75개 이상의 경제특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구는 1995년의 경제특구법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명시되거나 또는 경제특구법에 의한 권한으로 필리핀경제구역청(PEZA)이 지정함으로써 설치된다<sup>89)</sup>. 1995년 경제특구법 제정이전의 법으로는 1992년 군기지이전개발법을 들 수 있다. 1992년 군기지이전개발법은 미군이 필리핀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던 해에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하여 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 등 두 개의 전 미군기지가 경제특구로 개발되었다.

필리핀 북부 루손 섬에 위치한 이러한 군사시설의 경제특구로의 개발은 군기지 개발법의 “국가 전반의, 특히 루손 섬 중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군기지이전개발법에 의해 설치된 군기지이전개발청은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한다.

한편, 1995년 경제특구법은 필리핀의 특정 지역을 개발하고 현대화 하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경제특구의 설치와 활용의 수준을 크게 확대 하였으며, 그 제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 선택된 지역을 변혁시켜 발달된 농공업, 공업, 상업, 관광, 은행, 투자, 금융 중심지로 만들고 여기서 숙련 근로자들과 효율적인 서비스가 기업들에 제공되도록 하며, 외국과 국내 투자자들이 경제특구로 유입되도록 촉진하여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간 전후방 연계를 경제특구 내와 주변에서 확립한다.

89) Republic Act No. 7922, The Cagayan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available at <http://www.chanrobles.com/republicactno7922.htm>; Republic Act No. 7903, The Zamboanga City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http://www.chanrobles.com/republicactno7903.htm>.



아래에서는 관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2) 1992년 균기지이전개발법상의 경제특구

1) 수빅 경제특구와 자유항 지역

1992년 균기지이전개발법에 의해 수빅 경제특구 및 자유항 구역(수빅특구)이 설치되었으며, 여기에는 올롱가포 시, 수빅 자치구와 그 주변 지역이 포함된다. 정부의 목표는 수빅을 자급적인 공업, 상업, 금융, 투자중심지로 만들고, 고용 기회를 창출하고, 생산적인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sup>90)</sup>. 이 법에 의하면 수빅灣도시관리청(SBMA)은 개발 당국의 운영 및 시행 기관으로서 특히 “모든 국내 및 외국 투자, 사업, 기업을 유치하며, 수빅 당국이 개발 당국의 정책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을 진다<sup>91)</sup>.

수빅 경제특구는 완전히 분리된 관세구역으로 운영되며, 원자재, 자본, 장비의 수입에 일체의 관세나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빅 경제특구에서 필리핀의 다른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특구에 등록된 기업은 표준 국세 및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3%의 소득세와 올롱가포 시 및 수빅 자치구에 1%의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외환 정책이 수빅 특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유 시장에서 외환, 금, 증권, 선물은 가격이 결정된다. 수빅 특구 내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빅특구내 기업에게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조건에 따라 외국인 지분소유가 100%까지 인정된다.

---

90) Republic Act No. 7227, The Bases Conversion and Development Act of 1992, <http://www.chanrobles.com/republicactno7227.html>.

91) Official Web Site of the Subic Bay Metropolitan Authority, Business & Investments, Liberal Tax Law, at <http://www.sbma.com/buss/buss.html>.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도 수빅특구내 사업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특혜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수빅만 국제공항은 수빅특구로 진입하는 완벽한 국제관문이며, 수빅 자유항은 아시아태평양 무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의 주요 시장들로부터 수 시간 거리이다. 경제특구내와 주변의 건축, 개축, 도로 확장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수빅 경제특구 내에는 수빅만 공업 단지, 수빅 테크노파크, 바탄 테크노파크 등 여러 가지 사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수많은 필리핀, 미국, 기타 외국 ICT와 제조업체들이 영업 중이다. 수빅만 공업 단지와 수빅 테크노파크는 민간 부문에서 개발 및 관리하며, 바탄 테크노파크는 현재 수빅만도시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다.

## 2) 클라크 경제특구

수빅 경제특구 외에도 1992년 군기지이전개발법에 의해 클라크 경제특구가 설치되었다. 클라크경제특구는 이전 클라크 공군기지 부지에 설립되었는데, 이 기지는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였다. 정부 소유의 클라크개발공사는 민간 기업과 같이 구성되어 있으며, 클라크 경제특구를 통제 및 관리한다<sup>92)</sup>.

수빅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클라크 경제특구도 이상적인 위치에 설치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제적 상업 중심지에서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수빅 경제특구와 같이, 클라크 경제특구에도 자체 국제공항인 디오스다도 마카파갈 국제공항(전 클라크 국제공항)이 있다.

클라크 경제특구 내의 등록기업은 수빅에 있는 기업들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현재 307개 투자회사와 필렉셀 공업 단지, 필리핀 사이버 테크노파크, 프리미어 공업 단지, 베르타필 사업 단지 등 4개

92) Official Web Site of the Clark Special Economic Zone, <http://www.clark.com.ph/business.asp>.

사업 단지가 특구 내에 존재한다.

### (3) 1995년 경제특별구역법

#### 1) 필리핀 경제특구청의 설치

경제특구법에 의해 경제특구청(PEZA)가 설치되었다. 경제특구청은 국영공사로서 통상산업부와 연계되어 있다. 경제특구법에 의해 설치된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청의 감독만을 받으며, 다른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특구와는 독립으로 운영된다(즉, 수빅 특구와 클라크 특구는 다른 기관의 통제하에 있다). 법으로 규정된 경제특구청의 역할에는 경제특구, 공업 단지, 수출 가공 구역,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일반 정책 수립이 포함된다<sup>93</sup>).

경제특구법은 특정 지역과 구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바오 시와 세부 시의 중요 상업 중심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특구법은 필리핀 대통령에게 또 다른 지역을 경제특구청의 추천과 상세한 타당성 및 공학적 연구를 거쳐 경제특구로 선언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sup>94</sup>).

#### 2) 경제특구의 유형

경제특구법에 따르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모두 경제특구를 개발할 수 있다. 공공 개발 경제특구는 실행위원회의 조직, 관리, 운영을 받는다. 민간 개발 경제특구는 자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나, 경제특구청의 규제를 받는다. 경제특구법에서 정하는 경제특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즉, 산업단지, 수출가공구역, 자유무역지대, 관광/레크리에이션 센터, 농공업 경제지역, IT 단지, 투자, 상업, 은행, 금융 센터이다.

93) Republic Act No. 7916, Ecozone Act (1995) (Phil.), amended by Republic Act No. 8748 (1995), available at <http://www.chanrobles.com/specialeconomiczoneact.htm>.

94)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http://www.peza.gov.ph/irr.doc>.

각 경제특구는 지방분권적·자급적·자립적 지역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1987년 종합투자법과 마찬가지로 경제특구에서도 모든 투자자의 자산, 이익, 기타 재산의 보호가 보장된다.

현재 공공개발특구에서는 436개 기업, 민간개발특구에서는 441개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ICT 부문이 강조되면서, 경제특구법에 의해 설치된 수많은 경제특구에서 55개 ICT 기업이 영업 중이다.

### 3) 등록 및 외국인 지분

경제특구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제특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제특구에서는 지분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유롭게 지분율을 정하여 창업할 수 있고, 독자적으로나 필리핀 국민과 합작기업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경제특구는 신규 기업에 대해서 최소 투자액을 규정할 수도 있다. 경제특구법에 의하여 필리핀은 외국인자본 유치에 성공하여 경제특구 기업들은 대부분 과반수 지분 또는 100% 지분이 외국인 소유이다.

### 4) 인센티브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청관할하의 별개의 관세구역으로 취급된다. 경제특구내에 위치한 기업들은 국세와 지방세가 면제되나, 총이익의 3%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이 위치한 곳의 자치구나 시에 2%를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특구법은 또한 등록, 허가 취득 등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제특구에 위치한 기업들은 대통령령 66호(수출가공구역청 설치)에 의해 재정적 인센티브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종합투자법에서 정하는 수출가공구역내의 인센티브의 대상이 된다. 1994년 수출개발법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역시 국내생산 원료를 사용하는 수출업체에게 제공된다.

경제특구법에서 신규 등록된 선진수출기업과 자유무역기업은 6년간의 소득세면제를 장 받으며, 신규 등록된 비선진기업은 4년간의 소득세면제를 보장 받으며 각기 소득세면제는 1년씩 연장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특구법에서 “선진”의 정의는 종합투자법에서의 정의와 같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경제특구법에 대한 논평

경제특구는 필리핀의 외국인투자법상의 매력적인 부분임에 틀림없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입장에서 경제특구는 대상 지역이나 부문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얻고 산업 및 인프라 개발과 현대화, 고용,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다. 활동의 영역이 경제특구에서 허가된 부문(산업 단지, 수출가공구역, 자유무역지대, 관광/레크리에이션 센터, 농공업 경제구역, IT 단지, 투자, 상업, 은행, 금융 센터 등)에 합당한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제특구에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재정적인 면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sup>95)</sup>.

또한 경제특구에서는 특정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자격을 집중으로 부여하고 있다. ICT 부문은 필리핀 정부가 열성적으로 육성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경제특구가 허가하는 IT 단지를 통해 ICT 투자가 장려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문으로는 관광과 레크리에이션을 들 수 있다. 필리핀은 수 마일에 걸친 청정 해변과 환경친화적 관광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동식물종이 풍부하므로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이러한 자원을 개발, 촉진, 보존하고자 한다<sup>96)</sup>.

그러나 경제특구가 확산되면서 관료적 기구가 부수적으로 확장되어 경제특구내 투자의 용이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87년 종합투자법 관리를 담당한 투자위원회 외에도 현재는 경제특구청, 수빅만도시 관

95) Van V Raja, *op.cit.*..., p.495.

96) Rules And Regulations To Implement Republic Act No. 7916, <http://www.peza.gov.ph/irr.doc>.

리청, 클라크개발공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관이 설립되었다. 수빅만도시관리청과 클라크개발공사는 군기지이전개발청이라는 경제특구청과는 다른 정부기관의 부속기관이다. 이러한 독립적인 기관들은 각자의 지침·규칙·요건을 투자, 경제특구 등록기업, 최소 자본금 제한 등과 관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담당 기관이 다양하고 특구 진입과 자격 취득을 위한 각기 다른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은 투자 결정 자체를 뒤흔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담당 기관이 난립하게 되면 부패, 뇌물, 시스템 오용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커진다. 권한의 중복도 중대한 문제이다. 경제특구법의 소득세면제 시스템은 종합투자법의 소득세면제의 틀과 동일하다. 그러나 경제특구청과 투자위원회라는 서로 다른 조직에서 이 두 가지 인센티브제도를 각자 관리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기관을 간소화할 필요와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경제특구청과 군기지이전개발청 및 그 부속 기관인 수빅만도시관리청과 클라크 개발공사 등을 폐지하고 투자위원회가 폐쇄된 기관의 업무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청, 이전개발청, 수빅만도시관리청, 클라크개발공사를 모두 폐지하는 것은 극단적인 조치로 비춰질 수 있다. 그 대신 경제특구청, 이전개발청, 수빅만도시관리청, 클라크개발공사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위원회에 소속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관들을 존속시킴으로써 이들 기관들이 이미 경제특구내 기업이나 지역사회와 형성한 중요한 사업상의 또는 개인적인 관계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기의 어떤 조치를 취하던 간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일된 규칙·규정·지침·인센티브를 개발하여 모든 경제특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의 경제특구 관리메커니즘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경제특구청, 이전개발청, 수빅만도

시관리청, 클라크개발공사를 존속시킨다면 해당 기관들이 자신의 권한내에서, 투자위원회의 감독하에 새로운 통일된 규칙과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관리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한 후 군기지 개발청은 차츰 폐지될 것이고 수빅만도시관리청, 클라크개발공사,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모든 경제특구는 경제특구청 소속으로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특구청은 투자위원회의 한 부서로 필리핀의 모든 경제특구를 관할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앞서 언급한 다양한 경제특구 기관들의 역할은 대단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들 관련 기관의 통합과 관리시스템의 단순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경제특구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은 기존의 경제특구 당국들의 서로 부조화한 규칙과 규정에 대처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한편, 필리핀정부는 현재 경제특구의 개발·건설·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는 국가가 담당하기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경제특구내 정부소유 재산과 프로젝트를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4. 2000년 소매거래자유화법

##### (1) 의 의

필리핀의 핵심적인 외국인투자관련법으로서 가장 최근의 것은 2000년 소매거래자유화법(이하 “소매거래법”이라 한다)이다. 이 법은 2000년 3월 26일 발효되었으며, 소매 부문을 외국인에게 개방하고 있는 바, “필리핀의 소매업은 필리핀 국민과 외국인투자자가 모두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소매부문을 창출하도록 장려하고 낮은 가격, 높은 품질의 상품, 더 나은 서비스,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여 필리핀 소비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자유화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sup>97)</sup>.

97) Republic Act No. 8762, Retail Trade Act (2000) (Phil.), <http://www.chanrobles.com/>

소매거래법은 소매업을 필리핀 국민에게만 개방하고 필리핀 소매업에서 화교들의 지배를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종전의 법률을 폐지하고 제정된 것으로 소매업이란 상품, 필수품, 공산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자와 다국적기업에 있어 인구면에서 아시아 3위에 해당하는 필리핀의 소매 시장은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시장이다.

## (2) 소매업에서의 외국인 지분

소매거래법에서 필리핀 소매업 부문의 외국인 지분은 기업의 납입자본금 총액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A 범주는 납입자본금 미화 250만 달러 미만으로 필리핀인에게만 개방된 기업으로서 100% 필리핀 소유의 주식회사이다. B 범주는 최소 납입자본금 250만 달러 이상으로 법이 발효된 2년 뒤인 2000년 3월 26일 이후부터 외국인의 100% 소유가 허용되었다. 소매거래법이 발효되고 최초 2년간 외국인 지분은 60%까지만 허용되었다. C 범주는 납입자본금 미화 750만 달러 이상의 기업이며, 소매거래법이 발효됨과 동시에 외국인 100% 소유가 허용되었다. B와 C 범주에 해당하는 기업은 각 점포에 미화 83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B와 C 범주의 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은 영업 시작 8년 이내에 지분의 최소 30%를 필리핀 증권거래소에서 매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 범주는 이른바 고급 또는 사치품 전문 기업이 포함된다. 이 기업들은 점포 당 납입자본금이 250,000달러가 되어야 한다. D 범주의 기업들은 외국인 100% 소유가 허용된다. 고급 및 사치품은 “삶을 지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며, 최상의 소득계층에서 대부분의 수요가 창출되는” 상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보석류, 고급



브랜드 및 디자이너 의상 및 신발류, 고급 의류, 레저와 스포츠 상품”과 전자제품이 해당된다.

외국인 지분은 기존의 소매 기업에게도 공개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투자자가 250만 달러 이상을 순소유하는 경우 허용된다. 기존 소매 점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소매거래법 발효후 최초 2년간은 60%로 제한된다.

소매거래법에서 외국인 소매업자는 자신의 모기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한다. 1) B와 C 범주 기업은 기업가치 최소 미화 2억 달러, D 범주 기업은 5천만 달러가 되어야 한다. 2) 전세계적으로 5개 이상의 소매점이나 체인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한 하나의 점포의 자본금이 2,500만 달러인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소매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적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 소매업자를 허용하는 국가에서 창업 및 설립된 소매업자만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에 종사하도록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국내생산 제품을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매거래법은 2000년 3월 26일로부터 10년간 필리핀 산 제품이 외국인 소매업자의 재고의 총비용에서 3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 (3) 소매거래법에 대한 평가

소매거래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외국인과 국내 소매업자 사이의 합작사업은 필리핀에서 오랫동안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소매거래법의 제정은 필리핀 외국인투자관련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대한 발전이었다. 외국인 지분에 대하여 거의 50년간 폐쇄되어 있던 소매거래업이 2000년 개방된 것으로, 소매 점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이 100%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월마트 등의 수많은 외국 소매업체가 필리핀의 소매업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다. 월마트는 필리핀에서 5개 점포를 개설하는 계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한다. 일부 소매거래법

반대자는 소매업 부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98)</sup>.

“필리핀 사업가들의 ‘마지막 보루’였다. 이제 필리핀 사업가들은 외국 소매업자들에게 밀려날 것이다. 소매거래를 개방한다면, 언젠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직원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소매거래 부문에서 창업할 기회도 주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소매거래업을 개방하는 혜택이 필리핀 국민에게 돌아가느냐 아니면 외국기업에게 돌아가느냐의 문제와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매거래업의 개방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소매거래업법이 제정되었다<sup>99)</sup>. 첫째, 소매업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매업자들은 자신들의 사업 접근방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고, 큰 규모의 자본과 인지도 높은 브랜드, 공급자 연계, 앞선 기술을 내세운 외국인 소매업자들의 대두에 맞서 다른 국내 소매업자와 합병이나 통합을 모색하여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는 국내 소매업자들은 필리핀 사람들의 취향과 기호에 대한 전문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외국 소매업자와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 소매업자들의 등장은 필리핀 소매업 부문에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소개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 지분에 대하여 소매업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국내 소매업체와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sup>100)</sup>.

둘째, 소매거래법은 필리핀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소매업의 신규 투자는 새로운 고용 기회를 의미하며, 더 높은 임금, 그리고 필리핀 근로자를 위한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간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소매거래법을 외국인투자법에 포함시켜 다루고

98) Van V Raja, *op.cit.*..., p.500.

99) *Ibid.*

100) *Ibid.*, p.501.

있으나, 이 법은 소비자 복지법의 일부로 파악할 수 있다. 필리핀 소비자에게 있어 경쟁은 결국 가격을 낮추고 상품의 품질을 유지 또는 개선할 것이다. 필리핀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되는 혜택도 누릴 것이다.

셋째, 소매거래법은 소매업을 위한 공간의 확장을 요구할 것이고, 해당 경제 부문을 촉진할 것이다. 실제로 필리핀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쇼핑물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보여 왔으며, 쇼핑물의 증가로 인해 소매업자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임대료로 인해 초기 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한편, 소매거래법은 외국인투자관련법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매거래법이 발효된 후 최초 2년간 B 범주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60%로 제한되었다. 이 조항은 국내 소매업자에게 유예기간을 주어 외국으로부터의 경쟁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포함된 것이다. 반면에 C 범주의 기업에는 최초 2년간 60%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B, C, D 범주 기업들에 대한 자본금 최소 제한이 지나치게 높다. 현재 각각 미화 250만 달러, 7,500만 달러, 250,000달러로 정해져 있다. 또 외국 소매업자들이 전세계에 5개 이상의 점포나 업체를 소유하여야 한다는(해당 외국인 소매업자가 미화 2,500만 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점포를 하나 이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조항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셋째, 소매거래법 발효 후 최초 10년간 소매업자의 총물량의 30%가 필리핀 제품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조항도 매우 제한적이다. 나이키, 토미 힐피거, 겐, 바나나 리퍼블릭 등 외국 브랜드는 자체 점포에서 상품을 팔고 있으며, 자신들의 재고에 다른 회사 제품을 포함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제한적 조항은 소매거래업법의 제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최소한 자본금 최저한도 등 법의 일부 조항을 완화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V. 종합적인 평가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외국인투자자에 보다 친화적인 것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여왔다. 다만,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현대화, 교통, 안정적인 전력 등의 확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의식, 수용의 제한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종합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유용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등록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필리핀 내의 지역본부, 지역영업본부, 지역 창고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외국인투자자들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필리핀 기업에 더 많은 지분 참여를 허용 받고 있다. 셋째, 필리핀의 경제특구는 1987년 종합투자법과 유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수출 및 자유무역 기업을 위한 세금 면제 외에도,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기업은 총수익의 5%라는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자본 장비, 원자재, 기타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철폐 움직임과 관련하여, 소매거래법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소매업 부문이 개방되었다. 이 법은 소매업에서 경쟁을 증진하고 필리핀 소비자들을 위하여 상품의 품질과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동시에 월마트와 같은 투자자들은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필리핀 시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상의 법들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현대적인 외국인투자법은 약간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법의 조정 및 조율, 인센티브 체제의 간소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장기적 법적 확실성 보장, 등록 절차 및 규정 간소화, 중복 철폐, 정부 기관 통폐합, 경제특구 개발 및 관리에서 정부 개입 철폐 등이 있다.

## 제 3 장 멕시코와 쿠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 제 1 절 멕시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 I. 의 의

1984년 2월, 멕시코 국립외국인투자위원회는 1973년의 외국인투자법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이며 다양한 활동에서 외국인 자본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사실 멕시코는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것이다.<sup>101)</sup>

그 후 10년 이상 멕시코는 외국인 지분참여를 49%로 제한하고 있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므로, 외국인 지분 한계 49%는 일반 원칙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정책은 49% 지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되었고 결국 정책이 법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멕시코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최초의 반응은 다소 복잡하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1984년 지침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0%인 기업이 향후 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현재 법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고정된 법령을 선호할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은 변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멕시코가 51-49 체제로 복귀한다고 해도 1984년 지침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100%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응

---

101) Sandra F. Maviglia, "Mexico's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The Selective Promotion of Necessary Industry", A.J.I.L., Vol.238(1986), p.282.

을 보였다. 결국 1973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전에 100% 외국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이후에도 그 지분을 유지했고 이에 이 태도가 지지를 얻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은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액 115억 달러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1984년 지침의 반포와 함께 대두된 두 번째 질문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와, 투자 인센티브가 동반된 49% 지분 소유 중 어느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냐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는 최소 51%의 멕시코인 지분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와 소수 외국인 지분 모두에 서로 다른 이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특정 기업의 특정한 필요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84년 지침은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 그 실제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자주 큰 입장 변화를 보이던 멕시코가 마침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택적인 산업 진흥이라는 이성적인 경제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균형 잡힌 태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멕시코의 입법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1973년 외국인투자법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외국인 소수지분 및 다수 지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1984년 지침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행, 주식회사, 외국인투자 위원회,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일체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를 행정 정책보다는 법 개정에 의해 규제하는 관행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변화에 대해, 1984년 지침하에서 100% 외국인 지분의 혜택을 51% 멕시코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 II. 1973년 이전의 외국인투자법

많은 부분에서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입법 과정보다는 행정적 정책의 결과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정책은 거의 또는 전혀 공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입되거나 개정되며, 서로 종종 무관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법에 의해 집행된다. 결국 정책은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는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 뿐 아니라 연방정부의 집행 기관들의 정책과 관행도 검토하여 기업을 어떤 국가에 설립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지, 해당 기업이 받게 될 조건과, 해당 기업이 받게 될 규제가 그 기업의 이해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 세기에 걸쳐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포피리오 디아즈(1876-1911)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광업, 유틸리티 및 기초 산업에 거액을 투자하면 멕시코가 산업화 국가들에 필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외국인투자가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국민 감정은 디아즈 정권에서 외국인 기업들이 차지한 지배적 위치에 기인한 바 크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국내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외국인 자본이 필요했으나, 외국의 영향력이 다시 커진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또한 멕시코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그 과정에서 착취될 수도 있었다. 20세기 초에 접어들 무렵 “외국 기업의 멕시코 경제 침투로 국가의 운명이 거의 완전하게 외국인과 외국인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멕시코의 “경제적 운명”의 회복은 1910-1920년 멕시코 혁명 기간 동안 우선적인 목표 중 하나였고 그 이후 정권에서도 중요한 신조로 남아 있다. 멕시코 헌법은 1917년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경제 활동과 외국인의 토지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외국인 자본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제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는 연방 공화국으로, 연방과 주 수준에 모두 입법 기관이 존재하지만,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법령은 연방법이거나 연방법에 따라 제정된다. 연방법은 의회에서 제정하지만,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단순히 허가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입법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더하여, 대통령은 규정의 형태로 일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법의 적용을 위한 상세한 지침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그밖에도 대통령은 외국 무역에 대한 법의 직접 제정, 기타 의회의 법률 대표에 상응하는 입법권 행사 등의 권한이 있다. 실제로 현재 법의 상당한 부분이 대통령의 “특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1938년 헌법이 수정되어 “제29조에 의한 국가적 긴급 상황에서 개별적인 보장이 중단되는 경우에만 입법의 권한이 인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헌법 제정 이후 헌법적 보장이 중단된 것은 1944년 단 한 번뿐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공포된 대통령령 대부분이 차후 취소되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양적 제한을 규정하는 기반을 정한 대통령령은 아직 변함없이 남아있다.

1944년 비상계엄령에서는 외교부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폭넓은 임의적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도피 자본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계엄령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계엄령 이후 설립된 멕시코 기업에서 “주식의 발행, 수

정, 청산 및 이전”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였다. 계엄령은 처음에는 극히 일부의, 비교적 중요하지 아니한 활동에만 제한을 두었지만, 결국 현재의 멕시코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제한을 초래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2년 뒤 정부 부처간 위원회가 조직되어 국내외 투자를 조정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몇 개 정부 부처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는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그리고 외국과 국내 자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외교부의 재량권 하에서 이미 도입된 실무 관행을 승인한다.” 1953년 이래 위원회는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그 중요성 또한 집권 행정부의 조치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이 계엄령의 집행을 막지는 못하였다. 외교부는 사실 계엄령을 법 조항 이상으로 확장하였다. 계엄령은 구체적으로 구성된 일부 활동에만 적용되었지만, 외교부에서는 공증 및 공공 등록 관련 공무원에게 모든 기업의 정관 수립 및 수정 시에는 기업의 목적이나 본질과 무관하게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외국인 자본에 대한 초기의 태도는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하여 변화되었다. 1940년에서 1965년 사이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거의 4배로 증가했으며, 1969년에는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과 함께 멕시코 자본가들은 외국인 자본 유입을 제한하라는 압력을 계속 행사하였다. 거액의 외국인투자는 자본을 감소시키고 멕시코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킨다고 인식되었다. 정부 경제학자들 역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립 및 가공 부문에서 투자의 패턴은, 1940년대의 특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국내 생산 중간 재료의 이용을 확대 촉진하여 수입품 대체를 장려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102)</sup>.

---

102) *Ibid.*, p.284.

외국인투자를 대체하기 위한 노력은 점차 강화되어 멕시코 국민과 외국인 자본의 합작기업과 산업 통합 프로그램이 촉진되었고,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 참여가 금지되고 다른 영역에서는 제한되었다. 1966년 외교부는 기존 멕시코 기업의 다수 지분을 인수하는 허가를 발부하지 않겠다는 또 다른 중요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제한된 산업이 증가하면서 멕시코 경제에 대한 외국인 참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계획이나 일반 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일부 제한은 국가 보와 공공복지에 관련되었지만, 다른 조치는 외국인과의 경쟁을 두려워한 민간 기업들의 압력으로 인해서 적용되었다고 보였다. 또한 특별법이 특정 산업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을 위하여 제정되었지만, 또 다른 산업이 “외교부가 자체적인 계획, 또는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이나 최소한 다른 정부 부처와의 동의에 의한 정치적 결정에만 근거하여” 제한 산업 목록에 추가되었다.

1970년까지 산업 활동에 대한 외국인 참여에 대한 유일한 법적 제한은 1944년 계엄령의 적용과, 국유화된 산업에서 국내외 민간인의 참여가 배제되는 사례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세금 인센티브나 수입 통제의 선별적 적용 등 다른 방식으로 기업 통제와 소유권으로부터 외국인을 배제하였다. 한 논평가가 지적했듯이, 행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 법률의 부재로 인해 가능해진 개별 투자 프로젝트에 맞추어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 유연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또 정부는 “마치 바람직할 필요가 있다는 듯 선택된 산업에 대하여 특정한 법적 제한을” 도입하였다.

결국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멕시코 정부는 보호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고 생각했음에도 “조심스러운 수용”에 가까워졌다. 외국인투자는 내국인 투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장려되었고, 산업진흥부는 멕시코화와 산업 통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원자재 또는 반제품과 반재료, 또는 기계장비류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필요한 수입 허가를 받는 것이 기업이 얼마나 멕시코화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산업진흥부는 그러한 허가를 감독하고 또한 산업 통합 프로그램을 감독하였다. 산업진흥부에서 필요한 허가가 발부될 것임을 보증하고, 경쟁 상품의 수입은 금지되거나 멕시코 내의 경쟁업체들도 같은 조건을 만족하도록 요구되었음을 보증하면, 신규 및 기존 기업은 자사 제품에서 멕시코 제품이나 재료의 비율을 늘리고, 해외 가격과 지불을 제한하고, 품질 제어 표준을 준수하고, 특정 기간 내에 자본금의 51%를 멕시코인 소유로 전환하도록 합의하였다<sup>103)</sup>.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은 조세 특권도 멕시코화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산업진흥부의 비공식적인 투자 프로그램 구별 작업이 시작되고,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우호적인 처우를 받을 것임을 보장해달라고 행정부에 요구하였다.

외국인투자자의 지위 역시 바뀌었다. 1972년 신규 및 필요한 산업의 진흥법에 의해 멕시코인이 다수지분을 보유했는지에 따라 국경 지역과 멕시코 시티 이외 지역의 제조업체, 멕시코 산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에 세금과 기타 특혜가 주어졌지만, 정부는 최종 가공 및 수입 부품이나 반제품의 단순 조립을 위한 회사 설립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도 국내 생산 시설 개발에 대한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비공식적 구별 작업에서는 신규 투자와 기존 시설의 중요한 확장은 “사실상 제도화” 되었다고 지적했고, 아직 법에서 요구하지는 아니하고 있지만, 산업진흥부는 프로젝트에서는 멕시코 자본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

103) *Ibid.*, p.286.

1972년에서 1976년 사이 멕시코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가장 중요한 법으로 1973년의 멕시코 투자 진흥을 위한 법, 그리고 외국인투자법이였다. 이 법의 목적은 기존의 법, 규정, 정책 등을 집대성하는 것이었고,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FIC)가 개설되어 법에 의한 중요한 재량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등록청도 설치되었다.

### Ⅲ. 1973년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국인 투자 위원회의 설치

1973년 이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제한의 대부분의 근거를 제공해 왔다. 이 법은 멕시코 회사의 자본 투자, 멕시코에서의 부동산 및 개인 재산 취득을 위한 투자, 기타 멕시코 기업의 주식을 외국인에게 담보 제공하거나 부동산 트러스트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등 기타 특정한 거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인직접투자에 관련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외국인간접투자는 표면적으로 규제하지 아니한다.

사실 1973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 제한의 주요 변화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자본의 비중에 따라 주식회사에서의 외국인 경영 참여를 제한하며, 49-51% 체제를 일반 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단일 활동이 아닌 다양한 활동에서 멕시코 인의 지분 참여가 다수여야 한다는 점을 처음으로 요구한 법이다.

외국인투자법은 표면적으로 외국인투자나 외국인투자자를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외국인투자나 투자자로 간주되는 활동이나 개인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부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제 활동, 멕시코 인만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외국인 참여가 49% 이하로 제한되는 활동 등을 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또한 최대 49%의 지분 참여를 허가 받을 수 있

는 활동에 종사하는 신규 기업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제한하는 일반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법은 기존의 멕시코 기업의 지분의 25%, 또는 고정 자산의 49% 이상을 취득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권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이전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지분 49% 이상의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해당 기업은 외국인투자등록청에 등록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 자본의 대부분을 보유 및 통제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내린다.

1973년 법에서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최대” 49%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해당 프로젝트가 멕시코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파악될 때는 언제나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담은 이제 다수 외국인 지분과 통제로 “균형 잡히고 정당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어진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대통령과 7개 정부 부처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매월 정기 회의를 갖는다. 법적인 권한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는 (1) 확실한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지리적 위치나 경제 활동에서 외국인 지분의 퍼센티지를 늘리거나 줄이고, 투자를 수용하기 위한 조건을 정한다. (2) “특별하게 취급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구체적인 퍼센티지와 조건을 설정한다. (3) 멕시코에서 설립되었거나 설립될 기업의 예상되는 외국인투자액을 결정한다. (4) 새로운 경제 활동 영역이나 새로운 제품라인에서 기존 외국인투자자의 참여를 결정한다. (5) 외국인투자법 및 규정 적용을 위한 “요건과 기준”을 정한다.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비록 본질적으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지만, 법 적용을 위한 기준과 요건을 정하는 일반 결의안을 발표한다.

다수 외국인 지분 허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된 신청서는 기술위원회의 1차 분석을 거쳐 공식 접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된다. 언제나 신청서는 협상 과정을 거쳐야 하며, 처리 기간은 4-16개월이다.

외국인 다수 지분의 투자는 몇 가지 불리한 점이 있다. 회사의 설립 및 확장을 위한 허가를 취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세금원이나 기타 투자 인센티브가 제한된다. 반면 외국인 지분이 49% 이하일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며,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거나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고, 세금 및 기타 인센티브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행정기관이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허가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 또한 멕시코 법에서는 소액 주주단을 보호하며, 부칙이나 정관에 삽입된 조항에 의해 추가적인 보호도 받을 수 있다.

1973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후 49-51% 체제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 적용이 되지 않았다.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관광, 우선순위 산업, 첨단 기술, 고용이 보호되는 자본 및 투자,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겪고 있는 멕시코 기업의 우선적인 활동 등에 있어서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예외의 거의 대부분은 멕시코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sup>104)</sup>.

외국인투자위원회는 국가산업발전계획(NIDP)과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린다. 허가된 외국인투자는 언제나 멕시코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가 교체되어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수출 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또 멕시코 직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상세 계획을 보유하여야 하고, 자금의 큰 부분이 해외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투자원이 다변화되어 있어야 하고, 멕시코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손상하지 않아야 하며, 지리적으로 저개발 지역에 위

---

104) *Ibid.*, p.281.

치하고, 멕시코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법상의 예외 적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기준 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로 해당 활동이 하나의 산업인지, 아니면 국가산업발전계획이 투자를 촉진하는 지역인지의 문제가 있다. 각각의 정권마다 나름대로의 국가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해 왔지만, 기본이 되는 가정은 언제나 동일하였다. 이에 따라, 1983-1988 국가산업발전계획은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83년 국가산업발전계획은 “멕시코의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진단, 국가적·국제적 상황 내에서의 해결책의 목적과 전략, 해당 전략 이행을 위한 근거”를 규율하는 상세한 정치적 경제적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국가산업발전계획은 당시 정권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나타냈다.

1983년 2월 헌법 개정이 있었고 “연방 정부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 광범위한 대책을 도입하도록 하고, 각 주와 민간 개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원칙의 방향을 재설정하도록 한다.” 수정 헌법에서는 주를 주권이 있고 경제의 유일한 지휘자로 보는 행정부의 철학을 구체화하고 있다. 수정 헌법에서는 정부에만 허용되는 활동을 규정하지만, 민간 부문의 발전도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활동에서 허가되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제한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49-51%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적용 받기 위하여 필요한 엄청난 노력, 그리고 거의 예외가 인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 1984년 2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매우 다양한 활동에서 100% 외국인 자본 투자를 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표는 투자자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는 것이었다.



## IV. 1984년 외국인투자지침의 제정

### 1. 지침의 제정 배경과 목적

외국인투자에 대한 1984년 지침의 일차적인 목적은 “멕시코 경제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성장”에 가장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특정 활동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선별적인 촉진이었다. 이러한 촉진의 목적은 외환수지 개선, 경쟁적 수출품 생산과 수입 대체, 국가 과학기술 발전, 멕시코의 국제사회로의 통합 제고, 대규모 투자 수용, 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지리적 분산 등을 위한 일부 영역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국인투자 정책의 기초를 분석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멕시코에는 그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이 존재하였지만, 국가 발전을 위하여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이 실행된 적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현실적으로 “국가 기술 발전 촉진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투자를 활용하여 수입품을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무역 수지 흑자를 위한 수출품을 생산”하는 활동이 “멕시코에서는 이미 뒤떨어진 장비나 기술을 보호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보고 국가 소비자를 희생시켜 추가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저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1984년 지침이 제정될 무렵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또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협상이 “국내통합 요건을 적용하거나 수출할당을 채우는 수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후자의 경우는 대부분 그 실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05)</sup>.

---

105) *Ibid.*, p.282.

1984년 지침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와 그 규제에 대한 멕시코의 정책을 조정하여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잘 보여 준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투자의 “보충”으로 남지만, 정책은 더 이상 방어적이지 않을 것이며, 국가 발전 우선순위에서 창출되는 수요에 기반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의 대안 개발을 촉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sup>106)</sup>.

1984년 지침에서는 100%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선적인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우선적인 분야로는 비전기적 장비 및 기계류 생산, 전기 기계 및 도구, 전자 장비 및 장치, 교통 장비 및 자재, 금속 기계류, 화학 공업, 기타 제조업, 첨단 기술 서비스, 호텔 산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지침에서는 언급된 사업 분야는 “대표성”을 가지는 예시적인 것이며 산업진흥청이 그 목록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침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가기술 발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인정하듯이, 단순한 자본의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이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멕시코의 기업간의 공동투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비하여 외국 중소기업은 투자와 기술 이전에 따른 의존성 증대의 위험이 적고 농업 및 목축 부문과 자본 장비 및 소비자 품목의 일부에서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탄력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다.

지침에서 중요한 특징은 특정 기간내 멕시코화에 대한 요건이 없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법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침이 공포되기 이전에 외국인 다수 지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에서는 모두 일반적으로 10년 내의 멕시코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멕시코화 과정에서 외국인 참여 기업은 많은 경우

---

106) *Ibid.*

산업적 집중, 가격 정책 및 가용 투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오해를 갖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지침에서는 분명히 특정 활동만 촉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활동도 일반적으로 환영을 받지만, 외국인지분 소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였다. 지침에 따라 촉진되는 활동은 본질적으로 전략적이며, 국가산업발전계획의 목적과 부합하며,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외국인투자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을 하게 되었다.

1984년 8월 30일 외국인투자위원회는 5가지 새로운 결의안을 지침에 따라 공개하였다. 이들의 목적은 양면적이었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일반 결의안을 국가산업발전계획과 지침의 경제적 우선순위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것과 다수 외국인 지분허가 절차를 개선 및 가속화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이 결의안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외국 및 국내 자본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 경우 외국인 임원 대체, 특정 조건 하에서 특정 시설물의 개설 및 재배치 등 특정 외국인투자 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던 외국인투자위원회 허가 요건이 폐지되었다. 또한 결의안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무국장 권한이 확대되어, 사전 외국인투자위원회 허가 없이도 일부 조치를 승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결의안에는 외국인 다수 지분의 허가 신청을 완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는 사무국장과 협의 상을 거치며, 사무국장은 이를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 서류 완성 후 30일 내에 공식 접수가 되도록 한다.

## 2. 지분에 관한 규정에 대한 평가

과거의 관행과는 달리, 1984년 지침은 관보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그 대신 지침은 주요 신문을 통해 공포되었고 팜플렛 형태로 배포되었

다. 관보는 모든 연방 법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창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동 지침을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침에 따른 변화가 하나의 정책에 국한되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외국인투자법은 예외를 허용하고 외국인 지분에 대한 49% 제한이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일반 원칙에 불과하지만,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지난 11년간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왔다는 것은 이 정책이 곧 법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 V. 1989년 개정 외국인투자법시행령

### 1. 개정의 개요

1989년 5월 16일에는 1973년 외국인투자법의 새로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법적 제한들을 완화하고 멕시코의 경제문제에 대한 자유시장주의적 접근방법을 반영한 것이다. 이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100만불 이하의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자동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다. 그러한 자동승인을 얻기 위해서 외국인투자가는 6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자동승인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시행령을 정부의 승인을 얻은 절차를 단순화하고 신속화하였다<sup>107)</sup>.

새로운 시행령은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의 문호를 크게 한 것이며 외국인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법적인 문제점들을 모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시행령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시행령의 일부 규정들이 멕시코의 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107) Hayden Kepner, Jr, "Mexico' New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 Legal Analysis", Syracuse J. Int'l L & Com., Vol.18(2002), p.42.

## 2. 주요 내용

### (1) 목적과 적용범위

시행령의 목적은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바, 아울러 외국인투자의 법적 환경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다. 시행령은 기존의 모든 외국인투자관련 시행령, 규칙을 폐지하고 오직 이 시행령과 그 모법만을 외국인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이 되도록 하였다<sup>108)</sup>.

### (2) 미분류된 활동에 대한 투자

일반적으로 시행령은 대부분의 경제부문에서 다수 외국인지분을 허용한 반면에 일정한 전략적인 부문에서는 제한을 남겨두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특별히 제한하는 전략적인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트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령은 일정한 경제활동의 분류시스템을 정하고 있다. 그러한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그 분류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미분류 부문에 대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는 바, 이들 부문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 지분 소유를 허용하였다. 또한 다음의 6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사전 투자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게 되었다<sup>109)</sup>.

첫째, 사업개시전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1억불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둘째, 외국인투자자는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할 것

셋째, 외국인투자사업의 산업시설이 멕시코 시티, 구아달라자라(Guadalajara) 또는 몬테리(Monterrey) 이외의 지역에 소재할 것

---

108) *Ibid.*, p.42.

109) 제 5 조.

넷째, 누적된 외화수지가 최소한 투자사업의 개시 5년이상 균형을 이룰 것

다섯째, 투자사업이 항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원의 훈련과 개발을 제공할 것

여섯째, 투자사업은 충분한 기술을 활용하고 모든 환경 관련 법률과 규칙을 준수할 것 등이다.

요컨대, 상기 6가지의 요건을 구비한 투자사업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잠재적인 투자사업 상기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을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러한 경우 투자자는 공식적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부여하거나 사유를 명시한 불승인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아무런 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당해 투자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맥큐일라도라스(Maquiladoras)에의 외국인투자 또는 기타 수출지향적 활동에 대하여 반드시 승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 기존의 멕시코기업의 취득

기존의 멕시코 기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자산을 49%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후 3년동안(1992년 5월 16일까지)에는 미분류된 부문에서는 그러한 요건을 시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미분류된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기존 멕시코기업의 100% 지분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자는 최소한 30% 이상 당해 기업의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데 동의하고 상기 제5조의 6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1992년 5월 16일 이후에는 외국인투자자는 기존 멕시코 기업의 49%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에 대하여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9% 미만에 대해서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 (4) 기존 외국인투자의 확대

외국인투자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재배치하거나 또는 새로운 경제활동 부문으로 또는 새로운 생산라인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으며 그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도 가능하다.

#### (5) 분류된 부문에 대한 투자

시행령은 4가지의 경제활동 부문의 분류시스템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적 또는 전략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들이다. 상기 각 부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칙과 제한이 적용된다. 첫째, 시행령은 일부 영역을 국가에게만 유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영역에서는 국내외의 사인이 그 영역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둘째, 멕시코 투자자에게만 유보된 영역도 두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셋째, 멕시코인의 다수 지분과 지배를 요구하는 영역이 있으며 이 영역에서는 외국인투자 지분이 시행령에 명시된 백분율의 소수 지분만을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인의 다수 지분과 지배를 요구하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특별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다수지분과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통상적으로 멕시코인에게 지배권을 요구하는 영역에서의 외국인 다수 지분을 허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때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들을 고려한다. 첫째, 투자는 내국인 투자를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멕시코의 수지균형과 수출증대

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 셋째, 창출되는 일자리 및 지불되는 임금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야 한다. 넷째, 멕시코의 저개발지역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멕시코의 기술성장과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법에 의하여 종전에 요구된 것보다 훨씬 적은 요소들만을 고려하면 된다. 특히 당해 사업이 최종상품을 만드는데 일정한 비율의 멕시코생산요소를 투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일정한 기간이후의 멕시코화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바로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가 자국내에서의 국제적인 경쟁제도를 도입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VI. 멕시코의 외국인직접투자관련법에 대한 평가

1989년의 새로운 시행령은 몇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들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신청을 자의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멕시코에 투자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들이 단순화되고 명확해졌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은 일부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더구나, 새로운 시행령은 외국인투자자에게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여전히 법령의 여러 중요한 규정들을 해석하여 개개의 외국인투자안건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각종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 참여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재량권과 결부되어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낮아



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sup>110)</sup>.

## 제 2 절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I. 서 론

쿠바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 쿠바는 외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거의 원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sup>111)</sup> 과거 외채를 상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다국적 대출기관에서 차관을 도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sup>112)</sup>. 쿠바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설탕이나 담배를 중심으로 한 작물의 재배자금을 미리 지원받고 작물을 통해 확보하면서 단기 고금리 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대출뿐이다. 쿠바는 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송금 형태로 상당한 양의 외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의 형식이 아닌 단순한 외환의 확보는 고용, 교육, 자산개발, 기술이전, 전문지식 등의 다양한 혜택까지 얻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보다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sup>113)</sup>.

---

110) Hayden Kepner, Jr, *op.cit.*..., p.72.

111) 미국 CIA(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1997년 쿠바가 받은 총원조금은 약 6천8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추정한다.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02: Cuba (2002), at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geos/cu.html>.

112) Section 104(b) of the Helms-Burton Law는 미국이 세계은행(the World Bank) 또는 미주간개발은행(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이 쿠바에 공여한 대부금 또는 기타 형태의 신용대출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를 감소시켜야 하도록 하고 있다. 쿠바는 현재 국제통화기구(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회원국도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를 통한 자금융통도 어려운 실정이다. <http://www.imf.org/external/country/index.htm>.

113)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Foreign Investment in Cuba: Prospects and Perils", *Geo. Wash. Int'l L. Rev.*, Vol.35(2003), p.905.

따라서, 쿠바정부는 사회주의적 정치·경제체제하에서 일정한 통제 의 틀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방식으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통한 외자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쿠바정부 관계자들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경제위기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된 이후 쿠바에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형태로 상당한 양의 외자가 유입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쿠바의 정치·경제제도는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지속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sup>114)</sup>.

## II. 쿠바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주요 내용

### 1. 외국인투자법의 변천

#### (1) 혁명 이전과 직후의 외국인투자

1959년 쿠바혁명이 성공했을 당시 쿠바에서는 주로 미국을 통해 상당한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미국 정부기관이 확인한 외국인재산강제수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1960년 당시 對쿠바 외국인투자 총액은 20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보면 이 금액은 현재 쿠바가 유치한 외국인투자보다도 많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투자환경만 갖추어 진다면 쿠바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對쿠바 투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쿠바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혁명직후인 1960년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기반시설투자 33%, 제조부문투자 12%, 에너지부문투자 15%,

114)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06.

무역 및 상업부문 투자 5%, 농업, 광업 및 기타 부문 투자 35%가 각각 하락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통계를 현재의 쿠바의 상황에 비추어 추정해 볼 때, 쿠바가 사회기반시설 부문에서만으로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혁명이후 1982년 외국인투자법과 1992년 헌법개정이후

혁명초기 강제적인 외국인재산의 수용이 있는 후 약 30년간 쿠바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1982년 2월 15일 쿠바정부는 쿠바 최초의 외국인투자법인 투자법 50(이하 “1982년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을 공포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국영기업 사이에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2년 외국인투자법은 투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는 그다지 효과가 없었으며 1982년 외국인투자법이 공포된 후 거의 10년이 지난 1990년이 되어서야 외국인투자를 통한 최초의 사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 후, 1990년에서 1992년의 기간동안 대쿠바 외국인투자는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이 시기에 약 60개의 외국인 합작사업이 새로 시작되었고, 이 사업들의 대부분은 주로 관광부문의 소규모 사업이었다. 1992년에는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쿠바는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장기적인 대규모 투자로 전략으로 전환하여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2년 8월에는 1976년 제정된 헌법을 개정하여 재산과 관련된 제도를 크게 개편하였다.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재산소유와 국가나 제3자에 대한 재산이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였다.

이러한 헌법개정으로 외국인투자제도는 1982년 외국인투자법 때보다 다소 유연해졌고, 이후 1994년 10월 공중보건, 교육, 국방을 제외한 경제 전 부문을 외국인투자에 개방한다는 공식 선언을 하면서 외국인투자제도는 보다 더 유연해졌다. 그 결과 서비스부문, 부동산, 통신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합작 사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합작사업의 내용도 더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졌다.

### (3) 1995년 외국인자법 이후

1995년 9월 5일 쿠바 국회가 의결한 현행 외국인투자법인 투자법 77(이하 “1995년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는 1982년 외국인투자법에 있던 규제와 제약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한 개정내용은 쿠바의 투자제도를 다소나마 자유화시킨 대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sup>115)</sup>.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합작투자, 국제적 경제협력관계, 100% 외국투자기업 등 세 가지 형태의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2월 6일 쿠바의 각료평의회(Council of Ministers) 산하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는 생산협약과 경영협약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새로운 외국인 직접투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sup>116)</sup>. 쿠바의 외국인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모든 종류의 외국인투자를 획일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구조, 목적 등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2. 현행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주요 내용

### (1) 외국인투자형태

#### 1) 합작투자 (Joint Venture)

합작투자란 하나 이상의 쿠바 측 당사자와 하나 이상의 외국인투자자로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를 기여하고 지분

115) Ley Numero77 de la Inversion Extranjera, Gaceta Oficial(Sept. 6, 1995)(Cuba). 영문본 역본은 <http://www.latintrade.com/newsite/content/cprofiles/data-ext.cfm?d= 2001&c =9> 참조.

116) <http://www.hotelsmag.com/1199/ 1199cuba.html>.

소유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전 양측이 합의하여 합작투자계약서와 해당 합작투자를 승인하는 명령에 반영된다. 일반적으로 쿠바 측 당사자는 부동산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외국인투자자는 자본과 기술, 기술 및 경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합작회사는 투자주체와는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며, 쿠바상공회의소에 등록하여 공식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합작투자를 통한 이익은 각 투자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합작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지역자전거네트워크(Community Bicycle Network: CBN)는 자전거 기술 훈련, 수리, 자전거 이용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캐나다의 비영리 단체이다. CBN은 쿠바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쿠바의 구시가지에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피닉스(Fenix)라는 쿠바회사와 접촉을 하여 피닉스와 Bicicletas라는 이름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CBN이 지분 49%, 피닉스가 51%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피닉스는 합작회사(가치 10만 달러)의 건물과 기타 작업 공간, 1년간의 노동력(15인, 임금 월 500불), 현금 1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하여, 쿠바 측의 초기 투자는 총 20만 달러가 되었다. CBN 측에서는 피닉스보다 1% 적은 금액의 현금, 자전거 부품, 전문가, 장비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양측이 투자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후, 각료평의회 산하 집행위원회가 이 합작투자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난 후에야 Bicicletas는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sup>117)</sup>.

## 2) 경제협력관계

국제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조직하는 위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투자자와 별개의 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협력관계는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협력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

117)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10.

형성되는 것이다. 각 당사자는 경제협력관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얼마를 기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합의는 하지만 별도의 자본을 배정해 두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익배분에 대한 내용과 세금 납부계획에 대하여 미리 합의를 한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형태의 국제협력관계는 생산협력계약과 경영협력계약으로, 이 두 가지 형태는 2000년 12월 쿠바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두 가지 형태이기도 하다. 쿠바정부에 따르면, 총 198개의 생산계약과 17개의 경영계약이 체결되었다<sup>118)</sup>.

#### ① 생산협력계약

생산협력계약은 쿠바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 현재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에 자금을 넘기거나 무능력할 수도 있는 쿠바기업과 경영권을 공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각 당사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원료, 원료원, 반완성 제품, 기술 및 기술지원을 제공 및/또는 자금을 제공하고, 쿠바 측 당사자는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 판매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러한 계약은 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적합하다. 생산계약을 통해 잉여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쿠바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확보하고 노동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쿠바정부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쿠바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기 전에 우선 생산협력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은 대개 1년의 단기계약이고, 이 계약을 통해 양 당사자는 더 많은 부담을 지면서 영구적인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비교적 적은 위험을 부담

118) Ministry of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Foreign Investment in Cuba (2002), [http://www.wdsweb.com/cuba2002/ppt/senti Fri.ppt](http://www.wdsweb.com/cuba2002/ppt/sentiFri.ppt).

하면서 시험적으로 사업을 해 볼 수 있다<sup>119)</sup>.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상당한 자원을 쿠바에 투자하기 전에 쿠바의 기업환경을 파악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생산협력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부분에서 설명하게 될 쿠바의 인력활용에서 발생하는 고비용 및 기타 문제점을 피할 수 있고, 투자 대상기업이 과거와 다름없이 쿠바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피할 수 있다.

## ② 경영협력계약

경영협력계약은 관광산업 부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부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982년 외국인투자법 도입 이후 쿠바정부는 국영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이 호텔을 비롯한 여타 관광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쿠바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다시 도입된 이후 경영협력계약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sup>120)</sup>.

결의안 37/2001에서는 경영협력계약에 대하여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외국기관을 고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하나 이상의 생산라인, 생산 또는 서비스 조직 또는 관련 활동을 관리하고, 사전 합의에 따라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의안 37/2001에 따르면, 경영협력계약은 해당 외국기관이 관리하기로 한 시설이나 활동의 효율성 및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달성한 성과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계약의 중요한 특징이다.

관광부(Ministry of Tourism)는 모든 호텔 관리계약을 승인하며, 외국인투자 및 경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MINVEC)는 생산관리계약을 승인한다. 일반적으로 관리를 맡는 외국기업은 쿠바의 대상기업 이름으로 활동하지만, 적절한

119) Conas (Consultores Asociados, S.A.)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조언을 하는 국가운영자 회사이다. <http://www.infocom.etecsa.cu/new/conas/conase.html> 참조.

120)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12.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아바나의 Media Cohiba 호텔은 100% 쿠바정부 소유지만 영업은 Melias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 한 예이다<sup>121)</sup>.

### 3) 외국기업의 쿠바지사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s)나 카스트롤(Castrol), 캐나다은행(Bank of Canada), 멕시코나 항공(Mexicana Air) 등 외국기업은 쿠바기업의 참여나 투자 없이도 쿠바에 지사나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기업이 쿠바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통상부(Foreign Trade Ministry)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사들은 대개 영업사무소로 운영되면서 정부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일반인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달러로 판매한다. 현재 쿠바상공회의소에 등록된 해외기업의 지사 800개 정도가 쿠바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sup>122)</sup>.

### 4) 100% 외국인투자기업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100%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형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다지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며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sup>123)</sup>. 이러한 형태의 기업은 쿠바정부의 설립허가에 따라 상공회의소 등록을 통해 설립된다.

#### (2)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몇 가지 외국인투자친화적 특징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용이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4)</sup>.

---

121) *Ibid.*

122) *Ibid.*, p.913.

123) Marta Veloz, Juventud Rebelde, Entrevista a Ibrahim Ferradez, Apr. 21, 1999, <http://www.fut.es/mpgp/amigos177.htm>.

124)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p.913-917.



첫째, 외국인의 투자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였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의거하여 관련 정부기관간에 외국인투자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배부, 나아가 최종적으로 외국인투자제안서를 각료평의회 산하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MINVEC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둘째,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였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제안서의 신속한 승인절차를 위해하여 승인 과정을 외부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투자의 경우에는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투자신청서가 제출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요건을 강제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정부가 해당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는 무조건 승인된다는 내용도 없다.

뿐만 아니라,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는 잠재적 투자자와 쿠바기업간의 교섭기간 및 투자자와 쿠바 정부기관 사이의 투자신청서 검토기간을 포함하는 투자승인 절차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협상 및 검토절차에 대해서는 쿠바당국에서조차도 느리고 많은 부담을 주는 과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수출입을 허용하였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1995년 외국인투자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가만 할 수 있던 해외에서의 제품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이윤 및 판매수익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외국인투자자는 당해 투자기업의 이윤과 판매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외국인 직원의 임금 및 쿠바 정부에 의한 재산의 강제 수용으로 획득한 보상금을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다섯째, 부분적인 우혜 조세제도를 실시하였다. 사실,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기업에 대한 조세제도는 1994년 조세법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1995년 외국인투자법이 도입된 후에도 크게 변하지는 아니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은 순이익에 대하여 30%의 세금이 부과되며, 쿠바정부가 제공하는 직원 복지혜택을 부담하기 위하여 20%의 지불급여세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총매출금액 또는 외국인투자자 개인의 수입에 대한 세금은 없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MINVEC과 협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몇 가지 또는 모든 세금에 대하여 일시적인 면제를 선언할 수 있으며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쿠바 관세당국도 적절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여섯째, 재산의 강제수용의 금지를 보장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의 재산을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가에 의한 재산수용을 근거로 제3자가 투자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을 쿠바 법원이 인용할 경우 쿠바정부가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금액과 조건은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MINVEC이 공동으로 선택한 국제기구가 정한다.

일곱째,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보험을 제공하며 그 보상 범위는 사고 및 천재지변, 부실채권, 계약위반, 정치상황으로 인한 손실 등이다<sup>125)</sup>. 쿠바정부는 또한 법률, 회계, 정보과학, 경영 컨설팅 등의 기술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125) Luis Sola, Cuban Capitalism: A Guide to Trade and Investment in Pre and Post Embargo Cuba, <http://www.escapeartist.com/efam18/Cuban Capitalism .html>.

그밖에도 쿠바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1996년 6월 쿠바는 자유무역지대 및 산업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한 법령을 공포하였고<sup>126)</sup>, 그에 따라 MINVEC은 자유무역지대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신청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한편, 쿠바는 1997년 자국의 은행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제도의 기능을 구분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중은행과 금융기관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비롯한 기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쿠바는 외국인투자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01년말까지 6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협정에는 1) 외국인투자의 승인조건,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정부의 대우, 3) 강제적인 재산수용, 4) 외국인투자자와 대상국가 사이의 분쟁해결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쿠바가 협상한 양자간 투자협정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협정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따르고 있다<sup>127)</sup>.

### 3. 외국인투자 현황

현재까지 총 540개의 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 설립되었고, 이 중 400개 기업이 현재까지 영업 중에 있다. 스페인이 104명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가 쿠바기업에 투자했고, 캐나다가 70명, 이탈리아 57명, 프랑스 18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현재 영업 중에 있는 기업 중 83개사는 기초산업, 75개사는 관광산업, 40개사는 건축부문 관련 기업들이다. 1997년 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의 숫자가 서서히 증가하여 연간 약 30개씩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1년에는 새로운 합작투자의 숫자와 신규 외국인투자 규모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였다<sup>128)</sup>.

---

126) Ley Sobre Zonas Francas y Parques Industriales, Decreto-Ley No. 165 (June 3, 1996), <http://www.camaracuba.cubaweb.cu/download/D1165sp.zip>.

127)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17.

128) *Ibid.*

앞서도 설명했다시피 쿠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으로, 현재까지의 총 외국인투자 규모는 19억 달러에 불과하다. 또한, 대부분의 투자자가 제한된 규모로 투자하여, 전체 투자의 75%가 500만 달러 미만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투자금액이 비교적 작기는 하지만 외자도입은 쿠바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2000년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총 7억 5750만 달러에 상당하는 제품을 수출했고, 같은 해 제품 및 서비스 총 판매금액은 17억 4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선택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쿠바의 노력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부문은 관광산업이다. 2001년까지 쿠바의 관광산업은 연간 18%씩 성장했고, 2000년에는 약 18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하여 이들의 소비가 거의 20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1년과 2002년 1/4분기 관광객 숫자가 예상에 못 미친 이후 정부에서는 목표치를 낮추기는 했으나 2010년까지 여전히 약 540만 명의 관광객이 쿠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여행금지조치가 해제되면 이 목표치는 쉽게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쿠바정부는 아바나(Havana), 바라테로(Varadero), 산티에고 드 쿠바(Santiago de Cuba), 이슬라 후벤투드(Isla de la Juventud), Costa Sur Central, 올긴(Holguin), Jardines del Rey 등 8개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호텔, 골프장, 요트정박지, 수족관, 온천 및 기타 오락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sup>129)</sup>.

정보통신 부문 역시 앞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이다. 지난 5년 간 쿠바는 정보통신 부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나, 통신부문을 발전시킬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자본이

---

129) *Ibid.*, p.917.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외자유치를 통해 정보통신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고 센싱장비 및 전자기기의 추가 확보 및 개선, 국제전화회사 개발, 광섬유케이블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Ⅲ.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외부적 장애요소

#### 1. 외부적 장애요소

쿠바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문맹자도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또한 중남미 국가 중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100명 중 7명이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쿠바는 범죄율도 낮다. 물론 절도행위가 종종 일어나기는 하지만 강력범죄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다. 아바나는 전 세계적으로 일인당 살인율이 가장 낮고 대도시의 미결살인사건의 숫자도 가장 낮은 나라 중의 하나이다. 시민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여타 중남미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sup>130)</sup>.

쿠바는 그 지리적 위치 때문에 중남미와 북미 간 무역의 자연적인 관문역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쿠바에서 멕시코와 미국 영토가 약 10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교역의 관문이 되기 위한 기반시설도 갖추고 있다. 쿠바에는 공항이 21개 있고, 그 중의 9개가 국제공항이다. 호세 마르티 공항(Jose Marti Airport)은 현재 매년 1만 7천 톤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고, 그 양을 3배로 늘리기

---

130) European Programme of Cooperation, The Legal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for Foreign Trade and Investment by European Companies in Cuba (July 2002), <http://www.cubatraderpublications.com/euletter/index.com>.

위한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국제 해상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와 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갖추고 있다<sup>131)</sup>.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실질적으로 쿠바에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의 규모는 제한적이고, 투자율도 꾸준히 하락해 왔다. 1997년 10월 쿠바 공산당 제5차 대회에서는 국가개발계획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또한 쿠바정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투자지로서 대(對)쿠바 투자의 장점을 홍보하는 등 결의안 이행을 위하여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큰 이유는 쿠바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장해요소도 많은 데다 위험도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2002년 여름 유럽 협력 프로그램(Programme of Cooperation)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들로, 이 보고서는 유럽의 투자자들과 쿠바정부 간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쿠바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쿠바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하락하는 데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던 쿠바의 부채문제나 쿠바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나 외국인투자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외부적 요인은 미국이 쿠바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잘 알려졌듯이, 미국은 쿠바나 쿠바국민이 관여하는 상업적 활동에 대하여 40년 이상 금수조치를 취해왔다. 미국은 또한 미국 이외 다른 나라 국민들의 대(對)쿠바 투자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 특히 미국이

131)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p.918.

1996년 제정한 쿠바자유민주연대법(Helms-Burton Law)의 제3권에 따라 쿠바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은 미국 국민에 의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투자자는 쿠바정부가 원고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밀반입’ 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또한 제4권에서는 쿠바가 미국인으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밀반입하는 제3국 기업의 소유자, 이사, 주요 관계자 및 대리인의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 제3권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제4권도 일부 사건에만 적용되기는 했지만 이 법은 쿠바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실질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sup>132)</sup>.

## 2. 내부적 장애요소

### (1)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적 접근방법

쿠바에서는 외국인투자가 심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다. MINVEC 산하 투자진흥센터(Center for Investment Promotion)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목표 중 하나는 ‘우선대상 부문 및 지역의 경제, 기술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쿠바 내부의 노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MINVEC 장관 역시 앞으로 외국인투자를 보다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133)</sup>.

쿠바는 정부가 부양하고자 하는 부문 등 자국의 경제개발사업을 촉진시키는 투자만을 허용하고 있다. 마르타 로마스(Marta Lomas) MINVEC 장관 역시 쿠바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선택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바정부에서는 우선 어떠한 부문의 투자가 필요한지 파악한 후 적절한 투자자를 찾는다”라고 로마스 장관도 언급한 바 있다. 투자자가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지원 및 기술,

132) Jorge Perez-Lopez & Matias Travieso-Diaz, “The Helms-Burton Law and Its Antidotes: A Classic Standoff?”, Sw. J. L. & Trade Am., Vol.7(2000), p. 95, 106 (2000).

133)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21.

새로운 시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영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투자자와 더불어 쿠바기업에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투자만이 허용된다. 간단히 말해 어떠한 투자가 허용되고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가 아니라 전적으로 쿠바정부에 달려있다<sup>134)</sup>.

특정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더욱 더 길고 복잡한 투승인자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바기업은 국영기업간의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마련한 소위 ‘사회적 목표’ (기업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데, 외국인투자자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쿠바기업은 제안한 투자에 맞는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뿐이다. 이것은 원하는 사업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쿠바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된다.

예를 들어, 앞서 설명한 CBN의 사례를 보면, CBN은 초기 투자를 한 후에야 피닉스가 현재로서는 자전거 대여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전거 대여는 피닉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표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자전거 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닉스는 이 사업을 자사의 사회적 목표에 추가하기 위하여 각료평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게다가 피닉스와 같은 국영기업인 Habaguanex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전거 부품 판매를 그 사회적 목표로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즉, 피닉스가 자전거 대여 사업을 자사의 사회적 목표로 하겠다는 제안을 승인한다는 것은 피닉스와 CBN의 합작투자로 생기는 Bicicletas가 Habaguanex와 간접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35)</sup>.

---

134) *Ibid.*

135) *Ibid.*, p.923.



쿠바 국영기업의 사회적 목표라는 것 자체가 그 정의상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점 역시 합작투자의 확장이나 외국인투자자와의 여러 가지 사업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CBN과 피닉스가 합작투자를 시작한 후 쿠바정부에 중고 자전거를 보수해서 팔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가정해 보자. 또한 제3의 국영기업이나 합작회사가 이미 쿠바정부에 자전거를 팔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쿠바정부는 CBN과 피닉스의 합작회사가 현재 정부에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보다 아무리 낮은 가격에 자전거를 공급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을 수정하여 자전거를 판매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국인 합작사업을 통해 정부는 낮은 가격에 자전거를 구입하고 국영기업은 더 큰 마진을 확보하여 결국 국가가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쿠바기업구조의 경직성으로 인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외국인투자자와 사회주의적 목표를 수호하고자 하는 쿠바정부 사이의 이해차이로 인해 합작회사의 운영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투자에 관한 유럽연합의 보고서(EU Report on Investment)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양 당사자간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위적이고 불필요한 관계가 생기고 회사 발전의 미래도 불확실해 진다.”

## (2) 관료주의적 관행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두 번째 장애물은 정부의 승인절차가 너무나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Conas와 같이 정부가 소유한 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도 보통 1년, 최고 18개월까지 걸린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후에도 정부가 투자를 허용한다는 보장이 없다.

투자절차는 우선 제안서를 비롯해 투자자가 MINVEC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서 시작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우선 MINVEC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해당 제안이 우선투자대상 부문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국영기업이나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과 충돌하지는 않는지, 투자자가 지불능력이 있고 사업계획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MINVEC에서는 또한 투자자금이 적법한 자금원에서 조달됐는지, 제안된 투자로 인해 해당 투자자가 Halms-Burton Law에 따라 미국에서 소송을 당할 위험은 없는지를 확인한다<sup>136)</sup>.

이러한 절차가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 되고 MINVEC이 제안서를 승인한 후, 쿠바 측 투자대상기업은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협상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와 쿠바 측 대상기업이 합의를 하고 나면 양측은 제안된 합작회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게 된다. 때로 100페이지까지 달하는 이 사업타당성조사서에는 외국인투자자와 대상기업의 기여 정도, 직원 수, 임금, 예상 생산율, 제품가격, 생산비용, 건설에 사용되는 원자재 종류, 합작기업의 위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창업 및 기업경영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다루게 된다.

이 사업타당성 조사에는 해당 합작투자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정부기관에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일례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국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해당 기업의 능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재정물가부(Ministry of Finances and Prices)에서는 이 기업이 쿠바 국내시장에서 상업적으로 판매하게 될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을 요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부(Ministry of Labor)에서는 쿠바 인력을 활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고용관련 데이터(Plantilla de trabajo)를 요구할 수도 있다.

---

136) <http://www.cubagob.cu>.

이 데이터에는 직원 수와 각 직원의 역할, 임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노동부에서는 모든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합작회사나 경제협력단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특별한 허가가 없는 한 국영기업의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가 이러한 타당성 조사를 MINVEC에 제출하면, MINVEC에서는 이 내용을 자체 견해와 함께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임시 위원회인 정부위원회(Governmental Commission)로 제출하게 된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는 어떤 부처와 어떤 기관이 특정 투자제안과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일단 MINVEC에서 투자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든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이를 보내 협의를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각 기관의 답변을 얻게 된다”라고만 밝히고 있다<sup>137)</sup>.

정부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60일 내에 해당 투자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첫 번째 제출 시에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제안서가 처음 제출됐을 때 정부위원회에서는 이 제안을 완전히 거부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어 투자자에게 반려할 수도 있다. 어느 관련 부처장이든 타당성 조사를 투자자에게 돌려보내 특정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투자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면 이 타당성 연구는 다시 정부위원회로 보내져서 60일 내에 다시 허용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위원회에서 투자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는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Raul Castro) 국방장관 및 카를로스 라게(Carlos Lage) 제1부통령 및 카스트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각료평의회 산하 집행위원회에 제안서와 승인 권고를 보내게 된다. 집행위원회는 제안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을

---

137)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25.

갖는다.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합작투자를 허가하는 공식 명령의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나면 외국인투자자와 쿠바기업, 집행위원회의 대표가 합작기업을 설립하는 문서에 서명을 한 후, 상공회의소에 등록을 하고 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투자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부부처와 관련 기관의 장을 거쳐 카스트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부 관계자들의 승인을 받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투자절차가 늦어지게 되고 투자를 결정한 투자자마저도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 (3) 불합리한 노동관련 법

#### 1)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노동관련 규정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경영 및 기술 관련 직종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반면, 쿠바 인력은 외국인투자자나 합작기업에 직접 고용될 수 없다.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쿠바 인력은 반드시 MINVEC이 지정한 인력회사를 통해 제공되도록 하는 1982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1995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노동관련 조항의 잔여조항에서는 합작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명령을 통해 기존의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규정된 것과는 다른 노동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1995년 외국인투자법 자체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두 조항이 인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sup>138)</sup>.

138) <http://www.cubanacan.cu>.

현재 1995년 외국인투자법 및 노동 관련 규정은 다음에 설명하는 과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는 동안 투자자와 대상기업에서는 합작회사에서 필요한 직원 수를 결정한 후, MINVEC에서 지정한 인력기관을 접촉하게 된다. 이 인력기관은 해당 투자대상 부문 국영기업의 자회사인 경우도 있고, 외국인투자자와 협력하는 기업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일례로, 쿠바나칸(Cubanacan)이라는 기업은 관광부문에 진출한 쿠바의 방위업체로서, 지난 10년간 외국기업과 여러 개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였다. 쿠바나칸은 또한 관광산업의 특정 부문에 특화된 여러 개의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이 소규모 기업 중의 하나가 인력회사로, 쿠바나칸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외국인투자회사에 인력을 공급한다<sup>139)</sup>.

그 후 MINVEC에서 지정한 인력회사와 합작회사는 각각의 업무부문에 대하여 인력회사에 지불할 월 급여를 미국달러로 결정한다. 앞의 CBN의 경우, CBN은 기계공 한명 당 월 460달러, 영업사원에 대해서는 500달러, 관리자는 550달러를 인력회사에 지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임금에 지불급여세 25%가 더해지는데, 이 세금은 합작기업이 인력기관에 미국 달러로 직접 지불하게 된다. 인력회사에서는 해당 업무부문에 대하여 노동부가 정한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쿠바 페소(peso)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계공은 매월 200페소, 영업사원은 300페소, 관리자는 400페소를 각각 받게 된다.

인력회사에서는 고용절차 및 고용조건, 계약해지에 걸쳐 고용의 모든 측면을 관리한다. 각각의 인력회사에서는 근무 가능한 노동자의 목록(bolsa de trabajo)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쿠바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인력회사에서는 합작회사의 경영진과 노동자 목록에서 선정한 노동자 사이의 면접일정을 정한다. 투자자와 쿠바의 투자대상기업에서는 후보에 오른 여러 명의 노동자 중에서 최종적으로

---

139)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28.

로 직원을 선발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이 목록에 등록되어 있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1990년 관광부문 인력에 대하여 마련된 인력풀을 기준으로 보면 필요한 업무수행 능력과 그에 못지않게 ‘도덕적 성품’에도 중점을 두어 인력풀을 구성하게 된다<sup>140)</sup>.

기업은 또한 인력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노동자를 고용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인력회사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쿠바 노동자를 고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회사와 접촉하여 특정 노동자와의 계약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력회사는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범죄기록과 ‘도덕적 성품’에 대한 배경조사를 하고, 인력회사가 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기업은 인력회사와 계약을 맺어 이 노동자를 자사에서 일하게 할 수 있다<sup>141)</sup>. 어떤 경우에도 합작기업이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할 수는 없다.

인력회사가 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Venezia Hospitality International사의 데이비드 맥밀란(David Mamillan) 사장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일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인력회사 대하여 만족한다.”고 말하였다. 인력회사는 쿠바경제나 쿠바의 인력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투자자들이 최소한 믿을 만 하고 제대로 일 할 수 있는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반면,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은 인력회사의 인력풀을 통해 고용한 노동자들이 특정 업무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CBN의 경우에는 인력풀을 통해 면접한 노동자들 중 자전거와 관련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자전거기술자로 일하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면

140) Jorge F. Perez-Lopez, “Cuba's Thrus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 Special Labor Regime for Joint Ventures in International Tourism”, Miami Inter-Am. L. Rev., Vol.24(1992), p.221.

141)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보장한 ILO 의 Convention 111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에 대해서는 Pax Christi Netherlands, Cuba: A Year After the Pope, Return of the Iron Curtain? (Feb. 1999), <http://64.21.33.164/ref/dis/029901.htm> 참조.

접에 참가한 모든 노동자들은 직업이 없었고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CBN의 투자자들은 더 나은 노동자를 찾을 시간도, 네트워크도 없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인력풀에 있는 노동자 중에서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고용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아바나에서 소규모 여행사를 소유하고 있는 한 외국인투자자는 인력회사의 인력풀 밖에서 모든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지난 20여 년간 쿠바를 수차례 방문하여 쿠바에 지인이 많았고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바나투르(HAVANATUR)이라는 쿠바 내 여행사의 영업을 감독하는 국영기업에 등록하고 그곳을 통해 직원을 고용하여야 하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신뢰할 수 있는 7명의 직원을 직접 선발하였다. 그는 아바나투르의 인력회사에 그 명단을 주고, 인력회사가 이 직원들을 고용하여 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예를 통해 외국인투자자가 쿠바에 대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인력을 인력풀 밖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42)</sup>.

쿠바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지사의 경우에는 쿠바인력 공급받는 데 있어 다소 다른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은 노동규제에 따라 외국기업의 쿠바지사에게 전문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ACOREC를 통해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외국기업 지사들은 처음 1-2개월간의 시험기간을 갖고 이 기간 동안에는 신규직원에게 대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직원에 대하여 ACOREC와 최대 5년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업은 각 직원의 업무와 근무시간, 책임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sup>143)</sup>.

142)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27.

143) *Ibid.*, p.930.

다른 인력회사들이 합작회사와 고용계약에 대하여 기꺼이 협상하는 것과는 달리, ACOREC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무부문에 대하여 협상이 불가능한 확정된 임금율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노동자에 대해서는 월 425달러, 법률컨설턴트, 관리자, 엔지니어, 부사장 직급에 대해서는 월 1,000달러의 임금을 받는다. ACOREC에 고용된 인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소화로 받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쿠바지사는 직원 각각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투자기업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여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직원들의 경우에는 합작회사나 경제협력단체의 직원들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합작회사나 경제협력단체의 경우에는 임금이 어느 정도 협상 가능하여 공식적인 임금율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국영 인력회사인 CUBALSE, S.A.는 외국 대사관이나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한 외국기관에 쿠바인력을 주로 제공한다.

어떠한 인력회사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던 간에 한 가지 동일한 점은, 외국인투자자는 쿠바인력의 노동에 대하여 인력회사에 미국달러로 임금을 지불하고, 인력회사는 노동자에게 해당 업무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폐소화로 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달러와 폐소화에 1:1 환율을 적용할 때조차도 쿠바 노동자들은 외국인투자자가 인력회사에 미국달러로 지불하는 금액보다 적은 폐소화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환율이 1달러 당 26-27폐소이기 때문에 쿠바 노동자는 투자자가 1달러 지불 시 4센트도 못 받게 된다.

## 2) 노동제도에 대한 외부의 비난

유엔과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국제기구와 쿠바 야당정치인들은 쿠바의 노동정책이 노동력을



착취하는 제도라고 비난해 왔다<sup>144)</sup>. 노동단체에 따르면 쿠바는 ILO가 마련하고 쿠바정부 스스로도 비준한 노동기준을 위반해 왔다. 1948년 채택된 ILO 협약 제87호의 제2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 허가 없이도 원하는 기구를 결성하거나 가입하고 해당 기구의 규칙만을 따를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쿠바계 미국 노동단체들 역시 쿠바의 노동관행을 비난해 왔다<sup>145)</sup>.

쿠바는 또한 ILO 협약 제95호를 위반하고 있다. 1949년에 채택된 이 협약 제5조에서는 “국내법이나 기타 규정, 집단합의 또는 중재, 또는 노동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임금은 해당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협약 제9조에서는 “고용 계약의 확보 또는 유지를 목적으로 노동자가 고용주나 그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직간접적인 사례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과는 달리 쿠바정부는 외국기업이 직접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외국인투자자는 국가의 인력회사를 통해 쿠바 인력을 고용하여야 한다. 투자자는 노동자의 임금을 인력회사에 미국달러로 지불하고, 인력회사는 이 임금의 일부를 쿠바 페소화로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이러한 임금 ‘몰수’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듯이 ILO 협약 제95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sup>146)</sup>.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국 전문가들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노동 제도를 비난해왔다. 한 전문가는

---

144) 예컨대,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ebsite, at <http://www.ilo.org>; Human Rights Watch, Cuba's Repressive Machinery, <http://www.hrw.org/reports/1999/cuba/Cuba996-01.htm> 참조.

145) Confederacion Obrera Nacional Independiente de Cuba, Report of Viola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s Standards and Conventions by the Government of Cuba (June 2001), <http://64.21.33.164/sindical/docs/d06080101e.html>.

146)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30.

“노동자를 고용하는 쿠바 정부기관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진 기업이다. 이러한 기업은 제3자, 즉 쿠바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고 이들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이다.”라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쿠바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착취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쿠바 정부가 자신들의 인생을 부당하고 비인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쿠바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들의 ‘공모’하에 만들어 낸 이 열악한 노동계약에 대하여 경멸할 만한 구조라고 비난하고 있다<sup>147)</sup>.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쿠바정부가 윤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원칙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쿠바의 윤리적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많은 원칙들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쿠바의 유명한 반체제인사의 이름을 따 1994년 처음 고안된 ‘아르코스(Arcos) 원칙’이다. 이러한 윤리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쿠바에 진출하고자 하는 미국 기업들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러한 원칙을 이행할 것을 의무적으로 약속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48)</sup>.

이러한 원칙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쿠바인의 존엄성과 적절한 사법절차를 존중하고, 시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시설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에 있어 쿠바인들에게 동등한 권리와 비차별 원칙을 보장하고, 정치적 성향이나 성별, 인종, 종교, 나이에 따른 이유로 인해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등하고 정당한 고용관행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조합의 조직과 정당한 임금에 대한 쿠바인들의

147) <http://www.amigospais-guaracabuya.org/oagal004.html>.

148) National Policy Association Cuba Working Group, National Policy Association No. 1, Principles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in Cuba (Summer 2000), <http://www.npa1.org>.

권리를 보장하고,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성이나 보건, 문화, 환경 보호 등 직장 이외의 부문에서의 직원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149)</sup>.

### 3) 쿠바의 대응

쿠바정부에서는 자국의 간접고용제도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보면 간접고용제도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쿠바정부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외국인투자기업에 인력을 제공하는 현행 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한다<sup>150)</sup>.

우선, 쿠바 노동자들은 쿠바 국내 노동법에 따라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고 인력회사를 통할 때에도 이러한 권리가 보호된다는 것이다. 모든 노동자들은 매년 1개월의 유급휴가와 복직에 대한 보장과 함께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고, 임신 7개월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력회사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임금을 지급하고 모든 인종에 대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쿠바정부에서는 카리브해 연안 국가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예로 들면서 현행 노동정책 하에서 쿠바 노동자들은 그러한 착취로부터 보호받는다 주장하였다.

둘째, 간접고용제도를 통해 쿠바의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회사들은 쿠바정부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데, 현재 약 3만 명의 쿠바 노동자들이 합작회사와 외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노동자 1인당 평균 500달러의 임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쿠바정부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쿠바인력 고용을 통해 매달 1500만 달러의 현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149) <http://www.sigloxxi.org/Archivo/arcos-i.htm>.

150)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33.

셋째, 쿠바정부에서는 경제 각 부문에서 복지제도에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는 부문에서는 이 기여금의 대부분이 인력회사를 통해 현금으로 제공되고, 정부는 이 기여금을 보전, 교육을 비롯한 여타 정부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따라서 쿠바정부는 정부가 노동자에게서 거두어들이는 돈이 결국 전 국민을 위하여 재투자된다고 주장한다<sup>151)</sup>.

현행 노동제도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마지막 이유는 간접고용제도가 유일하게 사회주의 목표와 일치하는 고용형태라고 보기 때문이다. 쿠바정부는 합작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전체 노동인구의 0.7%)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전체 노동인구의 77.5%) 사이에 불평등을 부추기는 고용제도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000년 쿠바정부는 쿠바노동자들에게 월 234페소, 즉 10달러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만약 합작회사의 직원들이 월 500달러 이상 받을 수 있게 될 경우 이 두 계급의 노동자들 사이에 큰 불평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격차가 발생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 사이에 불만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 사회적 동요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임금균형을 이루는 것이 사회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52)</sup>.

#### 4) 쿠바의 입장에 대한 평가

쿠바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가치 95% 이상을 정부가 착취하고 있는 것은 쿠바정부가 아무리 정당화하려고 해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쿠바의 국내 노동법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준수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간접노동제도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151) *Ibid.*, p.934.

152) [http://www.camaracuba.cu/TPHabana/Estadisticas\\_2000/Estadisticas2000.htm](http://www.camaracuba.cu/TPHabana/Estadisticas_2000/Estadisticas2000.htm).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사회주의 제도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사회보장제도 문제만 보더라도 정부가 국가경제를 외국인투자에 한층 더 개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진정한 기업개혁운동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sup>153)</sup>. 요컨대, 쿠바정부는 현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국영기업의 임금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sup>154)</sup>.

#### (4)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고용조건 비교

국가의 임금착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쿠바 노동자들은 국영기업의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노동조건도 국영기업보다는 합작회사와 외국기업의 지사가 훨씬 낫다. 예를 들면, 외국기업 지사의 사무실에는 쿠바에서는 보기 드물게 냉방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이들 노동자들은 의류나 식품, 통근수단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각종 혜택도 받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공식적인 임금 이외에 달러로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상여금은 보편적으로 제공되면서도 일반적으로는 논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관리하고 정하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 없이 보너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정부도 노동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생산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종종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절도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들은 대개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sup>155)</sup>.

153) Matias F. Travieso-Diaz, "Cuba's Perfeccionamiento Empresarial Law: A Step Towards Privatization?", U. Pa. J. Int'l Econ. L., Vol.23(2002), p.119 (2002).

154)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35.

155) <http://www.lexingtoninstitute.org/cuba/cubanews599.htm>.

한 투자자는 쿠바에서의 사업 초기 몇 달 간, 장비와 물품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절도행위를 막기 위하여 이 투자자는 모든 직원에게 매달 10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사실상 임금을 두 배로 인상하였다. 또 다른 투자자의 경우에는 모든 초과근무수당을 달러로 지급하였다. 모든 직원의 업무와 근무시간은 기업허가가 나오기 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직원들에게 처음 정해진 업무 이외에는 다른 업무는 시킬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투자자에게는 또 다른 추가비용을 발생시키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달러화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더 나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만약 외국인투자자가 직원에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시켜야 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인력회사에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원에게 달러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투자자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러로 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정직하고 능력 있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 그러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많은 쿠바인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sup>156)</sup>.

실제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의 임금을 받는다. 다시 말해, 인력회사가 쿠바 페소화로 지급하는 공식적인 임금과 회사가 미국달러 및 소비자 물품의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비공식적인 임금이다. 이 두 가지 임금을 모두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임금은 국영기업의 임금보다 상당히 많다. 국가의 임금착취에 대한 쿠바 노동자들의 의견 역시 분분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매달 식량과 교통비, 의복 배급과 무상 의료서비스 및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제품과 서비스도 정부의 지원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156)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37.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외국인 소유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한 한 쿠바인은 “쿠바의 임금과 다른 나라의 임금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얼핏 보면 국가에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쿠바의 제도와 그 제도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 쿠바인들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한 외국여행사의 직원 역시 “한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쿠바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필요한 제도다.”라고 유사한 의견을 말하였다.

캐나다 은행(Bank of Canada)의 한 쿠바직원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기꺼이 이러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 직원은 물론 쿠바 폐소화로 임금을 받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매일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의복을 제공하고, 3만 달러 상당의 SUV와 휘발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신용카드도 제공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살아 봤지만 쿠바에서 사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였다. “나는 현실에 만족하며 살고 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보다는 조국을 위하여 내가 가진 돈을 쓰고 싶다. 누구나 혁명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필자가 인터뷰한 노동자들 중 인력회사를 통해 일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없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합작회사 직원들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다. 이들은 정부가 임금의 95%를 착취하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는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쿠바 노동자들이 노동의 경제학에 대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노동자들과 반드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명목임금을 받고 있고, 이 임금도 노동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한다. 실제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모든 생활필수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들은 또한 스스로 자신의 노동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그 정도 수준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모두가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공평하다고 믿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들은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믿지 않기도 한다.

최소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착취의 문제는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은 공공부문의 노동자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 이들은 다른 쿠바인들처럼 생계를 위하여 절도를 하거나 치열하게 일하거나 암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다. 무상교육과 의료서비스를 받고, 싼 값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보다도 더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국가에서 노동자들의 업무내용에서 임금 및 근무시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합작회사 직원들의 삶도 국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는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린다. 쿠바의 노동력은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 (5) 쿠바의 노동제도가 야기하는 문제

쿠바정부가 노동자들의 의견과는 관계없이 현 노동제도가 쿠바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앞서 설명했듯이, 투자자들은 쿠바 노동력을 사용하기 위하여 인력회사에 지불하는 공식적인 임금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



공식적인 임금 등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임금 지급방식은 최소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운영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고 수익성과 경쟁력에도 저하시킨다. 또한 업무요건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직원과의 관계를 통제할 수도 없다. 마지막으로 노동력 착취를 지원하고 부추긴다는 국제적 비난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합쳐져 쿠바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U의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반적인 문제와 구체적인 문제들로 인해 쿠바의 노동비용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라고 요약하고 있다<sup>157)</sup>.

#### IV. 외국인투자제도의 과제

##### 1. 의 의

여러 연구성과물에서는 쿠바가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정상화하게 되면 미국의 중요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이는 쿠바의 외국인투자여건이 크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쿠바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 의한 대(對)쿠바 투자도 빠르게 성공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쿠바는 외국인투자처로서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쿠바의 투자환경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외부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더 큰 장애물은 내부적인 요소로 이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쿠바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90년대 1995년 외국인투자법이 이러한 수단

---

157) *Ibid.*, p.938.

으로 활용된 것처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가 그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투자법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법률 및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법이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법률의 기본이며 쿠바의 외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를 위한 제도개혁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

##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대우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라고도 불리며, 외국인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국민대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국내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 법률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쿠바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쿠바 국내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되고 내국민 및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법 및 기타 관련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sup>158)</sup>.

158) Ibrahim F. I. Shihata, Legal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The World Bank Guidelines 155-164 (1993).

현재 쿠바는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는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반드시 국영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쿠바 측 회사를 통해 상당한, 때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이 쿠바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sup>159)</sup>.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재산소유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 쿠바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한다.

### 3. 외국인투자자 자산의 보호

투자자 유치제도의 두 번째 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과 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자산이 국가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 수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이는 투자의 가치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세금이나 관세를 책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는 또한 내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득세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sup>160)</sup>.

쿠바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이들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

159) Mark B. Baker & Mark D. Holmes, "An Analysis of Latin American Foreign Investment Law: Proposals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Political Stability", U. Miami Inter-Am. L. Rev., Vol.23(1991), pp.14-17.

160)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p.942.

조치를 취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쿠바는 외국인투자자를 재산수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60개의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쿠바는 과거에 아무런 보상 없이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법에서 이 사항을 분명히 정의하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헌법에도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수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는 데 있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쿠바는 이른바 헐 공식(Hull Formula)을 바탕으로 양자투자협정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은 외국인투자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양자투자협정은 원래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한 나라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쿠바는 기존의 투자협정을 준수하고 결국 미국과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하여야 한다<sup>161)</sup>.

투자자의 자산을 재산수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제분쟁해결조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은 중재를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투자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정으로, 쿠바는 이 협약을 준수하여 외국인투자자와의 모든 분쟁이 ICSID하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sup>162)</sup>.

161) Jeswald W. Salacuse, "BIT by BIT: The Growth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ir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t'l Lawyer. Vol.24(1990), pp. 657-658.

162) Kenneth S. Jacob, "Reinvigorating ICSID With a New Mission and With Renewed

#### 4.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 번째 근본 축은 관료주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중앙기구를 발족시켜, 여기에 투자자가 등록을 하고 이 기구에서 투자유치를 완료하기까지의 모든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시간과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투자자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현재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NVEC이 투자자의 모든 규제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기구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정보센터로서의 MINVEC의 역할은 투자에 있어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는 정부의 승인절차로 인해 그 의미가 다소 퇴색되었다<sup>163)</sup>.

대부분의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정부 승인요건을 모두 폐지하고 국내기업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쿠바도 투자 대상과 방법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현재의 관행을 버리고 승인요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투자 건별로 승인절차가 달라지는 현재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대신 특정 산업부문에 또는 전반적인 투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의 목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부문과 관련하여, 특정 부문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우에는 투자가 허용되는 ‘투자대상목록’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투자금지대상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어떤 기업이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상

---

Respect for Party Autonomy”, Va. J. Int’l L. Vol.33(1992), pp.135-38.  
163)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43.

황이나 관련 규정이 남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간접고용관행은 쿠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 5. 기타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앞서 언급한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소 이외에, 외국인투자법에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첨단기술과 같은 특정부문에 관한 투자진흥책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이나 수입관세인하와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재정적 혜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던 국가들도 이제는 이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sup>164</sup>).

투자 인센티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쿠바는 에너지부문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즉 외국인투자가 시급한 부문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하는 경우도 그 기간은 3-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 V.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

쿠바는 1990년대 초에서 중반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는 했지만 그 투자역량에는 미치지 못했고 실제로 필요한 수준의 투자를 유치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은 투자에 대한 쿠바정부의 이증적인 태도, 잠재적 투자자에 대한 각종 장애물과 제약, 미국의 제제

164) Yitzhak Hadari, "The Role of Tax Incentives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sirable Policy", *Int'l Lawyer*, Vol.24(1990), pp.121-122; Kojo Yelapaala, "In Search of Effective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lternatives to Tax Policies", *J. Int'l. L. Bus.*, Vol.7(1985), pp.208-212.

및 기타 외부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 보면, 대부분의 외국기업에게 있어 대(對)쿠바 투자는 위험한 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현재 쿠바의 투자환경 역시 그다지 우호적이지 못하다. 사실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물은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가 더 많고 이는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앞으로도 쿠바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는 당장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쿠바가 외국자본에 대하여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투자가 쿠바 경제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장려하는 역할도 하는 법과 투자제도에 대하여 정부가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는 뜻은 아니다. 경제활동에 있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의 사고방식 자체가 변하지 아니하고서는,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제도를 고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 정책을 시행하려는 상반된 태도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쿠바인력 사용에 대한 현 제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쿠바정부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노동문제에 특히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쿠바시장 진출을 꺼리는 것은 쿠바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제약을 가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인 만큼 이러한 인식은 쿠바가 투자에 대한 장애물을 없애려는 의지만 있다면 쉽게 그리고 단기간에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제 4 장 중동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I. 의 의

중동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우리나라에게도 역동적인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중동의 외국인투자법 또는 무역관련법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편이다. 중동지역은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 각국은 석유에 대한 국가경제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석유에 기반하고 있는 국내경제를 정보 및 서비스에 기반하는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세계 선진국들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역적 경제다변화, 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 인구증가, 지역통합 노력, 이라크 재건 등의 요소들이 외국인투자유치에 상승작용을 일으켜 중동지역은 서방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중동의 지도자들은 자국 경제를 석유와 국가지원금에 거의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여 경제적 다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많은 중동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국가소유로 운영되던 사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법을 제공하고 있다<sup>165)</sup>. 세계은행의 추정 에 따르면 중동의 민영화작업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민간투자액은 연간 31억달러에 달한다<sup>166)</sup>.

165) <http://www.imf.org/external/pubs/ft/fandd/2002/12/fasano.htm>.

166) Emad Tinawi, Middle Eastern Law, Int'l Lawyer. Vol.31(1997), pp.541-544.



외국인투자 수요를 촉발하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지역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를 들 수 있다. 인구의 35%가 15세 이하이며,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노동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중동의 젊은이들은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하여 서방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등 서방세계의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sup>167)</sup>.

현재 페르시아만안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이하 “GCC”라 한다)는 대외 무역 활성화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GCC는 역내국가간 협력과 지역통합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80년 초에 구성되었으며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GCC는 6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1) 사우디아라비아, (2) 쿠웨이트, (3) 바레인, (4) 카타르, (5) 오만, (6)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고 있다. GCC는 1980년 구성된 이후 경제통합, 투자, 무역, 노동 등에 관한 법규정의 통합, 통화동맹의 창설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를 통해 GCC는 미국의 다섯 번째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미국의 중요한 수출대상지가 되고 있다<sup>168)</sup>.

최근 이라크에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서 서방 기업들이 진출하고 전반적으로 무역제재가 완화되면서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가 해제되면서 리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에서의 투자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sup>169)</sup>.

---

167) The World Bank Group, 200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56 (2004), available at <http://www.worldbank.org/data/wdi2004/tables/table5-1.pdf>.

168)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the Gulf Countries [hereinafter ABCGC], The Gulf: Competition for a Key Market, available at <http://www.abcgulf.org/theGulf.htm>.

169) [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2634077](http://www.economist.com/business/displayStory.cfm?story_id=2634077).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에게도 무역·투자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들 국가의 법적 전통 및 역사, 문화, 종교 기타 경제협력관계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중동 국가들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분석에 앞서 중동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 II. 중동의 지역적 특성과 문화

### 1. 중동의 지역적 범위와 문화

“중동”은 본래 오스만 제국에 속한 지역으로서 서남아시아에서 북동아프리카를 포함하며 지정학적·문화적 개념으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 사이의 국가들을 가리키는 개념이다<sup>170)</sup>. 역사적으로 중동 지역의 실제 경계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왔지만, 일반적으로 이 지역의 서쪽 절반에는 나일 강 델타를 따라서 남동지중해지역 또는 오늘날의 이집트가 해당되며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란까지 포함된다.

중동에는 일반적으로 리비아, 이집트, 터키,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현재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지역), 이스라엘, 키프로스,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국가가 포함된다.

중동은 많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민족이 거주하고 있으나, 오랜 역사에 대한 공동의 자긍심을 공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던 제국이 있었고 유일신 사상이 생겨났으며 인류문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던 지역이다.

이집트의 나일강 저지대와 델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유역은 인류 초기의 문명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3대 유일신 종교인 유대교(기원전 13세기), 기독교(서기 1-4세기), 이슬람교

170) [http://encarta.msn.com/encyclopedia/761579298/Middle\\_East.html](http://encarta.msn.com/encyclopedia/761579298/Middle_East.html).

(서기 7세기)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기원전 5000년경 메소포타미아의 수풀이 우거진 고원에서 발생한 역동적인 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되고 강력한 문명이었다<sup>171)</sup>.

세월이 지나면서 남부 메소포타미아의 지배자는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 오스만 제국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이 제국들의 심오한 철학 및 과학적 성과가 중동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기독교의 탄생 직후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의 바그다드에서 멀지 아니한 곳에 견고한 수도를 건설하였다. 6세기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의 전쟁으로 대상의 행로를 따라 지중해 연안과 동방 사이에 교역 센터가 만들어 지고 발전하였다.

중세에 중동 지역은 초기적인 국제 무역과 상거래의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중동 전체에 걸쳐 실크의 무역호가 형성되어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의 사람들과 상품을 연결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상업, 무역, 통화의 교환을 통한 부가 창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상업 거래, 조세 체제, 협상, 재산 목록, 임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는 점토판에 잘 나타나있다<sup>172)</sup>. 이때부터 중동의 사람들의 성장과 번영에서 상거래와 교역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중 받고 있다.

한 때 이 지역을 지배했던 광대한 제국의 흔적 속에서 오늘날의 다양하고 독특한 민족과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들의 전통은 북동쪽의 페르시아 제국, 북서쪽의 이집트, 서쪽의 예루살렘, 그리고 서기 7-8세기의 아랍제국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이 지역의 3대 민족 아랍인, 페

---

171) 당시 이 지역에서는 초기형태의 무역, 통화, 은행, 바퀴, 쟁기, 실형문자 등이 있었으며 최초의 알파벳과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라비아 숫자를 만들어 수학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기하(algebra),” “알칼리성(alkaline)” 등의 단어도 중동에서 기원한 것이다.

172) <http://www.uoc.edu/humfil/articles/eng/panosa0304/panosa0304.pdf>.

르시아인, 터키인은 모두 자신들의 독특한 민족적 전통, 언어, 문학, 문화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 세기에 걸쳐 이슬람교라는 공통의 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를 하나로 묶어 왔다. 이 지역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 신자이며, 중동 사람들의 하루하루의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이슬람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2. 이슬람 문화·전통의 기업 활동에 대한 영향

이슬람교는 7세기 초 예언자 마호메트에 의해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탄생하였다. “알라” 신의 말은 마호메트에게 전해져 이슬람교의 경전인 성스러운 코란에 기록되었는데, 초기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과 예언을 인정하면서도 코란은 신의 최후의 말씀을 나타낸다고 스스로를 구별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교 신도의 수는 십억 명을 상회하며, 세계 인구의 거의 1/6에 해당한다.

중동지역의 모든 국가가 이슬람교의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춘 것은 아니지만<sup>173)</sup>, 그 대부분은 자국의 법률에 이슬람교의 율법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그들의 행동양식 역시 이슬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개개의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이슬람 율법을 자국의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슬람의 원칙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슬람 원칙의 일반적인 역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지역 전체를 파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서방의 많은 사람들은 테러, 근본주의 또는 언론매체가 유포한 왜곡으로 인해 이슬람신앙의 기반과 근본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슬람교가 진정으로 기반하고 있는 사상 및 7세기 중동지역의

173) Raj Bhala, Poverty, “Islam and Doha: Unmet Challenges Facing American Trade Law”, Int'l Lawyer, Vol.36(2002), p. 159, 184 n.136.

어떠한 역사적 상황하에서 이슬람교가 잉태되었는지를 이해하여야 이슬람 신앙과 중동지역의 문화, 전통, 오늘날의 법률 및 사업관행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교가 엄격하다는 일반적인 오해로 인해 이슬람법이 현대의 상업활동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아니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sup>174)</sup>. 그러나 이슬람법은 중동 지역에서 수 세기 동안 사업 관행과 거래의 결합을 위한 안정된 기반을 제공하여왔다<sup>175)</sup>. 다만, 국제화시대에 접어 들어오면서 시대착오적인 법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법률제도와 사법기관에 대한 시의적절한 종합적 개혁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이슬람법은 세계 주요 비서구적 법률제도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통합된 단일 이슬람 법률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습법과 마찬가지로 이슬람법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 중동 법률제도의 공통점은 흔히 “샤리아(Shari'a)”<sup>176)</sup>라고 부르는 이슬람 법률원칙과 유럽 시민법의 모델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코란은 또한 사법활동 원칙의 근원이며 이슬람교도간의 법적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호메트 선지자가 만든 중재수단이기도 하다. 현대의 분쟁에 코란을 적용하는 데는 코란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법

---

174) Howard L. Stovall, “Arab Commercial Laws into the Future”, Int'l Lawyer, Vol.34(2000), p. 839, 841.

175) *Ibid.*

176) 샤리아는 종교적·법적 계명을 말하며, 마호메트 선지자를 통해 신이 코란과 “수나(Sunna)” 즉 예언자의 전통을 기록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샤리아”는 “올바른 길,” 또는 이슬람 원칙을 지키며 살고자 소망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위한 지침을 뜻한다. 수나는 이슬람법의 두 번째 근원으로, 마호메트 선지자와 그 가족의 행위에서 탄생한 전통과 관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선지자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법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하는 등을 다룬 이야기들이 법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지자가 죽은 뒤 수나는 여러 이슬람법 학파에 의해 취합되었다. 결국 중동 전역에서 등장한 학파들은 하디스(Hadith)의 형태와 정확성에 따라 다양한 법률 학파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 법률의 기반과 여러 중동 국가 내에서 이슬람법이 수행하는 역할에는 문화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 가족법(결혼, 이혼, 상속), 형법(간음, 중상, 중독), 증거(증인의 인 용), 일부 상업적 문제 등 제한된 영역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계 가 존재한다<sup>177)</sup>.

이후 19세기까지 이슬람법의 발전 과정에서는 일찍이 코란과 수나 에서 유래된 법의 근본원칙을 개혁하려는 의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행정적 규제와 수정을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지 않았다. 합의도출과 유추라는 이슬람의 원칙을 통하여 이슬람의 법학 자들은 이러한 규정을 샤리아의 기반구조에 맞춰왔다. 그 결과, 중동 각국간에는 이슬람법을 보충하기 위한 법 해석과 규정들이 미세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마호메트 사후 많은 이슬람 학파와 법학자들 이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근본적인 법원칙이 코란과 수나에 포함되어 있 지만, 이러한 법원칙들은 이슬람 법학자와 신학자들에 의해 오랜 시 간에 걸쳐 중동 지역 전체에서 보완과 해석의 과정을 거쳐 왔다. 결 국 이슬람 국가들은 “시간이 흐르면 규칙도 바뀐다”라는 이슬람의 법 리에 따라 자신들의 법을 수정하고 발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 3. 세계화와 이슬람의 법문화 변천

종교개혁의 의미와 방법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이라 는 틀은 고정되고 안정적이지만, 그로부터 실제로 출현하는 현상은 정체적이거나 획일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슬람 개혁가들은 기존의 이 슬람의 규율과 제도의 틀 속에서 무조건 전통이나 이슬람 관습을 따 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독자 적인 분석이나 해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동국가들도 상품, 서비스, 자본, 정보, 기술, 인력의 국제적인 이동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자국

177) <http://www.ummah.org.uk/what-is-islam/quran/noble/subject1.htm>.

의 제도를 수정하고 시장장벽을 낮추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시대에 뒤쳐진 법이 개정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은 19세기 초 서방의 무역과 교역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국제화의 씨앗이 싹틔던 때로부터 이슬람적인 법률체제를 국가별로 다양한 수준으로 개혁하여왔던 것이다.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은 중동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다. 이 시기에 중동 지역은 무역, 사상의 폭넓은 교류, 외국으로부터의 인력의 유입 등을 경험하였다. 또 같은 시기에 중동 지역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것은 유럽수입품들이었다. 유럽인들은 자주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오스만 제국을 점점 개방되고 있는 부유한 시장으로 파악하였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중동과의 교역 및 중동에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유럽의 법원칙에 이슬람의 법률체도를 반영시키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슬람의 법질서의 대부분이 유럽식의 법령으로 대체되거나 보완되었다. 결과적으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상업관련법과 절차를 수용하였으나, 제국의 기반인 이슬람교도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의 실제적인 구조를 수정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이슬람의 법률의 틀에 서방의 새로운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추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세기 초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유럽의 상업 및 교역 관련법이 계속 이슬람의 법률 체제에 혼합되었다. 교역법에 있어서는 법률체제가 크게 변화하기도 했지만, 유럽의 법은 이슬람법을 대체하기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존의 법적인 틀안에 공존하였다.

이슬람 공동체 내에서 개방적 사고를 가진 권력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변화에 반응하여 유연성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공동체내의 반대에 대응하였다<sup>178)</sup>. 이러한 움직임은 마답(madhab)이라고 불리우는 개

178) <http://www.michaelnovak.net/Module/Article/ArticleView.aspx?id=42> (June 8, 2004).

인적인 법률추론을 통해 얻은 사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는 이슬람의 법률학과로부터 시작되었다<sup>179)</sup>.

19세기 이래로 이슬람 국가들은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자신들의 법률체제를 재평가해왔다. 이슬람의 추론과 합의도출의 원칙에 따라 이슬람 법학자들은 법을 제정하여 재판을 실시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새로운 법질서를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규범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이슬람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현대적인 상사관련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샤리아의 원칙과 현대의 상법 및 계약법은 외국으로부터의 무역과 기술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더욱 강하게 결합되었으며 법률체제는 세계화와 무역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보강되고 재구성되었다. 다만, 국가별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틀아래”라는 대전제하에서 다소 다른 법률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동과 유럽의 규범이 혼합되면서 표면적으로는 서구화 되었으나 내면적으로는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새로운 법구조와 원칙이 탄생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이슬람국가들과 서방 국가들의 입헌주의와 입법에 대한 해석에 관한 차이는 그들의 법제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서방의 입헌주의는 집권세력의 권력을 제한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는 반면에 중동국가들은 헌법은 국가주권을 표현하고 이데올로기를 선언하고 권력체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다. 입법 역시 이슬람 국가에서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법제정이란 신성한 코란에 영원히 기록된 원칙에 법

179) 여기에서는 울라마(ulama)라는 종교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키야스(quiyaas), 이즈마(ijmaa) 등에 대하여 저술하였다. 샤리아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학자들이 결정을 내리고 키야스와 이즈마의 원칙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 유도하였다. 울라마는 중동의 주요 도시의 수많은 법률학교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의 산물은 중동 지역의 사상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을 결합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따라서 중동의 각국 정부는 코란에서 다루지 않는 사안에 대한 행정적·조직적 권한만을 갖는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제관계의 긴밀화와 대외무역의 확대에 따라, 서구의 민사법 및 상사법을 모방한 새로운 법이 제정되고 세속적인 법원이 조직되어 이러한 새로운 법이 규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게 되었다. 이로써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한 민상사 분쟁을 다루는 세속적인 법원외에 가족법 및 국민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민사 분쟁을 담당하는 “샤리아” 법정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동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그 동안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민상사관련 문제는 이슬람의 법원칙을 벗어나 또는 원칙에 반하여 해결하되, 이슬람 전통을 유지하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실용주의의 사례는 이슬람의 법률체제가 리바(riba) 또는 이자(대출로 받는 이자 등의 불로소득을 말함)와 일부 보험계약 형태의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가라(gharar) 문제를 해결한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sup>180)</sup>.

이슬람 국가들은 리바 또는 이자의 문제를 사적인 상업계약상의 이자소득중 용인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하고 차용금에 대해서는 기간별 이자가 아닌 기간별 사용료를 설정하는 실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sup>181)</sup>. 역설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종교적인 규범이라 할 수 있는 샤리아에 의해 법률제도에 가해진 제한이 오히려 유리한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내은행이 무이자대출을 하기 때문에 대출분야에서는 외국은행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이 불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이자문제를 피하여야 하며, 외국기업들

---

180) Umar F. Moghul, Esq. & Arshad A. Ahmed, Esq., “Contractual Forms in Islamic Finance Law and Islamic Inv. Co. of the Gulf (Bahamas) Ltd. v. Symphony Gems N.V. & Ors.: A First Impression Of Islamic Finance”, Fordham Int'l L.J., Vol.27(2003), pp. 170-171.

181) <https://www.arabfinance.com/research/ResearchView.asp?researchID=596>.

로서는 현지 구매자들이 “현금지불”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중동국가들은 대부분 근원이 다른 두가지 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sup>182)</sup>. 샤리아에서 파생된 법규는 아직도 가족법과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상속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83)</sup>. 대부분의 중동 국가에는 상거래, 대외무역, 노동, 법인 과세, 기업,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현대적인 상사관련법이 존재한다. 상업적 분쟁은 주로 샤리아 법정과 병존하는 세속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

이슬람법은 내국인에게만 적용하고 외국인에게는 별도의 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는 반대로 행정법 및 상법과 과거 도입되었던 유럽식 법령은 비내국인 사이의 분쟁, 계약, 상업, 친족관계 등의 문제를 다룬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통 민사 또는 세속적인 법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국제조약, 국제기구 또는 다른 중동 국가로부터 도입한 법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나 GCC와 같은 기관을 통하여 세계시장에 접근하면서 법적인 분쟁해결, 무역 확대와 해외 투자에 대하여 친화적인 대외정책 수립 등 급속히 실용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동 국가들은 지역 통합과 경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유사성과 경제적 균일성, 특히 석유산업에 대한 강한 의존도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을 가지고 21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182) H.S. Shaaban,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iddle East: What Law Governs?”, *Law & Pol’y Int’l Bus.* Vol.31(1999), p.157, 160.

183) Hossein Esmaili & Jeremy Gans, “Islamic Law Across Cultural Borders: The Involvement of Western Nationals in Saudi Murder Trials”, *Denv. J. Int’l L. & Pol’y*, Vol.28(2000), pp.145-147.

### Ⅲ. 페르시아만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1. 의 의

중동지역에서 역내 국가상호간의 통합, 협력, 투자 및 무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지역적 국제기구가 등장하게 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시 말해서 국제기구는 역내국가 상호간의 특별한 관계, 공통의 특성, 이슬람 교리에 기초한 유사한 체제 등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인식하여 1981년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중동 국가들에 의하여 창설된 페르시아만협력회의(이하 “GCC”라 한다)는 상업, 통관, 통신, 입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회원국간의 조정, 통합 및 상호연계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모두 석유에 기반을 둔 경제 운용을 하고 있어 석유에 자국 경제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부진, 국내노동력의 빠른 증가 등을 인식한 이 기구는 회원국들의 공통적인 우려에서 경제 개혁과 통합이라는 공동의 종합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sup>184)</sup>.

창설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GCC는 경제통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보여 왔다. 1980년대 초부터 이 기구 회원국들의 GDP 합계는 3,3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세계 원유매장량의 45%,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GCC는 대단히 큰 시장이며 미국의 다섯 번째 교역 상대이다<sup>185)</sup>.

---

184)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또는 국내정책조율 등을 통한 경제통합은 일반적으로 공통의 이해를 갖는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자유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서방국가들간의 지역통합사례로서, GCC가 중동지역의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모델로 삼고 있다.

185) GCC 국가로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 매출은 연 총액 20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미국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ABCGC, The ABCGC: Promoting America's

GCC 회원국들은 강력한 교역 대상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주요 투자허브로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보다 철저한 정책통합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한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통화동맹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계획대로 통화동맹이 추진된다면 정책조율이 촉진되고,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가격 투명성이 향상되며 무역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GCC회원국의 경제성장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186)</sup>.

현재 GCC 회원국들은 전통적인 국유산업의 민영화, 외국인직접투자 장애제거, 석유기반 경제로부터 경제구조의 다변화 등의 구조 개혁을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다. GCC회원국들은 상호간에 상당한 정도까지 경제적 관심사를 공유할 뿐 아니라 각기 서로 유사한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문화, 언어, 역사의 공통점으로 인해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더욱 쉽다. 그리하여 중동 전역에서 상품,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제거하는 대책을 일관적으로 또한 동시적으로 도입해왔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이 경제정책을 완전히 통합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

지속적인 성장과 통합을 위한 GCC의 과제에는 향후 다양한 구조조정과 개혁노력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역내 단일통화와 미국 달러화의 연동, 금융 및 경제 정보의 통합, 역내 상사법의 조율, EU와 유사한 역내중앙은행의 설립 등이 해당한다. 각 회원국은 기본적인 구조조정과 규칙을 도입하여 향후 개혁의 추진을 촉진하고자 한다. 현대적인

---

Business Interests in the GCC, <http://www.abcg.org/about/htm>.

186) IMF는 최근 GCC회원국들이 제한적변동환율제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고 시장에서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IMF는 GCC국가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적 구조개혁을 통하여 통화동맹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융제도의 틀내에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그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추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GCC의 각 회원국이 국제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경쟁하기 위하여 경제다변화, 통합, 민영화 등 광범위한 개혁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 살펴본다.

## 2. 회원국의 외국인투자법과 환경

### (1) 바레인

바레인 지도자들은 석유가 고갈되는 경우 바레인의 재정과 경제가 붕괴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동의 해외금융 및 투자 허브의 이미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경제구조다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투자자들을 위한 금융조세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 1975년 바레인은 대규모 외국은행을 끌어들여 해외뱅킹에 관한 허가를 부여하기 시작한 이래 50개 이상의 은행이 해외 뱅킹업무의 허가를 받았다<sup>187)</sup>.

그 밖에 일부 은행들은 사업의 중점을 대출사업에서 투자은행으로 전환하였다. 바레인에서는 21개 투자은행, 59개 은행의 해외대표사무소, 20개 상업은행, 28개 외환 및 통화 중개업체가 영업 중이다. 걸프 국제은행(Gulf International Bank)의 자산은 20억 달러에 달하며 바레인 최대의 해외뱅킹 은행이다. 바레인 씨티은행은 바레인에서의 영업 활동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보다 실적이 양호함을 인식하여 자본금 2천만 달러의 이슬람투자은행을 설립하였다. 바레인 은행들의 주된 장점은 중동과 서구 국가들의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시간대에 위치하고 있

187) 여기에는 홍콩, 스위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미국의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다. 바레인통화청(BMA, Bahrain Monetary Agency)은 이러한 은행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BMA의 허가를 취득하여야 바레인 국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다. 바레인 정부는 금융 부문을 BMA를 통하여 면밀하게 감독하여 이러한 유리한 위치를 유지해왔다.

다는 점이다.

바레인은 1992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외홍보 및 마케팅위원회(Overseas Promotion and Marketing Committee)와 바레인개발은행(BDB, Bahrain Development Bank)을 설립하였다. BDB는 민간 부문에 정부출자 또는 대출을 매년 4백만 바레인디나르(BD)(1,050만 달러) 이상 증액시켜왔다. BDB는 현금, 부동산 또는 공개 주식을 담보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레인 정부는 민영화와 산업기반 다변화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바레인 경제체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공업 부문이 아직 대부분 정부 통제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산업은 외국인투자에 개방이 되었고 민간 기업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바레인으로 투자되는 외국자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하여 상사관련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민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sup>188)</sup>. 상사법에서는 기업이 바레인 국내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 기업자본의 대부분을 산업개발계획에 투자하고자 하는 때, 또는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0% 외자기업을 허용한다<sup>189)</sup>.

바레인 경제의 또 다른 인센티브는 석유탐사사업이외에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없다는 점이다. 이윤, 회수자본, 배당금은 어떠한 제한도 없이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원재료와 반제품, 개발 관련 제품, 환적물품, 재수출품은 모두 세금과 관세가 면제된다.

바레인에는 또 수도부근의 항구에 미나술만자유무역지대(Mina Sulman Free Trade Zone)를 설치하고 있다. 재수출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

188) [http://www.wrf.com/db30/cgi-bin/pubs/Middle Eastern Commercial Law.pdf](http://www.wrf.com/db30/cgi-bin/pubs/Middle_Eastern_Commercial_Law.pdf).

189) 외국기업들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바, 1977년 상사법이 개정되어 100% 외국인 소유의 폐쇄형 공동출자회사(주식회사)를 허가한 이후 지금은 유한책임회사의 100% 외국인 소유도 허용하고 있다. 1997년 바레인 상무부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통과 관련된 특정한 범주의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

세가 부과하지 아니하며, 자유무역지대내의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100% 외국인소유기업 설립을 허용한다.

외국인투자자는 상무부에 기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의 경우에는 영업전에 BMA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한, 해외기업, 지점, 사무소의 100% 외국인 소유권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특정한 부류의 기업들 외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을 49%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여 바레인인과 GCC 회원국 국민만이 국내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90)</sup>.

바레인은 정치적 안정과 투명성 제고를 통해 외국인의 자국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데도 적극적이다. 2000년 2월 바레인은 새로운 국가헌장(National Charter)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압도적으로 이를 승인하였는데, 여기에는 27년 동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양원제 의회의 부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완전한 분립, 인종, 종교, 성별 간의 기회균등, 정치범 사면 등 일련의 헌법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 (2)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석유매장량이 가장 많고 중동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주식시장이 있으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이다<sup>191)</sup>. 사우디아라비아는 정정(政情)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통화 역시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중은행 부문은 다른 주요 산업화 국가에 비하면 업무가 다양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비약적으로 업

190)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미국 정부도 바레인에서의 사업 기회에 주목하게 되었고 바레인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Zoellick Joins Launching of US-Bahrain FTA Congressional Caucus (Mar. 3, 2004), available at <http://www.ustr.gov>.

191)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 Economy & Resources, <http://www.sagia.gov.sa>.

무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회원국 중 가장 경제규모가 크다. 사우디는 석유이외의 다른 부문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WTO가입을 위하여 무역 자유화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다. 정부는 통신, 전력, 항공, 우편, 철도, 항만, 수도시설 등을 잠재적인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민영화하였다.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최고경제위원회(Supreme Economic Council)가 설립되었다. 최고경제위원회는 정책과 예산 수립을 감독하고 정부 기관간의 정책수행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며, 사우디일반투자청(SAGIC, Saudi Arabian General Investment Authority)은 산업 활동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004년 새로 제정된 자본시장법과 최근의 보험법은 사우디시장으로 광범위한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2003년 6월에 통과되었으며, 호황을 맞고 있는 사우디 경제의 활력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반영되어 있다. 자본시장법은 은행 부문에서 기본적인 소매금융외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다변화를 통해 기회를 창출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이 제공하는 기회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다른 GCC 국가들이었다.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시행한 직후 바레인의 걸프국제은행(Gulf International Bank), 두바이의 에미레이트 뱅크 인터내셔널(Emirates Bank International), 쿠웨이트와 바레인의 국립은행이 새로운 은행허가를 취득하였다. 유럽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은행 부문에 진출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사우디 정부는 2003년 10월 도이치뱅크(Deutsche Bank) 지점 설립을 허가하였다. 향후에도 정부의 민영화 프로그램, 대형 투자펀드의 정부지분 매각, 그리고 정부소유은행 매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 부문에서 사용되는 연간 토지 임차료를 평방미터당 0.02달러로 정하고, 항만사용료를 50% 감액하고, 산업기계류의 수입관



세를 면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외국인투자자들은 사우디 국민들과 동일한 투자 인센티브를 받는다. 또 농업 부문과 공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외국인인 10년간의 면세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받는다. 서비스 부문의 투자는 5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장 중에 있는 산업부문에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사전에 산업전력부(Ministry of Industry and Electricity)로부터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우디에 자본을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 회사와 외국인은 외국자본투자위원회(FCIC, Foreign Capital Investment Committee)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인에게 국내 파트너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우디 사람이 회사의 25-50%를 소유하고 있다면 FCIC 허가를 얻기가 훨씬 쉽다.

또 수입업은 사우디인이나 사우디 회사에게만 허용된다. 정부 도급 사업을 수행하는 순수 외국기업은 사우디 국내에서 에이전트로 등록된 사우디 국민이나 주민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사우디에서 고용되었거나 자영업 이외의 방법으로 사우디 자원으로부터 수입이 있는 외국인 개인은 수입의 정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조세법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무소만을 설치하고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 상품의 지역 마케팅을 수행하는 기업에게는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대부분 사막지대인 국토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우디 정부는 이 부분의 투자자들에게 일련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농업 부문의 고정 자산의 80%까지, 3백만 사우디리얄 이하의 용자를 제공하고, 3백만 사우디리얄 이상의 프로젝트에서는 40%까지의 용자를 제공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부가 신규 농업

프로젝트 비용의 90%까지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다른 은행이 외국인 대출자의 담보를 전적으로 보증하는 경우 사우디 은행들로부터 용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상업부문에 대한 제약이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알코올과 돼지고기가 포함된 상품은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가죽, 책, 정기간행물, 영화, 약품 등을 수입할 때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개인과 기업은 사우디에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국내에 등록된 회사만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새로운 부동산법에서는 외국인이 기업활동을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동산을 소유하기 원하는 외국인 직원을 후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3) 쿠웨이트

1999년 UN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서는 인간개발 분야에서 쿠웨이트를 아랍의 다른 모든 국가보다 상위인 세계 35위로 평가하였다<sup>192)</sup>. UN에서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쿠웨이트 정부의 노력과 보건 및 교육 분야의 발전 정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쿠웨이트 정부는 1994년 WTO에 가입한 후 걸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으로 상표법, 특허법,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법 등 새로운 투자법들이 탄생하였다.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법(Direct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정부의 경제 개입을 줄이고 민간 부문을 육성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여러 개의 정부 사무국을 설치하여 면허와 허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 및 국내 투자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

---

192) Kuwait Information Office, Investment Climate, available at [http://www.kuwait-info.org/Business in Kuwait/investment climate.html](http://www.kuwait-info.org/Business%20in%20Kuwait/investment%20climate.html).

자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관료주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인직접투자법에 따라 외국인들은 쿠웨이트 기업의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법인세는 55%에서 25%로 인하되었다<sup>193)</sup>. 또 기업에 세금 면제 혜택을 10년간 부여하며, 자본과 원자재 수입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필요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도 허가하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또한 외국인투자자본사무국을 설치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신청을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업에서는 이미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은 내국인 대리인을 고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 쿠웨이트는 최근 일련의 저작권 및 특허법을 정비하였다. 저작권, 특허, 상표법은 2000-2001년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쿠웨이트는 WTO의 지적재산권 관련 합의에서 명시한 국제 표준을 지킬 수 있었다.

1983년 8월 14일 쿠웨이트증권거래소(KSE)가 설립되어 그 이래로 이 지역에서 가장 활동적인 거래소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KSE는 외국인의 뮤추얼펀드 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GCC 회원국 국민들은 누구나 KSE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또 2000년 9월에는 포트폴리오외국인투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들이 KSE에 상장된 공동출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하는 좋은 점으로 내국인이나 쿠웨이트 거주 외국인 개인에게 세금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쿠웨이트 내의 산업개발에 관련된 기업은 기업 자본이 대부분 쿠웨이트 자본일 경우 기업 소득세를 10년간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로열티나 송금에 대한 세금은 전혀 없다.

---

193)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3/13, Jan. 2003, <http://www.imf.org/external/pubs>.

쿠웨이트 정부는 그 동안 국가경제에서 민간부문을 성장시키고자 하였다. 민영화 작업에서 정부는 여러 민간 기업과 은행의 정부 지분을 KSE에서의 공개 경매와 전략적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 매각하였다<sup>194</sup>). 1992년 9월 쿠웨이트투자청(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은 3단계의 민영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그 목적은 주로 석유에 대한 국가 경제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1단계로부터 정부는 국내 기업 중 정부 소유 자산을 거의 29억 달러 매각하였다. 2 단계와 3단계에는 석유화학공업회사(Petro-chemical Industries Company)와 쿠웨이트항공(Kuwait Airways Corporation) 등 특정한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포함된다.

#### (4) 카타르

GCC의 창설 회원국인 카타르는 통신이나 관광 등의 부문을 성장시킴으로써 석유와 천연가스에 기반한 경제를 다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sup>195</sup>). 카타르는 또한 WTO의 회원국이며 세계적으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 중 하나다. 최근 카타르는 에너지 부문의 보완을 위하여 공업 부문을 다변화시켰다. 지난 30년간 외국인투자가 다량 유입되면서 카타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은 더욱 성장하였다. 카타르 정부는 페르시아만 중앙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수출 허브의 초대형 항만의 건설에 투자하였다. 1998년 카타르는 무역흑자를 기록했고, 인플레이션은 조심스러운 통화 및 외환 정책으로 인해 낮게 유지되었다.

카타르 정부는 인프라와 석유화학 사업 개발을 위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와 관광 및 건축 사업을 위한 소규모 투자를 모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카타르 정부는 성공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왔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국가 소유인 산업의 민영화,

---

194)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Economic Trends and Outlook: Kuwait,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195) Macroeconomic Overview of Qatar, Arab Finance, Dec. 12, 2002, <https://www.arabfinance.com/AFSource>.

저렴한 에너지 제공, 저렴한 노동력, 낮은 생활비용, 페르시아만 중앙의 위치 등으로 창출된 것이다.

민영화 작업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높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였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규모의 독립적인 전력 사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 사업에서 90%의 지분을 외국인 개발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카타르는 또한 간접비용이나 사업비용이 낮아 기업들이 경쟁적인 가격으로 국제 마케팅이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의 관세가 면제되어 있어 대규모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 카타르에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나 부가가치세나 판매세가 없다. 단 모든 외국인투자자는 카타르 국내에서 취득한 영업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대규모 투자의 경우 개인에 대하여 면세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카타르 국민과 협력하여 합작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카타르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금지(GCC회원국의 국민은 제외) 정도를 들 수 있다. 대신 외국인들은 최고 50년까지의 장기 리스를 받을 수 있다<sup>196)</sup>. 또 외국인 수출업자는 카타르 대리인을 통해서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외국인들은 카타르 국내에서 수입업을 하거나 영업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없다.

## (5) UAE

### 1) UAE의 구성과 경제현황

UAE는 최근의 고유가를 성공적으로 이용하여 인프라를 확장하고 경제 다변화를 달성하였다. 이로써 UAE의 해안에는 현대적인 고층빌

---

196)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Investment Law: Qatar,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당, 공장, 호텔, 공항, 병원, 새로운 학교 등이 들어설 수 있었다. UAE는 다른 중동 국가와 비교해서 소득 격차가 크지 아니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서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UAE는 각각 주권을 갖는 아부다비(수도), 두바이, 샤자, 아즈만, 움알콰인, 라스 알카이마, 후자이라 등 일곱 개의 에미리트(Emirate)의 연합이다. 두바이는 UAE 제조업 수출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두바이는 또한 새로운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e Center)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증권거래소와 금융기관을 위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부다비는 UAE 석유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며, UAE GDP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UAE경제에서도 물론 에너지산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UAE의 석유수익이 1998년 중동지역내 석유 위기로 30% 감소하자 민간 부문의 석유외 산업에서 GDP에 4.7%를 증대시킴으로써 손실분을 보충하였다. 지도자들이 경제의 다변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석유 산업에의 의존도는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주의 철폐, 자유무역지대 건설, 국유기업체의 매출 향상 등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가능해졌다.

UAE는 GCC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석유산업을 넘어서 경제의 민영화와 다변화를 추진한 국가이다. 여전히 UAE의 수출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GNP에서의 비중은 1/3 정도로 낮아졌다. 대부분의 GNP는 제조, 건설, 유통, 석유화학, 관광 등에서 창출되고 있다. UAE는 다변화를 위하여 제철소와 케이블 공장 등 여러 새로운 제조업체를 설립하였다. UAE 정부는 해외 기업과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항만과 공항 인프라, 해외 무역지대, 병원, 기업체 등의 개발 및 확장 작업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아부다비의 투자자들은 정유, 가스가공, 석유화학 등에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민간 투자자들은 건설, 부동산, 서비스 등에 집중하고 있다.

UAE에는 잘 발달된 상업 은행 부문이 존재하여 고객들에게 완전한 소매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 부문의 서비스 다양화 역시 UAE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요소이다. 전문가들은 2000년 3월 UAE 증권 거래소가 개설되면 더욱 많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금융 보고서에 따르면 UAE는 아랍의 은행업계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100위권 은행 중 UAE 은행이 17개나 포함되어 있다.

## 2) 자유무역지대법 등 외국인투자관련법

UAE 경제의 가장 큰 매력은 국내의 여러 자유무역지대이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곳은 두바이의 제벨 알리(Jebel Ali) 자유무역지대이다. 1992년 9월 법에 의거 설치된 제벨 알리에 자유무역지대 기업(FZEs, Free Zone Establishments)은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기업 지배구조와 영업에 대한 국내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자유무역지대기업들은 시에 영업 허가를 신청하거나 정관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단 한 명의 주주만으로도 그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한 기업을 FZE를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자유무역지대 당국자에게 신청서와 질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유무역지대는 외국인의 100% 기업소유가 허용되므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대 당국은 외국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아니하고도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밖에도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5년간의 세금 면제(15년 연장 가능), 자본 및 이익의 100% 본국 송금, 개인소득세 면제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제벨 알리 외에도 두바이 국제공항, 샤자, 아부다비의 사디야트(Saadiyat) 등의 자유무역지대에서도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기업의 설립이 간단하기 때문에 100여 개의 주요 미국 기업이 이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두바이 국제공항은 오프쇼어 뱅

킹과 제조의 중심지로 인기가 높다. 사디야트 섬의 14평방마일 규모의 자유무역지대에는 비과세 오프쇼어 금융센터, 화물전용 공항, 항만 등이 있으며 100% 외국인 기업소유와 이익의 100% 본국 송금 등이 허용된다. 또 사디야트에 증권거래소(원자재, 선물, 옵션 거래소와 함께)가 설립되면 자유무역지대가 금융 및 원자재 허브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UAE에는 수입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본적인 식품과 건축 자재에는 모든 관세가 면제된다. 무기, 탄환, 스포츠용 소총을 제외하고는 수입 허가도 반드시 요구되지 아니한다. 수출면허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서류는 원하는 통화 단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외환 통제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UAE로 수출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은 물량이 많지 않을 때는 UAE 수입자와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항구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자신을 대리할 내국인 영업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세법은 UAE에서 영업 중인 모든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 실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석유생산기업뿐이다. 석유와 천연가스 업체와 외국 은행 외에는 정부가 세금을 물리지 아니한다. 또 자본수익, 배당금, 매출, 부동산 이전 등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UAE 통화는 달러화에 연동되어 있고, 회수자본과 이윤의 본국 송금에 전혀 제한이 없다. 1991년 UAE 정부는 오프쇼어 은행이 통화 제약 없이 비과세 금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공문을 승인하였다. 이 법의 우선적인 목적은 UAE내에 제조업 시설을 건설하는 다국적기업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은행의 수에도 제한이 없다.

UAE에는 연방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의 개발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각각의 에미리트가 나름대로의 경제발전 목표가 있으며 산업 개발 정책도 에미리트 단위로 수립된다. 자유무역지대에서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기업은 UAE 연방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국 및 국내 기업의 영업에 대해서는 연방회사법(Federal Commercial Companies Law)에서 정한다.

(6) 오 만

1) 1994년 외국인투자법

오만은 전통적으로 자유주의적인 중동 국가로 오랫동안 개혁과 외국인투자에 개방적이었다. 현재 오만 정부는 일정 부문에서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 있다<sup>197)</sup>. 오만은 2000년 11월 WTO에 가입했고 그 뒤로 시장자유화와 다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오만은 또한 발전중인 호텔과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경제를 자유화하고, 민영화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여 점점 늘어나는 국내 인구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만내의 외국인투자는 1994년의 외국투자법(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의 규율을 받는다. 이 법에서는 오만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은 오만 상업산업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sup>198)</sup>. 최근 오만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외국인의 소유권 부분이 개정되었다. 이제 정부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390,000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되는 경우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7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새로운 법에서는 13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 투자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100% 외국인 소유도 인정하고 있다.

1993년 오만상업산업부는 새로운 외국인투자 규정을 마련하여 외국인이 주식투자의 65%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이 정도

---

197) CIA World Factbook - Oman, <http://www.cia.gov/cia/publications/factbook/print/mu.html>.

198) The Omani Centre for Investment Promotion and Export Development, Foreign Investment Law, <http://www.ociped.com/investments/law.asp?ulink=I>.

의 투자는 특정 산업에서만 허용이 되는 바, 농업, 건축하도급, 복합 상업 서비스, 관광, 무역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영업대리인 활동에서 외국인지분은 여전히 49%로 제한되었다. 또 외국인투자자들은 관련 활동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면세 혜택은 특정한 산업에서 5년(5년 연장 가능) 주어진다. 해당 산업의 기업들은 수입 장비와 원자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오만은 개인의 소득, 배당금, 이자, 부동산, 선물 등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5년간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63,000달러의 자본을 투자하여야 하고, 각 산업에서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부와의 계약으로 일하는 컨설팅 회사와 전문 직종의 개인들은 지방 소득세가 면제된다.

오만에서는 수입 허가나 면허가 불필요하다. 단 일부 품목은 배타적 면허를 받은 대리인에 의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무기와 탄약 등이 포함된다. 수입업자가 국내 유통업자나 에이전트일 필요는 없다. 최근 술탄 율령에 따라 정부는 대리인이나 수수료 없이 상품을 수입하고 유통시킬 수 있도록 허가한다.

## 2) 투자지로서의 평가

오만 투자의 다른 장점으로 다양한 국내 및 외국 은행, 2%의 낮은 관세, 자본과 수입의 자유로운 본국 송금, 미국과의 우호적인 상업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오만은 1976년 미국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과 협정을 맺고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는데, 이 협정에서는 징발, 국유화, 전쟁, 혁명으로부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다.

오만 정부는 오만개발은행을 설립하여 광업과 석유 산업의 민간 기업의 요구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은행은 정부, 오만 국민, 외국 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잠재적

인 투자자들에게 금융 자문을 제공한다. 또 농업, 어업, 석유, 광업 분야의 기업에 자금을 융자한다. 정부는 새로운 제조 및 광업 회사에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기 위하여 3억 4,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석유 부문이 오만의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으로, 정부는 석유기반경제를 다변화하고 다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는 석유 수익의 일부를 국가준비기금(State General Reserve Fund)으로 적립하기 시작하였다. 또 정부는 천연가스산업 발전을 위하여 9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관 건설사업을 계획 중이다. 구리 등 기타 천연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억 달러의 융자를 받기도 했는데, 이는 오만 북동부 매장량 1,100만 톤의 구리 광산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정부는 또한 막대한 잠재력을 지닌 아라비아해에서의 어업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

최근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있지만, 오만은 경제의 거의 모든 핵심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경제의 다변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유럽연합과 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고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만은 비교적 작은 나라이지만 서방으로의 석유 공급량의 1/3이 통과하는 호르무즈(Hormuz) 해협이 선적 경로 내의 전략적 위치로 인하여 중동의 미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 IV. GCC 이외 국가: 요르단, 이집트, 리비아 및 이란

##### 1. 요르단

###### (1) 국제무역과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

중동지역에서 이라크 다음으로 분쟁의 부담이 큰 국가는 요르단이다. 걸프전과 그에 따른 UN의 이라크 경제제재로 인하여 요르단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경제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

에서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경제와 천연자원 부문에 또 다른 큰 피해를 입혔다.

현재 인근 무역상대국들의 상황은 유동적이고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의 지역 분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요르단은 거시경제 안정화, 무역 자유화, 민영화 등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sup>199)</sup>. 경제 개혁은 또한 요르단의 젊은 인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요르단의 청년인구는 5백만에 이르고, 그 중 70%는 30세 미만이다<sup>200)</sup>. 청년 인구를 경제에 흡수하기 위하여 요르단 정부는 교육, 문맹퇴치, 보건 등의 인적자본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sup>201)</sup>. 현재 실업률은 15%에 달하는 반면 노동력은 매년 4%씩 증가하고 있어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문제이다. 요르단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개혁을 시작하였다.

압둘라 왕 정권이 들어선 뒤 요르단은 WTO 가입과 미국, 유럽과의 FTA를 추진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무역을 장려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요르단은 여러 가지 민영화 프로그램을 재개하여 통신과 교통 부문 및 공업과 전력 사업에 외국인투자를 증대하였다<sup>202)</sup>.

미-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의 무역 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였다. 이 협정에서는 2010년 1월까지 10년 동안 수입관세를 점진적으로 없애고 자유 무역 지대를 확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sup>203)</sup>.

---

199) The World Bank Group, Country Brief: Jordan (Sept. 2004), [http://web/worldbank.org](http://web.worldbank.org).

200) *Ibid.*

201)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Human Resources (2004), <http://www.kinghussein.gov.jo/resources.html>.

202)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Investment Climate: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203)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Economic Trends and Outlook: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현재 요르단 정부는 모든 주요 제품 부문에서 관세의 83%를 철폐한 상태이며 2005년 9월에는 95%까지 철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요르단 정부는 2014년 완결되는 EU와의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요르단의 민영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민간 기업들이 요르단 통신공사(Jordan Telecommunication Company)와 아랍 가성알칼리 공장(Arab Potash Company)의 다수 지분을 확보하였다. 또 정부는 왕립요르단항공(Royal Jordanian Airlines)의 영업 부문의 지분 49%를 인수하기 위한 외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 (2) 개정 외국인투자법

무엇보다도 요르단 정부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의 지위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자유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르단은 제조, 관광, 비무역 서비스 부문에서 외국인의 공개기업, 주식회사, 합자회사의 지분 100% 소유를 인정하는 중동 국가 중 하나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요르단의 3대 개발 영역에서 세금과 관세를 면제 받는 등의 투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각 영역에서는 발전 정도에 따라 서로 다른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C영역에는 모든 농업, 해상 운송, 철도 투자 등이 포함된다<sup>204)</sup>. A영역에는 호텔, 관광, 레저, 레크리에이션 시설, 컨벤션 센터 등이 포함된다<sup>205)</sup>. 투자증진위원회(Investment Promotion Committee)가 허가한 사업에서는 소득세와 사회서비스 세금 10년 면제 등의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sup>206)</sup>. 이러한 혜택에는 투자 초기 5년간, 그리고 A영역의 산업분야에 포함되는 기업에 대한 100% 세금 면제도 포함되며, 그 후 2년간은 40%의 세금이 면제된다. B영역의 사업은 8년간

---

204)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Performance Requirements/Incentives: Jordan,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f41c595bf093a662852566f2004cfcf6/83ca390b3e7f7fb785256f150064cb3e!OpenDocument>.

205) *Ibid.*

206) *Ibid.*

세금 완전 면제이며 C영역은 12년간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특정 부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이외에도 요르단 정부는 아카바(Aquaba)항 대부분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였다. 요르단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자유무역지대에 보관했다가 인근 시장으로 배송이 가능하다. 자유무역지대 활동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요르단에서 신규 기업이어야 하고, 현대적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요르단 국내의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기술노동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아카바는 지역의 모든 현대적 항만과 연계된 혜택을 제공하면서 인근 항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체 문제는 해결하였다.

또한 요르단의 현대적 고속도로 체계로 인하여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지역 국가, 시리아 등을 향한 상품 수입이 증진되고 있다. 현재 아카바 항은 새로운 리조트와 호텔이 들어서면서 관광 명소로 개발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불안정으로 관광이 위축되기도 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서방 관광객 수가 2005년 1.4분기 60% 증가하였다.

요르단 내에서의 상업 거래는 상법과 민법의 규율을 받는다<sup>207)</sup>. 요르단 헌법에서는 법원이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거래 관련 문제는 세속적인 법정에서 다루어진다<sup>208)</sup>. 1995년 투자증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은 분쟁해결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르단은 WTO의 분쟁조정방식을 따르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이자 외국인의 중재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1958년의 뉴욕 협약을 준수한다<sup>209)</sup>. 정부에서는 요르단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 기업에 저금리

---

207) Jordan, Countrywatch.com, available at [http://aol.countrywatch.com/aol\\_print.asp?v=COUNTRY=87&SECTION=COVER&TOPIC=INFC&TYPE=TEXT](http://aol.countrywatch.com/aol_print.asp?v=COUNTRY=87&SECTION=COVER&TOPIC=INFC&TYPE=TEXT).

208) *Ibid.*

209)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Dispute Settlement: Jordan, <http://web>.

용자와 무료의 투자 안내를 제공한다. 압둘라 왕은 외국인투자 증진을 위하여 정부 기관과 관련된 “관료주의”를 철폐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권을 이어받은 뒤 압둘라 왕은 국가 행정 개혁과 정부 투명성 및 신뢰성과 시민의 자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오늘날 새로운 교역 상대들의 지원과 압둘라 왕의 지도하에 요르단은 경제 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요르단은 중동 분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 기타 유럽 국가에서 요르단의 국가부채 4억 2천만 달러를 탕감하였다. 이라크에서의 폭력과 불안정으로 인한 지역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역정보센터는 요르단의 경제는 회복력이 강하며 2003년 3.2%라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2. 이집트

### (1) 쌍무적인 무역협정 및 투자협정의 체결

미국 무역정보센터는 이라크 전쟁으로 이집트가 입게 될 손실이 10억 달러에 가깝다고 추정하였다<sup>210)</sup>. 지난 수년간의 경제 상황에서도 9/11 테러와 이라크 분쟁에 이은 어려운 상황을 읽을 수 있다. IMF에서는 현재 이집트가 이러한 사건과 다른 지역 분쟁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하였다<sup>211)</sup>.

IMF 임원들은 이집트 정부가 민간 부문의 성장 촉진을 위한 구조 개혁을 통해 실업률을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였다<sup>212)</sup>. 실업률이 거의

---

ita.doc.gov/ticwebsite/meweb.nsf/f41c595bf093a662852566f2004cfcf6/3a9fc7251e50c6a585256f15005a8032!OpenDocument.

210) Stat - USA Egypt Country Commercial Guide FY 2004: Economic Trends and Outlook,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211) Egypt: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Staff Repor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4/69,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69.htm>.

212) *Ibid.*

10%에 달하는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일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부는 국내 투자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왔고 효율성 향상과 국제 무역 체제로의 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해왔다<sup>213)</sup>.

2001년 6월 이집트는 EU와 2004년 1월 1일 발효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서는 이집트 수출업자들이 유럽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 기업들에게 관세와 기타 장벽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거의 6억 1,500만 유로의 사업지원금과 11억 유로의 대출을 제공하여 이집트 산업을 현대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U는 이집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며, 이집트 수출입의 35-40%를 차지하고 있다. EU와의 협력협정의 발효와 더불어 이집트와 EU 사이의 무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일 국가로는 이집트의 최대무역상대국이다. 이집트 수입의 20%, 수출의 11%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2001년 말 미국의 이집트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30억 6,8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1992년부터 미국과 이집트는 쌍무적투자협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양국의 투자자들에게 차별대우를 철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몰수와 보상에 대한 국제법 표준, 국제 중재 등 투자 분쟁 해결을 위한 공인된 절차 등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1999년 이집트와 미국은 미국의 이집트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 (2)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관련입법 및 성과

관광은 이집트의 최대 외화 수입원이나, 동시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라크 분쟁 등 지역적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

213) *Ibid.*



기도 하다. 이집트 경제연구센터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산업은 이집트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 수입은 이라크전 개전과 함께 2003년 3월 22% 감소하였다. 다행히도 작년 3, 4월에는 관광업의 회복세가 뚜렷했으며 중동지역내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추정에 따르면 입국 관광객이 2005년까지 매년 950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 지역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집트정부도 중동지역내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집트 의회에서는 2003년 핵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2월에는 통신규제권한법, 5월에는 통합은행법을 통과시켰다. 이집트의 통신규제권한법은 국가통신감독청(National Telecom Regulatory Authority)의 권한을 확대하여 사업면허와 허가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이집트의 의무와도 부합하며, 텔레콤이집트(Telecom Egypt)의 유선 서비스에 대한 독점을 종료시킨다.

관광업과는 달리 에너지산업은 지역 불안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에너지 분야는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다. 가스 생산량과 매장량은 지난 5년간 약 75% 증가하였다. 가스 매장량은 지난 10년간 거의 3배로 증가했으며 이집트는 화력발전 연료의 81%를 가스로 전환하여 잉여가스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천연가스전의 개발속도가 국내수요를 앞지르고 있으며, 정부는 가스의 수출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석유 탐사에서도 투자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2003년 5월 BP는 수에즈 만에서 대규모 석유 매장지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는데, 약 8천만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일 40,000-50,000 배럴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국내기업업간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집트는 분쟁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대안적인 수단을 지원한다. 이집트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1971년에 가입했으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의 회원국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해당 국가와 외국인투자자 사이의 투자 분쟁의 중재를 위한 기본 틀이 제시된다. 정부에서는 또한 1997년 제 8호 법(Law 8)을 제정했는데, 여기서는 쌍무협정, ICSID, 또는 국제 상업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3. 리비아

1986년 미국은 리비아에 경제제재를 선포했고 이후 최근까지 미국 시민의 리비아에 대한 무역과 여행을 금지해왔다.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Iran and Libya Sanctions Act)의 對리비아 정책은 리비아가 UN 결의안731, 748, 883을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들에서는 의심되는 국제테러 활동에 대한 지원과 대량살상 무기 취득 및 개발을 위한 의심되는 노력의 종결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의안들을 통하여 국제 사회는 트리폴리와의 외교적 관계를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리비아는 1988년 팬암항공기의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 공중폭파에서 자국민들의 행동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리비아는 또한 폭파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UN과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테러를 비난하고, 2004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에도 가입하였다. 미국은 리비아의 외교적 노력에 대하여 최초의 미 연방 의회 대표를 1969년 이래 처음으로 리비아에 파견하고 1980년 미 대사관을 폐쇄한 후 처음으로 외교관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04년 9월 20일 부시 대통령은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끝내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sup>214</sup>). 또한 1985년 11월 15일의 대통령령 12,538호를 취소하여 리비아에서 정유된 석유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치를 철폐하였다. 새 대통령령에서는 또한 리비아제재법에 따라 동결하였던 자산과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한 모든 봉쇄조치를 철폐하였다. 리비아는 아직 미국의 테러지원국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완전한 외교 관계 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군사적 및 안보 관련 자재는 앞으로도 리비아 수출이 금지될 것이다. 그럼에도 리비아 경제는 항공 부문에 대한 경제 제재 철폐, 미국으로의 직항로 복구, 그리고 미국의 리비아투자 증대 등으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 4. 이 란

##### (1)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 적용

미국의 1996년 이란·리비아제재법(ILSA, Iran and Libya Sanctions Act)의 이란 관련규정은 이란과 리비아가 석유 자원을 개발하는 능력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하는 특정의 투자를 하는 개인과 리비아의 무기와 항공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리비아가 석유자원을 개발하는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기타 목적의 특정 품목을 수출하는 개인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란·리비아제재법은 이 법에 의하여 리비아와 이란에 대하여 가해진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에 추가하여 미국의 동맹국중 이란과 교역 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이란의 석유 부문에 4천만 달러 이상을 12개월 내에 투자하는 국가들의 다자간 그리고 “강화된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기본적으로 미국 국민, 동맹국, 외국 기업들이 리비

---

214) Exec. Order No. 13,357, 69 Fed. Reg. 56, 665 (Sept. 20, 2004),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4/09/20040920-5.htm>.

아와 이란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부시 대통령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리비아에 대한 제재는 해제되었지만, 이란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재 조치가 유효하다.

이란·리비아제재법은 이란이 석유 자원에 대한 탐사, 추출, 정유 및 운송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정치·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란에서는 1979년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이슬람 성직자들의 정치적 통제 하에서 이슬람 공화국을 세웠다. 이슬람 혁명 후 이란 정부는 자국을 경제적·정치적으로 고립시켰다. 대부분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와 정부지원을 받는 석유사업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현재 16%에 육박)을 증가시키고 내부적인 정치적 파벌을 강화시켰다.

혁명 후 새로운 정부는 은행과 석유, 운송, 유틸리티, 광업 부문을 국유화하였다<sup>215)</sup>. 현재 이란의 경제는 국영기업, 소규모 농업, 개인 서비스 소기업 등이 이끌고 있다<sup>216)</sup>. 지난 수년동안 정부 내 개혁가들은 비틀거리는 경제에서 민영화와 자유화를 추진하고자 노력해왔다. 개혁가인 모하메드 카타미 대통령은 시장 개혁 계획을 따르고 석유 기반 경제를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217)</sup>. 미국도 이와 같은 개혁을 환영했고, 클린턴 정부는 2000년 3월 수입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이에 화답하였다<sup>218)</sup>. 메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여 미국인이 이란 카펫이나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sup>219)</sup>.

---

215) U.S. Dept of State, Bureau of Near Eastern Affairs, Iran Profile August 2004, <http://www.state.gov/r/pa/ei/bgn/5314.htm>.

216) *Ibid.*

217) *Ibid.*

218) Madeleine K. Albright, Remarks Before the American-Iranian Council (Mar. 17, 2000), <http://secretary.state.gov/www/statements/2000/000317.html>.

219) *Ibid.*

또한 미국 재무부는 클린턴 대통령의 미국수입제한 완화에 맞추어 식품, 의약품, 의료장비의 이란에 대한 상업적 판매를 허용하였다<sup>220)</sup>. 이러한 수출 정책 하에서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사례별로 사업 면허를 발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인 개인, 비정부법인, OFAC이 인정한 정부 조달 기관 등 허가된 매입자에 대한 상기의 품목의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또 정부는 허가를 받은 미국인들이 적하농산물을 증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sup>221)</sup>. 해당 규정에서는 선불, 당좌 계정을 이용한 매각, 또는 제3국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제한한다<sup>222)</sup>.

그러나 정책이 변경되었지만,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제한은 완화되지 않았다. 미국정부는 대이란 수출제한을 지속하는 한편 이란·리비아 제재법은 완전히 적용되지 않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때때로 이란·리비아제재법의 “적용배제”를 허용하였다<sup>223)</sup>. EU와 WTO내 미국동맹국들의 압박으로 이란·리비아제재법에서 언급한 분야외에는 제재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다<sup>224)</sup>.

## (2) 민영화 추진과 경제자유화

이란은 현재 통신과 은행 부문에서 대규모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산업의 민간 기업들이 테헤란증권거래소(TSE)에 점차적으로 상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IMF는 이러한 조치로 외국인투자를 증대시켰으며 경제개혁으로 지난 수년 동안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이란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사실

---

220) United States Trade Information Center, Sanctions Lifted on Food, Medicine and Medical Equipment to Iran, available at <http://web.ita.doc.gov/ticwebsite/meweb.nsf>.

221) *Ibid.*

222) *Ibid.*

223) Madeleine K. Albright, Statement on ILSA: Decision in the South Pars Case, <http://www.aghayan.com/ilsw051898.htm>.

224) Wynn H. Segall, Running on Empty: U.S.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in 1997, *Int'l Lawyer*, Vol.32(1998), p. 271.

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성장의 큰 부분은 2001년 석유안정화기금(Oil Stabilization Fund)의 설치, 석유외산업의 다변화와 성장, 국가 지원 체계의 개혁, 은행 및 보험업의 민영화 등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슬람혁명 이후 은행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못하고 있지만, TSE는 2002년 은행주식 상장을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금융 전문가들에 따르면 은행 민영화의 목적은 금융 부문의 투명성과 경쟁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미국의 제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은 현재 외국기업에 시장을 개방하고 증가하고 있는 인구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 자유화와 다변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현재 이란은 GCC와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협정조인을 준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부는 이란의 자국과 인근 국가 사이의 자유무역지대 건설 계획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란이 GCC내에서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3) 1995년 외국인투자유치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이란의 1995년 외국인투자유치 및 보호를 위한 법률은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입법부가 제정한 최초의 구체적인 외국인투자법이다<sup>225)</sup>. 이 법은 외국인투자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1993년 이란 의회는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15년 동안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였다<sup>226)</sup>. 이 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들의 다양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sup>227)</sup>. 이 법에 의하여 이란 정부는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sup>228)</sup>.

---

225) Status of Foreign Investments in Iran, at <http://iranlaw.online.fr/laws2.html#f%20investments>.

226) Free Trade Zones, Message from the Iranian Secretariat of the High Council of Free Trade-Industrial Zones, <http://www.salamiran.org/Economy/FreeZones/FTZ.html>.

227) *Ibid.*

228) *Ibid.*

이란 경제는 제1차5개년 계획에서 도입된 개혁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경제장장을 달성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보다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 발전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가 통제하고 있던 산업의 민영화 및 민간 기업의 TSE 상장을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sup>229)</sup>. 이러한 과감한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가장 전략적으로 발달된 항만과 수로를 보유하고도 국제시장에 진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발전계획의 제3장은 민영화와 국영기업 지분의 양도를 제1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개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지정된 국영 기업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운영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업의 지분과 주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영화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독점시장이 조성되지 아니하는 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제3차 2000-2004년 사회경제문화발전계획의 제10장에서는 금융시장 재편을 위하여 필수적인 개혁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계획하에서 이란중앙은행은 국제은행업계에서 경쟁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또한 증권 시장으로 성립된 자본 시장을 위한 전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자상거래제도를 도입하고 국내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4) 1993년 자유무역지대법

의회가 1993년 자유무역지대법에 따라 설치한 세 개의 자유무역-산업지대에서는 헌법의 구속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무역법이 적용된

---

229) Iran's Third Socio-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Plan of 2000-2004, [http://www.salamiran.org/Economy/third plan.html](http://www.salamiran.org/Economy/third_plan.html).

다. 이 자유무역지대는 자체 법에 따라 관리되고 이란 관세청의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키시 섬, 케심 섬, 차바하르 항에 설치된 자유무역지대에서는 15년간의 세금 면제, 관세 면제, 외국인투자 및 자본과 이익의 전액 본국 송금 허용, 오프쇼어 बैं킹, 외국인 입국 비자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투자자들에게 부여된다.

최근 IMF는 이란경제가 제3차 5개년개발계획(2000- 2004) 도입 이후 시행된 주요 구조조정으로 큰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sup>230)</sup>. IMF에서는 이란경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민간 부문의 활동이 증가한 것이 이란의 경제성장의 주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sup>231)</sup>. 3차 5개년개발계획 기간중 첫 4년 동안 실질 GDP 성장은 평균 5.6%였고, 외부 부채는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실업률도 감소하였다<sup>232)</sup>. IMF는 이란의 민간부문 및 국제무역 발전목표를 지지하였다. 또한 IMF는 제4차 5개년 개발계획의 핵심 개혁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지지를 표명하였다.

## V. 중동의 외국인투자환경 평가

### 1.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한 기업 이해 증진

중동 국가들은 무역자유화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경제적·법적 개혁을 추진하면서 중동 전체가 사회적·정치적 안정의 기반위에 국제경제활동의 성과를 향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의 주요 교역상대인 EU와 미국은 이와 같이 증대되고 있는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장기적인 입지를 굳히고자 하고 있다. 수 세기 전부터 대륙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무역 실크로드를 건설했던 오랜 역

230) IMF Concludes 2004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Country Report No. 04/109, <http://www.imf.org/external/np/sec/pn/2004/pn04109.htm>.

231) *Ibid.*

232) *Ibid.*



사를 가진 중동 국가들에게 국제시장으로의 편입은 제2의 본성과도 같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는 중동 지역의 오늘날의 성장과 경제회복의 기틀이 되었다. 중동 국가들은 무역과 상업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를 “올라마”들과 같이 실용주의적으로 또한 대중의 동의를 구해 처리했으며, 수백년 전부터 샤리아의 제약을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였다. 오늘날 이러한 문화적 실용주의와 유연성이 중동 국가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를 개혁하고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는 데 근본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1997년 IMF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수많은 중동 국가에서 경제적 태도와 정책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의 다른 국가로부터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대신 세계 경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의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sup>233)</sup>.

중동 지역과 해외에서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중동 국가들은 이라크 분쟁에 주의 깊게 대응하여 경제적 불안을 방지하고자 하였다<sup>234)</sup>. 그러나 역내의 최대 수출국들은 거의 30% 가까이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예컨대, 사우디아라비아는 120억 달러의 흑자와 균형예산을 얻을 수 있었다. All-Arab 지수는 12개 아랍 국가의 79개 주식 종목을 반영하는데, 2003년 50% 성장하였다. IMF에서는 또한 향후에도 중동지역의 경제성장은 대부분 국가에서 5% 내외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라크침공 이후 미국은 중동 지역의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동 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증대시켰다. 무역·투자기본협정(TIFAs,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s), 양자

---

233) *Ibid.*

234) <http://www.imf.org/external/np/tr/2003/tr030918a.html>.

간투자협정(BI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미국은 중동에서의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외교 관계와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sup>235)</sup>. 중동 자유무역 계획을 도입한 후 부시 행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sup>236)</sup>, 이집트<sup>237)</sup>, 쿠웨이트<sup>238)</sup>, 바레인<sup>239)</sup>, UAE<sup>240)</sup>, 카타르<sup>241)</sup>, 오만<sup>242)</sup>과 무역·투자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역·투자기본협정은 투자자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투자기본협정을 통해 협상 참여국의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증진하고 해당 시장에 보다 많은 미국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

현재 미국은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과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바레인과 모로코와는 협상을 시작한 상태이다. 최근 2004년 말에 종료된 미국 의회의 미-바레인 FTA 협상에서도 미국의 농민, 근로자, 기업들을 위한 수출기회 증대를 목표로 정한 바 있다. 미국과의

---

235)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Middle East Free Trade Initiative, <http://www.ustr.gov/new/fta/Morocco/2004-03-02-middleeast-factsheet.pdf>

236) *Ibid.*

237) *Ibid.*

238)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Kuwait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Feb. 6,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2/04-06.pdf>.

239)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Zoellick Joins Launching of U.S.-Bahrain FTA Congressional Caucus (Mar. 3,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16.pdf>.

240)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United Arab Emirates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Mar. 15,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18.pdf>.

241)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Qatar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Mar. 19, 2004), <http://www.ustr.gov/releases/2004/03/04-23.pdf>.

242) Press Releas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nited States and Oman Sign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 (July 7, 2004), <http://www.ustr.gov/Document Library/Press Release/2004>.

무역협정 협상과 함께 바레인은 WTO의 IT 협정에 가입했으며 컴퓨터와 통신 분야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인터넷 협정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통신 시장을 자유화하고 상업 및 법률 체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으로 하여금 WTO에 가입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중동자유무역지대가 2013년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레바논 등의 WTO가입을 적극 지원하고 현재 중동의 WTO 회원국들이 투자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243)</sup>.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중동의 무역과 투자 증진을 통해 성장, 일자리 창출, 석유의존도가 낮은 역동적인 경제체제 확립 등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중동 국가들은 전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무역과 투자의 통합이라는 방식으로 미국 등 서방세계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최근 자유무역 계획 및 EU와 미국과의 협정 체결을 통하여 가속화되었으며, 결국 외교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가스와 석유 산업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에 취약해지기 쉬운 지역적 안정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무역 및 투자협정은 반드시 중동의 풍부한 역사, 문화, 다양한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철저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A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미국과 중동 기업 간의 교역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sup>244)</sup>. ABCGC는

243) <http://www.ustr.gov/new/index2003.shtml>.

244)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the Gulf Countries, Promoting America's Business Interests in the GCC, <http://www.abcg.org/about.html>.

1989년 창설되어 걸프 지역에서 미국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sup>245)</sup>, 자발적으로 미국과 GCC 국가들의 경제적인 관계를 무역, 투자, 문화교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sup>246)</sup>.

중동 국가와의 기업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역동적인 무역 기회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과 아시아로부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나라의 기업들도 이제 중동의 문화적 법적 배경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동에서의 무역과 투자 증진은 중동 지역의 안정을 찾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며 궁극적으로는 중동의 무역·투자상대국의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245) *Ibid.*

246) BCGC는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휴단체로 걸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아홉 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되어 있다. ABCGC는 걸프 지역에서 영업 중인 750여개 미국 기업을 대표한다. *Ibid.*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분석대상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에 대한 평가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법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법률 및 규제체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투자법이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무차별적인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셋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모든 법률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몇몇 국가들의 외국인투자법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별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경우에는 3가지 외국인투자형태에 따른 개개의 외국인투자기업법 및 수많은 특정 경제부문만을 위한 외국인투자관련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외에 지역별로도 외자유치를 위한 별도의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대단히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률,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을 정리하여 합자경영기업법, 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기업법이라는 3가지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한 외상투자기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비준제도(면허주의)를 폐지하고 완전한 내국민대우를 외국투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비준제도는 당장은 폐지하는 대신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될 법률을 현행 회사법의 특별한 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

법에서 그러한 특별한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내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 준비과정에서 그리고 가입후 개방약속에 따라 WTO 규범에 부합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의 개선과 개방확대 등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그 동안, 합작기업들은 합작사업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받아 왔으며 내수시장에 진출하기 위하여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 시장접근 제한, 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함되었다.

WTO가입이후에는 중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내국민 대우가 부여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를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부품사용의무, 수출의무와 외환수지균형의무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중국기업과 외자기업간의 동등한 대우 그리고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대한 최혜국대우부여가 이루어짐으로써 따라서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

필리핀의 최근의 외국인투자관련법률들은 비교적 풍부하고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관련 정부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이다. 필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은 비교적 장기에 걸쳐 세부적인 내부적 논의를 거쳐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개념들을 비교적 적절하게 구체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분산되어 있는 개개의 외국인투자관련법들을 조정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인센티브체제를 엄격하게 구축하고 현재 필리핀에서 외국인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여러 정부 부처들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외국인투자절차와 투자기업의 활동을 단순한 규율의 틀내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멕시코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개선은 대단히 완만히 이루어져왔다. NAFTA의 회원국으로서 미국과 캐나다와의 관계에서는 투자요건 및 시장개방정도가 현저히 개선되어 있으나, NAFTA 비회원국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애요소들이 잔존해 있다. 1989년 외국인투자법시행령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적 장애요소들이 완화되었고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신청을 자의적으로 기각할 수 있는 재량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외국인투자자들이 멕시코에 투자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들이 단순화되고 명확해졌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여전히 관련 법령의 여러 중요한 규정들을 해석하여 개개의 외국인투자안건에 대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각종 산업들을 재분류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의 지분 참여의 정도를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재량권과 결부되어 예측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쿠바는 현재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한을 통해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으

며,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는 보장되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반드시 국영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쿠바 측 회사를 통해 상당한, 때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의 규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그 밖에도,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한 쿠바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쿠바 국내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되고 내국민 및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법 및 기타 관련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재산소유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 쿠바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 번째 근본 축은 관료주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중앙기구를 발족시켜, 여기에 투자자가 등록을 하고 이 기구에서 투자유치를 완료하기까지의 모든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시간과 투자비용을 절약하고 투자자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현재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NVEC이 투자자의 모든 규제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기구로 발족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 제 2 절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관련법에 주는 시사점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외국인직접투자관련 법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여 그 동안의 규제, 관리중심의 투자제도를 촉진, 지원중심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지정제도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직접투자<sup>247)</sup>는 국내에서 기업을 직접 경영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장기간 투자하는 것으로 외국인 1인이 10%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도 실질적인 의결권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 또는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OECD자본이동자유화규약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기업, 자회사, 기업의 신설 및 증설, 기존 기업의 완전 인수, 신설기업 또는 기존 기업에의 지분참여의 수단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를 말

---

247)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주식 인수와 함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현금, 자본채 또는 공업소유권 등의 자적 가치물로 납입하고 그에 따라 국내법상 기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1)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의 10%이상을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10% 미만인 경우에도 첫째, 임원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둘째,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받거나 구매하는 계약, 셋째,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통하여 경영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 관계에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도 외국인직접투자자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항 제4호).

한다. 또는 5년 이상의 차관 도입에 의하여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4년부터 외국인투자인가 지침을 열거방식에서 외국인투자를 금지제한·업종만을 열거하여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은 원칙적으로 투자가 허용되는 금지·제한업종열거방식으로 전환하여 외국인투자제한업종을 대폭 축소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상기의 분석대상국들의 외국인투자법들도 외국인투자신고 등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현행 외국인 민원처리기간은 외국인투자신고와 기술도입계약신고는 즉시 처리하고 공장설립 등의 심사는 최장 30일, 사업계획의 승인은 최장 20일, 건축허가는 최장 30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5일로 되어 있다. 현행의 외국인투자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경우 개개의 절차들이 진행되면서 크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 건별 처리소요기간을 가장 많이 소요되는 특정한 절차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대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산업용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더라도 산업부지를 공급받아 공장을 건설하여 생산·판매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막대하다. 이는 기업활동에서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산원가에 반영되어 가격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의 업종별, 지역경제 기여도에 따라 외국인전용단지의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가능하고 희망하는 경우 전용단지를 분양보다는 임대로 하여 외국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초기의 투자자금을 경감시키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의 단지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되, 입지여건이 좋지 아니하여 인력확보,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 서비스 시설의 활용이 어렵고 물류의 원활한

유통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지의 경우에는 과감히 폐지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지방에 소재하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상의 조세감면혜택이나 파격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용지 분양 및 임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저조한 바, 이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한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임대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지방산업단지의 임대료 감면기준을 완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가를 인하하거나,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투자유치기금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가격이 비싸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하여 입지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아직 이에 관한 개선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유로운 입지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한하여 이 제도가 적용되며 이 제도는 외국인투자금액과 투자비용, 고용효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지역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확대는 물론 제조업의 범위도 구체화하여야 한다. 예컨대, 상기의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투자자라 할지라도 공해유발 상품, 내수위주 상품, 짧은 제품수명주기 상품 등의 투자는 투자후 짧은 기간내에 철수할 우려가 있는 등 투자유치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클 수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기업전용공단내의 고도기술사업, 산업지원서비스 및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자유무역지역 등과 같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률적인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에 일반 제조업의 투자는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입주 업종에서 제외되고 또는 별도의 조세감면지원제도도 없다. 따라서 첨단기술이 아닌 일반제조업이라도 고용효과와 수출비중이 높은 경우 외국인기업전용공단지 투자대상에 포함하고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외국인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조세감면혜택은 국내기업들이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러한 혜택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초래한다는 비난도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가 많은 외국으로의 공장이전을 통한 투자 등 불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는 외국인투자대상업종이라고 하여 무조건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제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투자규모, 수출액비중,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거나 조세감면율을 일률적으로 법령으로 정하기 보다는 조세감면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과세적용자의 재량권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조세감면제도의외의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률로 정해진 제한적인 분야외에는 특별한 지원제도나 업종별 지원 또는 지역별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외국인투자유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에 맞도록 세금감면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감면대상, 세율, 기간 등의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반제조업 부문에서도 세제지원이 필요하며 지역개발을 위한 대형인프라

사업 및 관광부문에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 대하여 세제감면 지원원칙을 동등하게 적용하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법 또는 특례로 규정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투자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규모를 법령에 명시하지 아니하고 정부가 외국인투자가와의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협상점검부서와 인센티브 지원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로는 인센티브를 적절한 유인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즉시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 및 결정이 협상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법령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의 분류도 협상부서의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주목할 만하다. 소득세 및 법인세도 현재와 같이 100% 감면하거나 전혀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어떠한 기술을 이원론에 입각하여 고도기술과 비고도기술로 구분하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 참 고 문 헌

- 오수균,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  
학회보 제7권 제3호(2003.12).
- 安 心, “WTO 《丁部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2 (총  
제100기)
-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WTO與國際貨物貿易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 姜一春, “中國のWTOに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  
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 \_\_\_\_\_, “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  
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
- 馬 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 1998년 제13기  
p.23.
- 易雪玲, “引用外商直接投資的風險防範”, □□財經理論與實踐□□, 2001년 3월호  
(제22권 제110기),
- 潘惜唇. “論GATT環保例外條款的適用條件和發展趨勢”, □□中國法學□□, 2001年  
5期,
- 梁咏·章海彤, “外國直接投資的中國市場進入許容問題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http://www.law-lib.com/lw/lw_view.asp).
-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참 고 문 헌

王維澄,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缺課的報告”, 法制日報 2001年3月15日字.

胡振杰, “入世對外商投資法律制度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11月21日字.

楊鵬慧, “世貿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准入”, □□投資研究□□, 2000년 10월호.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4 (총 제96기), 聲炯星, □□中外外商投資法問題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楊國華, □□中國加入WTO法律問題專論□□, (北京: 法律出版社, 2002).

\_\_\_\_\_, □□外商投資企業法律手冊□□, (北京: 法律出版社, 2002).

劉文華(主編), □□WTO與中國企業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_\_\_\_\_, □□WTO與中國金融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黃 輝, □□WTO與國際投資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_\_\_\_\_,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北京: 법률출판사, 2002).

Official Web Site of the Board of Investments, at <http://www.boi.gov.ph>.

Van V. Mejia, “The Modern Foreign Investment Laws of the Philippines”, *Temp. Int'l & Comp. L.J.*, Vol.17(2003).

Sandra F. Maviglia, “Mexico's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The Selective Promotion of Necessary Industry”, *A.J.I.L.*, Vol.238 (1986), p.282.

- Hayden Kepner, Jr, "Mexco' New Foreign Investment Regulations: A Legal Analysis", *Syracuse J. Int'l L & Com.*, Vol.18(2002), p.42.
-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Foreign Investment in Cuba: Prospects and Perils", *Geo. Wash. Int'l L. Rev.*, Vol.35(2003).
- orge Perez-Lopez & Matias Travieso-Diaz, "The Helms-Burton Law and Its Antidotes: A Classic Standoff?", *Sw. J. L. & Trade Am.*, Vol.7(2000).
- Jorge F. Perez-Lopez, "Cuba's Thrus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 Special Labor Regime for Joint Ventures in International Tourism", *Miami Inter-Am. L. Rev.*, Vol.24(1992),
- Matias F. Travieso-Diaz, "Cuba's Perfeccionamiento Empresarial Law: A Step Towards Privatization?", *U. Pa. J. Int'l Econ. L.*, Vol.23 (2002).
- Mark B. Baker & Mark D. Holmes, "An Analysis of Latin American Foreign Investment Law: Proposals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Political Stability", *U. Miami Inter-Am. L. Rev.*, Vol.23(1991),
- Jeswald W. Salacuse, "BIT by BIT: The Growth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ir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t'l Lawyer*. Vol.24(1990).
- Yitzhak Hadari, "The Role of Tax Incentives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s in Selected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Desirable Policy", *Int'l Lawyer*, Vol.24(1990).



참 고 문 헌

- Kojo Yelapaala, "In Search of Effective Policies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lternatives to Tax Policies", *J. Int'l. L. Bus.*, Vol.7(1985).
- Raj Bhala, Poverty, "Islam and Doha: Unmet Challenges Facing American Trade Law", *Int'l Lawyer*, Vol.36(2002).
- Howard L. Stovall, "Arab Commercial Laws into the Future", *Int'l Lawyer*, Vol.34(2000).
- Umar F. Moghul, Esq. & Arshad A. Ahmed, Esq., "Contractual Forms in Islamic Finance Law and Islamic Inv. Co. of the Gulf (Bahamas) Ltd. v. Symphony Gems N.V. & Ors.: A First Impression Of Islamic Finance", *Fordham Int'l L.J.*, Vol.27(2003).
- H.S. Shaaban,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e Middle East: What Law Governs?", *Law & Pol'y Int'l Bus.* Vol.31(1999)
- Hossein Esmaeili & Jeremy Gans, "Islamic Law Across Cultural Borders: The Involvement of Western Nationals in Saudi Murder Trials", *Denv. J. Int'l L. & Pol'y*, Vol.28(2000).
- Myint Zan, "A Comparison of the First and Fiftieth Year of Independent Burma's Law Reports 2004", *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Law Review*, Vol.35(2004).
- Patricia Pattison \*Daniel Herron, "The Mountains are high and the Emporor is far away: Sanctity of Contract in China", *American Business Law Journal*, Vol.40(2003).
- MICHELE LEE, "Franchising in China: Legal Challenges When First Entering the Chinese Market",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9(2004).

- John H. Donboli & Farnaz Kashefi, “Doing Business in the Middle East: A Primer for U.S. Companies”,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8(2005).
- Carlos G. Garcia, “All the Other Dirty Little Secrets Investment Treaties, Latin America And The Necessary Evil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Florid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6(2004).
-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Foreign Investment in Cuba: Prospects and Peril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35(2003).
- George O. White III, “Enter the Dragon: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s and Policies in the P.R.C”, *North Carolin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 Commercial Regulation*, Vol.29(2003).
- Jenna L. Acuff, “The Race to the Bottom: The United States' Influence on Mexican Labor Law Enforcement”, *San Diego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5.(2004).
- Van V. Mejia, “The Modern Foreign Investment Laws of the Philippines”,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Vol.17(2003).
- Venera A. Gallousis, “Cuba's Flirtatious Love Affair With Foreign Investment: The Evolution of Laws 50 and 77”, *Texas Hispanic Journal of Law & Policy*, Vol.5.(2001).
- Charles E. Meacham, “Foreign Law in Transac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Latin America”, *Texas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36.(2001).

참 고 문 헌

- Jian Zhou, “National Treatment in Foreign Investment Law: A Comparative Study from a Chinese Perspective”, *Touro International Law Review*, Vol.10.(2000).
- Larry Cata Backer, “WHITHER GOES CUBA? PROSPECTS FOR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PART II OF II: Cuban Corporate Governance at the Crossroads: Cuban Marxism, Private Economic Collectives, and Free Market Globalism”,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Vol.14(2004).
- James E. Ross, “SYMPOSIUM: WHITHER GOES CUBA? PROSPECTS FOR ECONOMIC & SOCIAL DEVELOPMENT PART II OF II: CUBA'S FUTURE AND ITS IMPACT ON U.S. TRADE AND INVESTMENT: The Impact of Potential Changes in U.S.-Cuba Relations on Midwest Agribusiness Trade and Investment”, *Transnational Law & Contemporary Problems*, Vol.14(2004).